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6. 20(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이경미,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청년주택 신축(2차)	공개
2	제주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공개
3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전망대, 교량, 주차장 설치	공개
4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교사 증축	공개
5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3차)	공개
6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탁본	공개
7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3차)	공개
8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9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	공개
10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명부전 건립	공개
11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관리사(탐방안내소) 신축(2차)	공개
12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동·식물관련시설 증축(2차)	공개
13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변경허가)	공개
14	서울 홍인지문 주변 옥외광고물(LED) 설치(2차)	공개

## 【검토사항】

15	안성 칠장사 대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6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7	해남 미황사 대응전 보수 설계 검토	공개
1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종합정비계획 검토	공개
19	부산 범어사 조계문 주변 비림정비사업 검토	공개

20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안양료 개축 공사 검토	공개
21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검토	공개
22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 검토	공개
2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안) 재검토	공개
2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보호구역 정비 검토	공개
2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공개

**【보고사항】**

26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주변 석축 보수정비 사업</li> <li>-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농막 설치</li> <li>-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등 주변 진입로 정비(변경허가)</li> <li>-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li> <li>-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농막 설치</li> <li>-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산불소화시설 설치</li> <li>-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공중화장실 정비</li> <li>-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사리탑 조성(변경허가)</li> <li>-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사천왕상 멸실 후 조성</li> <li>-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마을회관 상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li> <li>-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변경허가)</li> <li>-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 이동식화장실 설치</li> <li>-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가설건축물(임시공양간) 축조</li> <li>-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남천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변경허가)</li> <li>-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li> <li>-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li> <li>-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 청풍공설운동장 주차장 진입로 포장</li> <li>- 강릉 오죽헌 주변 단독(농가)주택 신축</li> <li>-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자연순환관련시설(고물상) 부지 조성</li> <li>-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공장 증축(변경허가)</li> <li>-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li> </ul>	공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영각 개축 및 석축 정비</li><li>- 서울 홍인지문 주변 지하지장물 확인 위한 줄파기 공사</li><li>-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도로 포장 공사(2차)</li><li>-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재심의)</li></ul>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6-001

###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청년주택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청년주택 신축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에 해당됨.
    - ※ 높이기준(4대문밖) : 보호구역 경계선 7.5m높이에서 양각 27°선 이내.
  - 허용기준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5.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38-1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송인동 240-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0m
- 사업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구분	'19.05.16.(부결)	금차
대지면적	979.5㎡	좌동
건축면적(연면적)	655.03㎡(9,300.94㎡)	655.03㎡(8,396.05㎡)
층수(최고높이)	지하2층/지상16층(49.4m)	지하1층/지상15층(45.5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2019.05.01. / 문화재위원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구역) 내에 지어지는 10층을 넘는 고층 건물로서, 향후 보존지역 내에서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진입부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2. 제주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 가. 제안사항

제주 제주시 소재 보물 「제주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광장 활성화 사업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제주 관덕정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삼도2동 983-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222-2번지 주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및 인접
  - 사업내용 :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 관덕정 광장 앞 도로 정비(관석포장)
    - 관덕정 광장 무대용 전기 공급 설치
    - 목관아 주변 돌담길 조성
    - 버스정류장 이설
    - 우수처리 시설 신설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3.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전망대, 교량, 주차장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군위군 소재 국보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에 전망대, 교량,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전망대, 교량,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1477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6-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93m
  - 사업내용 : 전망대, 교량, 주차장 설치
    - 전망대(1구역) : 8.675m×15.03m×3.60m
      - 재료 : 알루미늄
    - 전망대기초 : 22.935m×10.625m(반원형)
      - 재료 : 목재 데크

- 보도교(4구역) : 3.50m×33.5m×15.54m
  - 형식 : Tube거더교(강재)
- 주차장(4구역) : A=3,090m<sup>2</sup>, 아스콘포장
  - 주차면수 : 51대
- 이동식화장실 : 1개소
  - 2.80m(폭) × 8.90m(길이)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4.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 교사 증축

###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교사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서동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원촌길 8-14(서동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 교사 증축(기숙사, 식당, 실습실 등)
    - 건축(연)면적 : 844㎡(3,539.81㎡)
    -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 높이 : 16.1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6명, 원안가결 2명

## 5.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3차)

###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2.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진입부 경관 저해)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3.21.)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837-4번지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76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40m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 사업면적 : 2,595m<sup>2</sup>
  - 모듈설치면적 : 808m<sup>2</sup>
  - 모듈크기 : 1.95m\*0.99m, 418개
  - 구조 : 태양광 패널판 + 각파이프조
  - 최고높이 : 2.1m(2차:2.5m)
  - 지반조성 : 절·성토 없이 현 지형을 이용하는 계획

※ 차폐목 설치(변경사항)

구분	2차	금차
사철나무	1m간격 : 205주	0.5m간격 : 445주
청단풍	3m간격 : 25주	1.5m간격 : 110주
담쟁이 덩굴	-	0.5m간격 : 83주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19.04.0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석탑으로 가는 진입부에 해당되고,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탑에서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특히 진입부 경관저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6.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탁본

###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보물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의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제 금산사 교구본사 특별전 전시를 위해 보물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탁본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탑비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탁본
  - 작업방법 : 습식탁본
  - 작업자 : ○○○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탁본은 2부를 실시하고 1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제출토록 함.(2020년 금석문 탁본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7.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3차)

###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국보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길상암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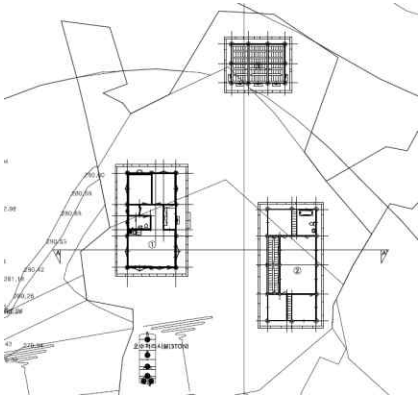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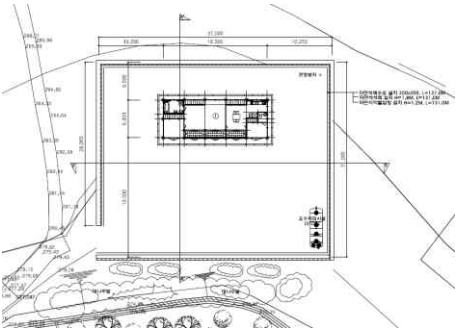
- 문화재 주변 길상암 건립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3.21) : 부결
  - 길상암 건립 부지 전체 계획안 확인 후 심의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부결
  - 지형변화가 크고 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54-1 연곡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08, 1008-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길상암 건립

구분	‘19. 4. 18.(부결)	금차
대지면적	1,927m <sup>2</sup>	좌동
건축면적	70.56m <sup>2</sup>	99m <sup>2</sup>
주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최고높이	1층/6.42m	좌동
기타	공양간(82.8m <sup>2</sup> ), 선방(31.68m <sup>2</sup> ) (추후건립)	석축 H=1.8m, L=131m 담장 H=1.2m, L=131m
배치도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2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

라. 참고사항(설계시 자문의견 2019.03.04. / ○○대학교 ○○○, ○○문화재연구원 ○○○)

○ 길상암 건립 예정지는 토지면 내동리 전 1008, 답 1008-2번지에 해당함. 이곳은 현재 양봉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 경작하여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과거 경작지에 형질이 어느 정도 변경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터파기 공사 시에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형훼손 최소화, 담장 구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8.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40-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6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신축
    - 사업면적 : 496㎡
    - 건축면적 : 79㎡
    - 층수/최고높이 : 1층/4.1m
    - 구조 :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2019.06.07.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와 석탑 사이에는 박물관이 위치하여 잘 보이지 않고, 지대가 약간 낮은 지역이므로 신청 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9.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

###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 개선사업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충주 고구려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감노로 2319 (중앙탑면, 충주고구려비전시관)
  - 지정일 : 1981. 03.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279-9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인접
  - 사업내용 : 고구려비 전시관 계획부지 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
    - 사업면적 : 30,581㎡
    - 주요내용 :
      - 성곽, 문루 재현 : 성곽 L=47.8m, 최고높이=4.35m / 문루 3×1칸, 높이 3.9m, 팔작지붕
      - 게이트 조형물 설치 : 충주 고구려비 및 광개토태왕비 모형
      - 광장 조성 / 조경수 식재 / 삼죽오 조형물 이전 / 역사의 길 조성 등

라. 현지조사의견(2019.06.07. / 문화재전문위원 ○○○)

- 고구려비 전시관 주변은 현재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곽·문루 재현 사업은 고구려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성곽·문수 사업은 제외토록 함.
  - 전시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10.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명부전 건립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명부전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명부전 건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0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10.21) : 가결
  - 삼성각 건립(정면3칸, 측면1칸,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건축면적 22.23㎡)
- ※ ‘10년 문화재위원회 제1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12.16) : 부결(변경허가 : 맞배지붕 → 팔작지붕)
  - 전통사찰에서 삼성각을 다포양식으로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11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02.17) : 부결(변경허가 : 맞배지붕 → 팔작지붕)
  - 삼성각은 도면 부실로 심의가 불가.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 (사직동, 용화사)
  - 지정일 : 1989. 04. 10.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6-1 외 2필지(용화사 내)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명부전 건립
  - 정면3칸, 측면1칸,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건축면적 22.23㎡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11.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관리사(탐방안내소)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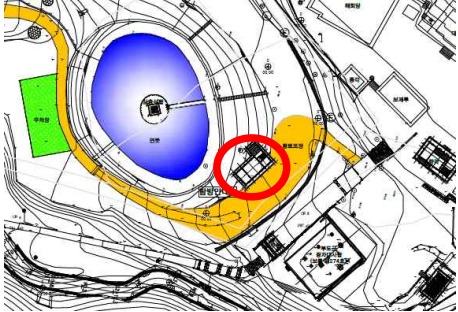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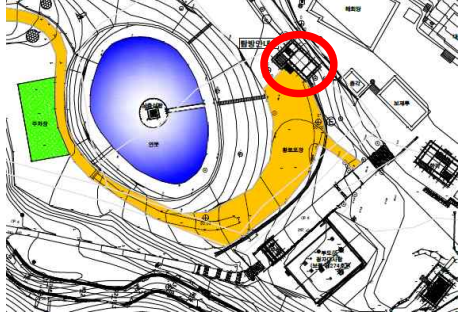
- 문화재 주변에 관리사 신축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위치 부적절)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1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인접



○ 사업내용 : 태안사 관리사 신축

구분	‘19. 4. 18.(부결)	금차
건축면적	71.83m <sup>2</sup>	좌동
규모/양식	정면 4칸, 측면 3칸(ㄱ자형), 초익공, 팔작지붕	좌동
층수/최고높이	지상1층/6.04m	좌동
배치도		

라. 자문의견(문화재위원 ○○○)

- 탐방안내소라는 건물의 정체성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현 계획안은 광자대사탑과 삼층석탑에 가깝고 그간 지니고 있었던 연못 주변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또한 그 동안 사용하였던 연못 주변도로에 너무 돌출되어 이동과 시선 등을 차단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문화재로부터 이격을 시키고 동선과 시선 등의 장애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기를 권유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12.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동·식물관련시설 증축(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에 동·식물관련 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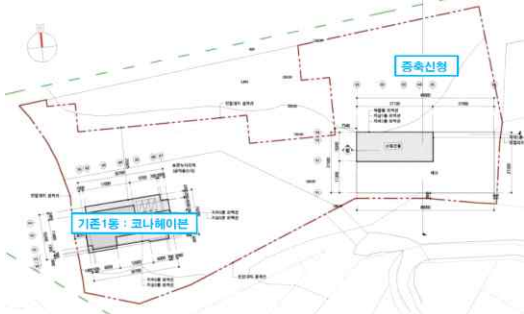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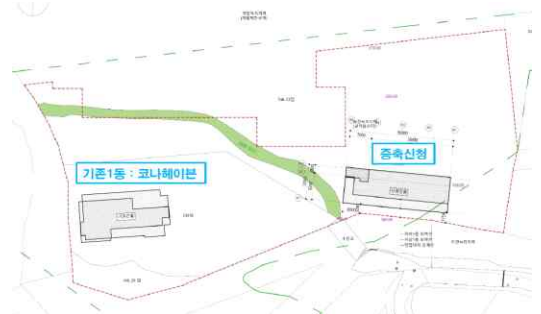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동·식물관련시설 증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4.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39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80m

○ 사업내용 : 동·식물 관련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증축

구분	'19. 4. 18.(부결)	금차
대지면적	8,603m <sup>2</sup>	좌동
증축면적	지하1층(270m <sup>2</sup> ), 지상1층(270m <sup>2</sup> ), 옥탑층(29.64m <sup>2</sup> )	지하1층(432m <sup>2</sup> ), 지상1층(305.4m <sup>2</sup> ), 옥탑층(29.64m <sup>2</sup> )
최고높이	8.425m, 평지붕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배치도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13.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주변에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수장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7년 10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결과 : 조건부허가
  - 근대문화재 관련 문화재위원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7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49번지 2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5m
  - ※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홍천초등학교 뒤편 → 1950년 홍천교육청 → 1958년 홍천읍사무소) 및 보물 제540호 홍천 패석리 사사자 삼층석탑(홍천군 두촌면 패석리 밭 → 1969년 홍천읍사무소)은 이전된 문화재임

- 사업내용 : 창고(수장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

구분	당초('17.10월 허가)	금차
건축면적(연면적)	403.2m <sup>2</sup> (403.2m <sup>2</sup> )	704m <sup>2</sup> (803m <sup>2</sup> )
층수	지상 1층	지상 2층
높이	6.4m	11.72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마감	시멘트기와, 테라코트	벽돌·블록계열 마감
용도	수장고, 창고	수장고, 다목적공간, 카페, 사무실 등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14. 서울 흥인지문 주변 옥외광고물(LED) 설치(2차)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주변에 옥외광고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옥외광고물(LED) 설치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9.05.16)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2면 중 청계천변쪽 1면은 가능)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0-1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4m

○ 사업내용 : 건물 외벽 옥외광고물(LED) 설치(1개소)

구분	'19. 5. 16.(부결)	금차
규격	107.16㎡ (가로 14,560mm×세로 7,360mm), 라운드형(ㄷ형) LED전광판	82.81㎡ (가로 6.7m×세로 12.36m) 일자형 LED전광판
재질/구조	LED풀칼라 전광판, 앵글, 빔 구조물	좌동
투시도		

라. 참고사항(현지조사 2019.05.01. / 문화재위원 ○○○·○○○)

- 홍인지문에서 바로 보이는 간선도로변의 전광판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됨.
- 현재 홍인지문 주변부로 전광판이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광판 측면 광고설비는 제외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6-015

### 15.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안성 칠장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성시 소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대웅전」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대웅전」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 지정일 : 2010. 03. 2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성 칠장사 대웅전(安城 七長寺 大雄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 조성연대 : 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 구조/형식 : 3×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 수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2019.02.13.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1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7명, 기권 1명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12. 06.	대상문화재	안성 칠장사 대웅전 (경기 유형문화재 제11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 칠장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5 월 30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현산(516m) 중턱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七長寺)는 용주사의 말사로, 신라말의 창건 설화를 가지고 있으나 현황의 조성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다. 칠장사가 자리한 칠현산은 속리산에서 백두대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다시 두 줄기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위치한다. 즉, 칠현산을 기준으로 동쪽과 북쪽으로는 한강의 수계권, 남쪽으로는 금강의 수계권, 그리고 서쪽으로는 안성천, 삽교천 등 작은 천으로 이루어져 아산만 권역 등 3개의 지역권으로 갈라진다. 그러므로 칠현산은 한강변의 충주와 이천, 여주, 금강변의 청주, 공주, 그리고 아산만에 연결된 안성, 천안 등지로 오가는 교통상의 요충을 이룬다. 행정구역상으로 안성시에 편제되어 있으나, 칠장산으로 구분된 능선 너머 동편 즉, 옛 죽산현의 땅에 속한다.

사찰은 292m 정도의 낮은 봉우리를 뒤로 하고 남서쪽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산 중턱에 자리하였으며, 지형의 경사축에 직각으로 대웅전이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그 왼쪽에 원통전이 있고, 축대 아래에 땅을 고르게 하여 대웅전 앞마당을 만들고, 그 좌우에 명부전과 주지실 등 요사채를 두고 맞은편에는 주지실로 사용되는 요사채를 두었다. 그 아래에 다시 한 단 낮게 평탄지를 만들어 주차장과 화장실, 부속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전체적으로 높이별로 상, 중, 하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중심 공간으로의 진입은 경사가 급한 종축선상을 피하여,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 직각으로 꺾어 측면에서 중단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진입축에 맞추어 사천왕문이 대웅전과 직각된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진입로상에서 사천왕문으로 꺾지 않고 그대로 경사로를 올라가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혜소국사비와 산신각 등이 자리한 또 하나의 영역이 나온다. 대웅전으로부터도 바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있다. 이곳이 기록에 등장하는 비전(碑殿) 영역이다. 이곳은 기록에 등장하는 칠장사의 부속 암자 가운데 하나인 백련암(혹은 비전암)의 자리로 여겨진다. 칠장사에는 현재에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명적암 외에도, 백련암, 극락암, 상운암 등의 부속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그 위치는 절 뒤편의 칠현산 중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후대의 개변으로 인해 오래된 건축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칠장사에는 국보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국보제296호, 1628년)을 비롯하여,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제1256호, 1710년),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 석가 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1685년), 「안성 칠장사 목조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일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7호, 1706년),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1785년),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경기도 유

형문화재 제 239호, 1886년), 「안성 칠장사 범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1782년), 그리고 「원패(전패) 한쌍」(1558년)과 소형의 석조 불상 및 목조 동자상 등 다양한 불교미술유산과, 고려 초기의 승탑비인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벽옹대사비」(1660년), 「인상대사비」(1676년) 등을 비롯한 여러 승탑비와 괘불대, 여러 개의 명문와, 그리고 인목대비가 쓴 것으로 전하는 「인목왕후어필칠언시」(보물 제1627호), 「類合 목판」(1664년), 「千字文 목판」(1661년) 등의 17~18세기의 유형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칠장사 경내 배치도(『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칠장사대웅전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재인용)

## 2. 연혁

일반적인 지리서 외에, 사찰의 연혁, 그리고 대웅전(대법당)의 건축적 상황을 전하는 주요한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한다.

- 1) 「贈諡慧炤國師碑銘」(보물 제 488호, 1060년, 이하 ‘혜소국사비’)
- 2) 「朝鮮國竹山七賢山七長寺重修香火事蹟碑」(1671, 이하 ‘중수사적비’)
- 3) 「京畿左道竹山府地南嶺七賢山七長寺碑殿巖上新建法堂造成記 (현판)」(1703, 이하

‘법당조성기’)

- 4) 『朝鮮國京畿道竹州府七賢山七長寺事實記』 (1755,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이하 ‘사실기’)
- 5) 「畿左竹州七賢山七長寺大法堂重創記 (현판)」 (1790, 이하 ‘대법당 중창기’)
- 6) 「京畿右道竹山南嶺七賢山七長寺大雄殿移建記文 (현판)」 (1828, 이하 ‘대웅전 이건기’)
- 7) 「京畿左道竹州南嶺七賢山七匠寺重建新造成記 (현판)」 (1878, 이하 ‘중건신조성기’)

칠장사(七長寺)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 등에 신라 선덕여왕 5년(636)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한편 다른 기록인, ‘중수사적비’에는 혜소국사 정현의 창건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혜소국사비’에는 혜소의 첫 수학처로 칠장사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다. 즉, 1060년 왕명으로 건립된 혜소국사비에 따르면, 혜소국사 정현(鼎賢)은 고려 4대 광종 23년(972)에 출생하여 11대 문종8년(1054)까지 활동하였으며, 13살 무렵인 980년 용철(融哲)이 주석하고 있던 죽산 칠장사(漆長寺)에 처음 방문하였으며, 이후 개경의 영통사와 현화사를 오가면서도 칠장사와 계속 관계를 맺고, 1014년(현종 5)에는 칠장사에 주석하며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고, 입적 역시 칠장사에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2014년에 시행된 혜소국사비 주변의 발굴조사 시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물들이 발견되어 늦어도 통일 신라시기에는 이곳에 사찰이 경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신라 말에는 초기의 사찰이 운영되었고, 이것이 고려 초기 혜소국사의 활동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칠장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칠장사(漆長寺)였던 사명이 칠장사(七長寺)로 바뀐 것 역시 혜소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혜소국사를 칠장사의 중흥조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우)과 원통전(좌)

이후 고려말 왜구의 침입에 따른 피해와 조선 전기 복구의 내용이 기록에 전하며, 칠장사가 다시 크게 이름을 얻는 것은 인목대비의 후원과 관련이 깊다. 1623년 인목대비는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을 위한 원당으로 삼고 사찰을 크게 중수하였다. 이 시기의 관련 유물로 「인목대비 어필칠언시」(보물 제1627호, 1621-22년)과 칠장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광명최 승왕경」,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628년) 등이 있다.

이후 칠장사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은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에 걸쳐 주변의 세도가에 의한 두 차례의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 즉, 1674년(숙종 즉위년) 세도가들이 칠장사를 장지(葬地)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을 방화하였고, 초견대종사(楚堅大宗師)가 북쪽으로 터를 옮겨 새로 건물을 지었다(‘사실기’). 세도가와와 갈등이 극에 달하던 1694년(숙종20년)에는 다시 사찰의 방화가 있었고 제월대사가 불에 타 숨지는 사고 있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명 화상이 1703년(숙종29년)에 비전 터로 법당을 옮겨짓고 불상을 봉안하였으며(‘법당조성기’), 그 이듬해인 1704년에는 옛 절터를 수복하고 대규모의 중수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기’) 이후, 1755년 ‘사실기’가 기록될 때까지 칠장사에는 크고 작은 불사가 이어져, 특히 1703년의 법당 조성을 주도하였던 비구 탄명의 이름은 1710년 조성의 「삼불회 괘불탱」을 비롯한 여러 불사에 이름을 남겨 최소한 1730년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불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에는 대법당 외에도 응향각, 진여문, 청련당, 심검당, 적묵당, 백련당, 서별당, 태청루 등을 이 건한 것 외에, 향적당, 원통전, 명부전, 해탈문 등을 새로 세웠다.

이후의 기록인 ‘대법당 중창기’는 1704년에 이 건한 대법당을 1790년에 중창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웅전 이 건기’는 그 대법당을 1828년에 이 건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때 이 건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때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1856년 기와 수리, 1886년 후불탱의 조성 등이 대웅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헌 기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남아있는 대웅전은, 1790년에 중창된 것을 1828년에 이 건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1790년의 공사를 신건이 아닌 중창이라고 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이 1703년에 짓고 1704년에 이 건한 구 대법당과 어느 정도는 서로 연속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정도에 대해선 가늠하기 어렵다. 그에 대해선 양식적인 고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3. 건축적 특징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단층 맞배집으로, 도리칸이 10,124-10,229mm, 보칸이 6,756-6,786mm의 길이를 갖는다. 도리칸의 3칸은 대개 한 칸의 치수가 3,400mm

내외로서, 11자 모듈을 세 칸 모두 같이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칸은 어칸을 10자로 하여 크게 하고 양 협칸은 6자 정도로 줄였다.

경사지에 위치하여, 전면의 석축이 높는데, 전면은 다듬은 장대석을 5단으로 반듯하게 쌓고, 제일 윗단은 3센티 가량 내밀어 쌓고 아랫면을 걷어내어 쇠시리를 주었다. 기단 상면으로 오르는 중앙 계단은 모두 8단으로 하고, 그 양옆에 쇠시리와 부조 초각이 정교한 소맷돌을 두었다. 초석은 다듬은 초석과 자연석 초석이 섞여 있으며,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 가운데는 주좌와 고맥이 자리를 돈을 새김한 것도 남아있다. 계단 소맷돌과 다듬은 초석 등에서 보이는 석재의 가공 솜씨는 조선후기 사찰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고급스러운 것이라, 이전 시기의 석부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초석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것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 계단에서는 소맷돌이 있는 부분은 전체 5단의 전면 석축 가운데 겨우 상부 3단에 그치고 그 아래의 2단에는 별도의 부재로 이어 붙여 만든 점이다. 즉, 원래부터 이 기단의 높이에 맞추어 만든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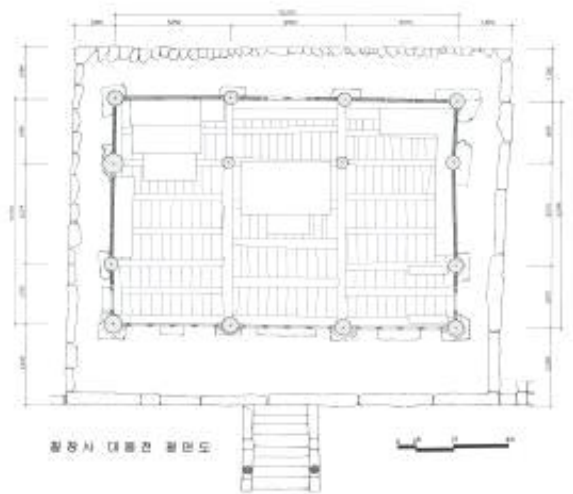


대웅전 전면 석축과 계단의 소맷돌



원통전 전면의 석축에 있는 계단

이와 관련하여, 『칠장사 대웅전 학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통전에 사용된 계단 소맷돌은 1060년경에 조성된 혜소국사비 뒤의 건물지에 남아있던 소맷돌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원통전 소맷돌과 대웅전 소맷돌을 비교하자면, 갑석과 면석, 지대석의 구성 방식과 문양을 넣는 위치 등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격식의 면에서는 같은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전기 중창 이후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창과 이권이 거듭된 칠장사의 역사를 감안할 때, 조심스럽지만, 대웅전 전면 계단이나 주초에는 경내에 있던 전 시기의 부재를 재활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칠장사 대웅전 평면도(『칠장사 대웅전 학술조사보고서』에서 전재)



칠장사 대웅전 종단면도(『칠장사 대웅전 학술조사 보고서』에서 전재)

대웅전의 전체 가구 구성은 맞배집에 어울리게, 전후면에 평주를 두고 측면에는 좌우측 각 2주의 고주를 두었다. 우주에 귀솟음을 주었으며, 기둥 모두에 민흘림을 주었다. 측벽의 고주는 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목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구주는 하단이 굽고 급하게 가능러지는 부재를 사용하였다. 내부에서는 측면의 고주열에 맞추어 후면에 2개의 기둥을 두어 후불벽을 양 옆에서 잡고 있다. 하지만 이 내주 2주는 모두 대들보 하단을 받치고 있을 뿐 종보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신 어칸 좌우에서 종보는 전후단 모두 대들보 위에 둥근 동자주 형태의 대공을 두어 받치고 있다. 대들보 역시 측벽 고주와 마찬가지로 휨이 많은 부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곧은 장부재를 조달하기 어려운 조선후기의 목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공포는 전후면에만 두었으며, 평방은 전후면에 두고, 측면에서는 전퇴칸에만 두었다. (후퇴칸에도 평방에 해당하는 위치에 수평 인방재가 있으나, 부재의 가공은 그 아래에 있는 창방과 같은 규격으로 하여 평방으로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우측의 전퇴칸에는 퇴칸 전체에 걸친 평방을 둔데 반해, 향좌측면의 전퇴칸에서는 뒤가 끊어진 짧은 평방을 두어 구분된다. 대개 다포계 맞배집이라 하여도, 측면포를 두는지의 여부, 귀포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측면에 평방을 두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변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포계 팔작집을 모방하지 않고 보다 충실하게 맞배집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측면 전퇴칸에 평방 혹은 단평방을 둔 것은, 전면의 평방 마구리가 맞춤 없이 뺏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 공포(외측)



전면 공포 (내측)



후면 공포(외측)



후면 공포 (내측)

공포는 전후면 모두 내외 3출목 7포로 짚고, 각 주간에 2구씩의 주간포를 두었다. 그러므로 내3출목 상단에는 내출목 도리와의 사이에 수직의 포상벽을 두고 화반을 설치하였다. 첨차는 모두 교두형으로 간단히 하였으나, 제공 쇠서의 모양은 전후면의 공포가 다르다. 전면 공포에서는 쇠서의 끝을 양서형으로 가공하고 그 상면에 연꽃을 올린 모양으로 가공하고, 내측으로는 제공을 서로 연결하여 운궁형으로 가공하고 대들보가 없는 주간포의 5제공 자리에는 용두형을 초각하였다. 후면 공포에서도 외측의 제공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내단 어칸에서는 운궁의 끝을 직절하고 좌우 협칸에서는 연봉형으로 제공 끝을 가공하여 구분하였다.

천장은 전후 사이에만 격자형의 소란반자를 중보 중간에 맞추어 길게 설치하고, 중도리 바깥으로는 내출목도리와의 사이에 서까래가 노출되는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내출목도리는 3출목 위에 수직의 포벽을 설치하였다. 소란 반자에는 단청을 하였는데, 협

칸에서는 단순히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여섯잎의 연화를 그렸고, 어칸에서는 시반문(혹은 보상화문)으로 둘레를 그리고 그 안에 식물문을 넣어 장엄하였는데 금박을 한 점이 두드러진다. 대들보 사이의 불단 위로는凸자형의 단집을 달았는데, 내부 천장에 황룡문을 단청하였고, 전면에서 두 개의 가는 원형기둥을 두어 불단에 받쳤다.



대웅전의 내부

창호는 전면 3칸에는 주칸 사이에 가득 4짝 분합을 달았고, 출입은 양측면의 전퇴칸에 둔 외짝 여닫이를 통하게 하였다. 후면에는 어칸 중앙에 창방 아래로 문인방을 한단 낮게 두고 그에 맞추어 쌍여닫이의 문을 달았다. 문작의 살은 모두 주택에서 사용될만한 띠살문으로 하였는데, 원형인지 의심이 되며, 다만 배면의 어칸 가운데에 있는 문짝은 빗살로 짝 넓은 살부재에 연화문을 바로 돈을 새김한 간이화된 꽃살문으로 하였다. 이것이 전면과 측면에 사용된 문작보다 고식으로 보인다. 벽의 나머지 부분엔 모두 흙심벽으로 마감하였고, 별도의 단청은 없다. 다만 전면 평방 위의 포 사이에 놓인 불벽에는 일부에 불화가 남아있다. 살내에서는 포벽도 모두 간단하 굻기 단청만 베풀어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82년의 수리공사시에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단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실내의 창방과 평방, 대들보, 천장 반자, 그리고 주두와 소로, 첨차와 순각판 등 공포 부재 등이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처리하였으며, 처마와 박공 너새에는 막새기와를 사용하고 용마루에는 작은 용두를 양 단에 두었다. 막새 가운데 구와가 몇 섞여 있는데, 암막새의 드림새 가운데 범어를 가운데 넣고 좌우에 글자가 있는데, 정확치 않다. 측면엔 박공에 풍판을 달았다.

이상으로 대웅전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문헌상으로 추적한 연혁에 등장하는 1703년에 조성하고 1704년에 이진하였다는 대법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특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다만, 3칸x3칸의 구성을 가지며 내부의 후불벽 고주의 위치가 이주가 아닌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는 주방 구성 방식은 이 건물이 한 번의 계획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즉,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미 다포계 맞배집에서는 3칸x2칸의 축소된 평면이 유행하는데 여기서 장부재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칸x3칸을 유지하였고, 내부 고주의 위치를 이주하지 않고 정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충량을 걸어야 하는 다포집에서 더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맞배집임에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부조화가 이 건물이 최소한 한번 이상 이진된 건물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 4. 종합 검토의견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진된 건물로서, 조선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전의 규모를 가지며,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구성과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단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고주와 우주 등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목의 사용,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도 모두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칠장사 대웅전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편, 고려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지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안성 칠장사에는 대웅전 내에 있는 불화와 불상은 물론, 경내에 혜소국사비 등 고려시대의 불교 유적을 비롯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다수의 불화와 불상, 범종, 석탑과 석물, 기타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 및 현판 등도 다수 남아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안성 칠장사 대웅전의 보물 지정 승격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번 승격 지정을 통하여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사찰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2. 13.	대상문화재	칠장사 대웅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 칠장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불전 건축의 지역적 특징, 건축물의 조형적 학술 가치, 역사성 및 희소성의 가치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2 월 2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칠장사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칠장사가 있는 죽산은 고대부터 기호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지리의 요충지로서 주변에는 많은 산성과 불교유적이 전시대에 걸쳐 남아 있다. 칠장사는 서쪽에 있는 칠장산(해발 492m)을 주산으로 하여 동향으로 배치되었다. 칠장산은 남쪽으로 뻗어내려 해발 516m의 칠현산과 연결되어 있다. 즉 칠장산과 칠현산을 잇는 긴 산맥을 배경으로 사찰이 자리잡았으며 사찰의 전면인 동쪽에는 제비월산(해발 309m)이 자리잡고 있어 사산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러한 지형은 풍수적으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에 해당하여 예로부터 명당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특히 안산인 제비월산은 흠이 없고 영원히 길한 길지로 알려져있어 조선시대 세도가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죽산은 원래 마한지역으로 3세기 무렵 백제에 편입되었으며 6세기 경에는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지역은 한강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삼국의 쟁탈전이 심하던 곳이다.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개산군으로 개명되었으며 경주를 출발하여 추풍령을 넘어 대중국으로 연결되는 당진항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 기호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로를 따라 망이산성, 죽주산성, 비봉산성, 무한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성들이 축성되었다. 죽주산성은 개산군의 치소로 추정되는 곳이며 주변에는 봉업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죽주는 고려시대 개산군을 개명하여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칠장사도 봉업사와 함께 고려시대 중창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혜소국사(慧炤國師)가 현종5년인 1014년에 칠장사를 크게 중창하였으며 현재 혜소국사비가 국보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현재 대웅전을 포함한 경내의 많은 건물들의 초석과 기단 등 석물들 중에 고려시대의 유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왕명에 의해 중창된 칠장사가 이때가 가장 중흥기였고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죽산지역은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로 일본 사신이 왕래하는 길이었고 임금이 충주지역을 내려갈 때 이용하는 곳이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는 왜적이 이곳을 통해 침입하기도 하였다. 1895년에는 충주부 죽산군이 되었다가 1986년 경기도 죽산군, 1914년 안성군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칠장사가 있는 죽주지역은 죽산산성과 봉업사를 중심으로 고대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중요시되었으며 고려시대에 특히 부흥한 것으로 판단된다. 칠장사로 이때 혜소국사에 의해 크게 중창되어 중흥을 이루었다. 따라서 칠장사도 죽주지역의 이러한 역사문화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 유적이면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잘 남아 있

어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고려시대 사찰지로는 강을 끼고 원주의 법천사지, 여주의 고달사지 등이 유명하지만 이와 같은 대형 사찰지로서 죽산에는 봉업사지가 있으며 규격은 작지만 품격으로 이와 견줄만한 산지사찰로 칠장사가 있다.

## <붙임2> 연혁·유래 및 특징

### 1) 창건과 변천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근래에 혜소국사비 주변을 발굴한 결과 통일신라기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므로 통일신라기에는 확실히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1014년 혜소국사가 칠장사에 주석하며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고 1054년 이곳에서 입적하였다. 그래서 혜소국사비가 이곳에 건립되게 되었고 지금도 보물 제488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1308년에도 한 번 크게 중창되었으나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사찰이 전소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

조선 1506년에 홍정대사가 사찰을 중건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또다시 전소되고 임진왜란 이후 1623년에는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아버지와 아들인 영창대군의 원당으로 삼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다. 그러나 세도가들이 이곳에 무덤을 쓰기 위해 방화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다시 전소되었다.

1703년에 탄명(坦明)스님과 1704년에 석규(碩奎)스님 등이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56동의 건물을 세웠다. 지금 대부분의 건물은 이때 중창된 것들로 이후에도 소실과 중창이 이루어졌다. 1887년에도 화재로 많은 전각이 없어졌는데 대웅전, 원통전, 명부전, 나한전, 사천왕문은 불타지 않고 현재에 전하고 있다.

현 칠장사 대웅전은 법당으로 부르던 것을 1828년에 현 위치로 이권하면서 대웅전으로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칠장사는 이후에도 세도가들이 묘지를 쟁탈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타게 되었으며 탄명스님의 중창시작으로 법당은 1703-1704년에 다시 지어졌다. 그러나 이때의 규모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0년에 대웅전을 다시 중창하였는데 목재의 구입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미루어 대대적인 중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대웅전의 모습과 규모는 이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대웅전의 창건은 179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현재의 위치에 대웅전을 옮긴 것은 1828년이다. 불과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축을 한 것인데 공사기록에서도 공사내용은 소략하고 이축에 중점을 두

었다. 따라서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고 중심사역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으므로 현재 대웅전의 모습은 1828년이 아닌 1790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1790년에 창건되어 1828년에 현 위치로 옮긴 대웅전은 1856년에 기와를 개수하는 공사가 있었고 1982년 전체 해체수리공사가 있었다.

## 2) 건축적 특징

칠장사 대웅전은 정면3칸×측면3칸 건물로 정면 3칸은 11자로 동일하고 측면은 중앙이 10자, 앞뒤 퇴칸이 6자로 간살되었다. 정칸을 강조하지 않고 협칸과 같이 간살을 한 것이 특징이다. 기둥은 원기둥으로 평주의 경우 직경이 1자4치 정도인데 직경과 높이의 비가 1:5.8 정도로 두꺼워서 매우 안정감을 준다. 기둥은 소나무가 아닌 느티나무로 추정된다. 기둥을 느티나무를 사용한 사례는 있으나 그리 흔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권 불전에서 느티나무를 사용하고 비례가 육중하고 이만큼 안정감을 주는 기둥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을 걸고 평방을 올려 공포를 받도록 하였는데 공포는 전후에만 있는 다포맞배불전이다. 공포는 내외3출목으로 같은 7량가이다. 첨차는 교두형인데 옆면을 사절하였고 밑면의 곡선도 직선에 가까우며 각도가 완만한 것이 많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첨차와 모양이 다르다. 물론 측면을 직절하고 밑면의 곡도 45도로 되어 있는 첨차도 있어서 중수 과정의 시차를 반영하고 있다. 살미의 경우는 양서형이며 양서 등 위에 연꽃을 새겨 조선후기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맨 위단의 제공은 익공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칠장사의 경우는 모두 양서형의 제공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도리 위치의 두공은 봉황머리로 했다. 살미의 내부 끝 뿌리는 연봉을 새겼다. 첨차와 살미부재의 형식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불전도 찾아보기 어렵다. 중건의 과정을 현장의 증거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중요한 수리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칠장사 대웅전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대개의 다포형식은 외출목보다 내출목이 많아서 내부의 첨차와 살미가 층이 더 많고 이것이 내출목까지 올라가서 도리를 직접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칠장사 대웅전은 내외출목이 같아서 살미와 첨차의 층이 동일하며 따라서 내출목과 공포사이는 많이 떠 있다. 그래서 공포가 직접 도리를 받치지 못하고 다시 화반을 올려서 화반이 내출목도리를 받치도록 했고 화반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벽이 없거나 낮은 것이 보통인데 칠장사 대웅전은 당당한 높이이다. 그래서 화반이 원형으로

커졌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려 장식하였다. 내출목 화반은 크고 그림이 그려져 내부 장엄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반은 수리과정에서 그림이 없는 단순한 동자주형화반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대웅전의 가구법은 측면은 2고주5량가이지만 정칸은 2평주5량가이다. 배면쪽은 불벽을 설치하기 위해 고주 위치에 보조기둥을 세워 불벽과 그 전면에 불단을 만들었다. 셋기둥 머리에도 익공과 행공을 3단을 설치하여 공포와 같이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인상적이다. 대들보는 굵고 육중하며 자연목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해 용이 굽이치는 느낌을 전해준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는데 동자주에도 익공과 행공을 사용했다. 반자는 우물반자인데 고주칸에서만 설치하고 퇴칸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를 노출시켰다.



그림20.전경 : 다포 맞배형으로 부재가 후덕하고 고졸하며 균형과 안정감이 뛰어나다.



그림21.침차 모양이 측면을 사절한 고식이며 내외출목이 같아 도리하부 화반장식이 특징적



그림22.내부에는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단집과 불전보다 앞서는 불상(보물), 탕화(국보) 등이 있음



그림23.금당에 남아 있는 우물반자의 고분단청은 국내에도 몇 안 남아 있는 희귀한 것이다.

우물반자 청판에는 연화형 먹과 분 테두리 안에 금으로 넝쿨화초를 그렸는데 화초가 도드라지게 하는 고분단청기법을 사용했다. 고분단청은 호분 등을 여러번 발라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것으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한 단청기법이다. 수덕사 대웅전의 용문양에도 비늘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고분단청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대웅전의 모든 반자가 고분단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칸에 일부 남아 있다. 중수과정에서 이것 또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단청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건물에서 고분단청이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인정된다.

처마는 겹처마에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는 풍관이 달려 있다. 전면에는 4짝세살분합이 달려 있으며 측면은 양측 모두 전면 퇴칸에만 외쪽 세살문이 달려있고 배면에는 중앙칸에만 두 짝 꽃살문이 달려 있다. 꽃살이 원래 창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화려하고 격식이 있다. 초석은 가공석과 자연석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가공석초석은 대개 고려시대 주변 건물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고맥이가 달려 있다. 기단은 장대석기단으로 역시 주변에 흩어져 있던 고려시대 장대석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도 고려시대 무지개형의 소맷돌이 있는 계단을 부분적으로 재활용했다.

대웅전 내부에는 본존으로 석가불을 모셨는데 양쪽 협시로는 미륵보살좌상과 제화갈라보살좌상을 모셨다. 일반적으로 협시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 삼존의 불상은 1685년에 제작된 것으로 대웅전 창건 이전 것이다. 그리고 ‘오불회괘불탱’은 1628년에 그려진 것으로 역시 대웅전보다 시기가 앞서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역시 대웅전보다 앞서는 1710년에 그려진 삼불회괘불탱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붙임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에 건축된 것으로 기둥의 비례가 1:5.8 정도로 굵고 육중하며 느티나무를 사용하였다. 다포 맞배건물인데 소규모 불전 건물로는 부채의 비례, 수종, 건물 전체의 조화가 안정감이 있으며 경기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조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포는 첨차가 양측을 사절하고 밑면은 곡과 경사가 완만한 고식이다. 물론 측면을 직절하고 곡이 급한 일반적인 형태도 섞여 있다. 살미는 제공의 양서 등에 연꽃을 새긴 후기형이지만 익공을 사용하지 않고 4단까지도 모두 양서형의 제공을 사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첨차와 살미부채를 고스란히 건물에 남기고 있어서 건물의 중수에 따른 양식적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한 것도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가치라고 판단된다.

-또 출목이 내부와 외부가 같은 3출목을 사용함에 따라 내목도리를 공포가 직접

받치지 못하고 내목화반이 사용되었으며 화반사이는 벽으로 채웠다. 즉 내출목 불벽이 높게 설치된 것이 눈에 띄며 원형화반에 그림을 그려 장엄으로 활용하였다. 이와같은 내목화반의 사용과 내목 불벽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것으로 대둔사 대웅전, 석남사 대웅전 등에서 볼 수 있다.

-우물반자 청판에 일부 남아 있는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은 또 전국적으로도 몇 안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고분단청은 호분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것으로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수덕사 대웅전의 용 문양에서 비늘의 입체감을 위해 고분단청을 한 사례는 있으나 매우 드문 기법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웅전은 1790년에 건축되었으나 그 안에는 대웅전의 건립 이전인 1685년에 만들어진 삼존불과 1628년과 1710년에 그려진 국보로 지정된 탕화가 보존되어 있다. 또 1782년에 주조된 범종과 1782년에 만들어진 전패가 보관되어 있다. 물론 대웅전 이후에 그려진 1886년의 영산회상도 등도 모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다.

-따라서 칠장사 대웅전은 완성도 높은 건물로서의 조형적 가치, 공포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다양성의 가치, 내출목 화반 및 불벽이 갖는 장엄적 특징과 희소성의 가치, 고분단청이 갖는 희소성의 보존가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 탕화, 불화, 범종, 전패 등 관련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국가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2. 12	대상문화재	칠장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 학교	직위(직책)	조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안성 칠장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6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2. 문화재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3. 문화재명칭 : 안성 칠장사 대웅전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칠장사(七長寺)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에 위치한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죽산면은 안성시의 동부에 위치하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까지는 주변의 일죽면과 삼죽면,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의 원삼면, 백암면을 포함하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속해왔다. 전체적인 지형은 남쪽으로 차령산맥이 지나가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나누는 경계가 되며, 북쪽으로는 비봉산 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용인과 경계가 된다. 서쪽은 도덕산과 칠장산 등이 남북으로 이어져 안성시 삼죽면과 단절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죽산은 북쪽, 서쪽, 남쪽이 산으로 가로막히고 동쪽이 개방된 형태의 분지 지역이다. 그러므로 안성천 유역보다는 오히려 장호원이나 이천 방면으로의 교통이 유리했다. 이에 죽산면 일대는 남한강 중류 지역에서 한강 하류지역, 금강 유역, 안성천 유역 등 타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의 구실을 하게 됐으며,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로서 주목받아 왔다. 칠장사는 서쪽으로 칠장산(492m)과 칠현산(516m)의 높은 산줄기를 배경으로 하고 전면인 동쪽으로 제비월산(309m)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풍수적으로는 금계포란형 명당에 해당하며, 특히 제비월산은 큰 바람을 막는 영길무흉(永吉無凶)의 길지로 알려져 조선시대 세도가들이 칠장사 일대에 묘소를 마련하고자 방화를 했던 기록도 남아있다. 칠장사가 자리잡은 위치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점으로서 산지가람으로서의 경사도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칠장사에 관한 분명한 일화는 혜소국사(惠炤國師) 정현(鼎賢, 972~1054)으로부터 비롯한다. 혜소국사는 안성에서 출생하여 10세에 출가하였으며, 13세에 유가(瑜伽) 수행을 위해 칠장사를 방문한 바 있으며, 17세에 융천사(融天寺)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말년을 칠장사에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선량하지 못한 7인을 교화하여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하며, 사찰의 이름이 칠장사(漆長寺)에서 칠장사(七長寺)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혜소국사비』에는 칠장사(漆長寺)

가 등장하여 정확하게 이름이 바뀐 시기를 알 수는 없다. 한편 『고려사』 기록에는 칠장사(七長寺)와 칠장사(七丈寺)가 등장하는데, 모두 죽주(竹州)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사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한자 표기에 혼동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칠장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로 조선 중기의 인목대비가 있다. 1623년(인종1년) 인목대비가 칠장사를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원찰로 삼으면서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 인목대비는 경전 필사본 『금강명최승왕경』과 친필로 쓴 칠언시를 하사했는데, 정조대 체제공이 이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 다른 시주자로서 여흥 민씨 민영순과 상궁 천씨가 있다. 이들은 1886년부터 1888년 사이 칠장사 불화 제작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칠장사의 교세는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18세기 이후 불상, 괘불, 불화 등 많은 불교미술의 작품들이 건축물과 함께 남아 있다.

## 5. 연혁·유래 및 특징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대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전하나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다만 2012년 기호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의 결과 혜소국사비 주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석렬유구가 1기 발견되어 절터의 오랜 연원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건축이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 초에 해당하는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중반까지의 혜소국사(惠炤國師) 정현(鼎賢, 972~1054)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혜소국사의 일화는 1060년에 건립된 혜소국사비와 주변의 석단에 의해 증명된다. 이후 1308년에 대규모 중창이 있었고 실록을 보관할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었으나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전소되었다.

이후 한 세기 이상을 폐허로 방치되었던 칠장사는 1506년 홍정대사가 사찰을 재건하면서 모양을 갖추는 듯 했으나 임진왜란의 혼란 중에 다시 전소되었다. 칠장사를 다시 소생시킨 것은 17세기 초 인목대비에 의해서이다. 1623년 인목대비는 칠장사를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원당으로 삼고 사찰을 크게 일으켜 세웠다. 1671년에도 종연대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찰 중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비교적 사세가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74년 세도가들이 일족의 장지로 칠장사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바람에 북쪽으로 터를 옮겼다고 하며, 1694년에 또 다시 방화를 저질러 제월대사가 불에 타 죽는 등 억불시대의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했다.

칠장사의 현재 건축물과 관련이 되는 시기는 18세기부터이다. 1703년 탄명스님이 비전터에 작은 법당을 지어 노천에 있던 여덟 존상을 모셨다고 하며, 이듬해에는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일어났다. 「조선국경기도죽주부칠현산칠장사사실기」(1755)에는 당시 건물로 대법당, 응향각, 진여문, 청연당, 심검당, 적목당, 백련당, 서별당, 태청루, 향적전이 이건 또는 신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거대한 건축공사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이후 1725년 원통전, 1726년 명부전, 천왕문, 해탈문, 미타전, 벽옹대사진영당이 건립되면서 온전한 사역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주목할만한 사건으로 1790년 대법당의 중창과 1828년 대웅전의 이건이 있다. 1790년 중창은 「기좌죽주칠현산칠장사대법당중창기」 현판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1789년 2월에 나무를 베는 공역으로 시작해서 1790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축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28년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이건 공사의 상황은 「경기우도죽산남령칠현산칠장사대웅전이건기문」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와, 서까래, 고재를 선별하는 내용 등을 보아 1790년에 지은 대법당을 현 위치로 옮기는 공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공사에서는 대웅전뿐만 아니라 태청루와 설선당을 함께 옮겼으므로 전체적인 배치가 이때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후 1878년 여흥 민씨 집안의 시주를 얻어 태청루 옛터에 누방 48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얼마 못가 소실되었다고 한다. 1920년 조사된 『칠장사재산목록』에는 대웅전 9칸, 원통전 6칸, 명부전 6칸, 응향각 6칸, 화엄전 38칸, 요사 8칸, 열반당 4칸, 비전암 19칸, 칠성각 3칸, 나한전 1칸이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8월 2일에는 화재에 의해 대강당 22칸과 부속건물 16칸이 소실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배치도는 1964년 신영훈이 약측한 것으로서 천왕문, 인왕문, 중문을 지나 중정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현존하는 칠장사 대웅전은 다포계 맞배집으로서 정면3칸 10.2m, 측면3칸 6.8m의 규모로 정확히 3:2의 비례를 지니는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308mm를 1척으로 보면, 정면은 모두 균등하게 11척을 한 칸으로 삼았고, 측면은 중앙 칸을 10척, 툇칸을 6척으로 계획했다. 실내에서 후불벽을 지지하는 내주는 측벽의 고주와 열을 맞추었다. 후불벽을 뒤로 밀어 예배공간을 확보하는 조선 후기의 경향을 따르지 않고 간결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후불벽에는 상단탱화인 영산회상도를 걸었고, 불단은 상단의 너비가 4.3m에 달하는 넓은 상판 위에 불대좌 3기를 배치했다. 단집은 정면 5칸, 측면 3칸에 해당하는 철(凸)자형 2층 단집으로서 공포는 1층은 5출목 11포작, 2층은 4출목 9포작을 베풀었으며, 기둥 끝에는 연봉을 달아 마감했고 중보에 걸구시켜 두었다.

처마는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이며 전면이 약 200mm가량 길다. 용마루 양 끝 쪽으로 용두를 설치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와는 1995년에 대부분이 교체된 상태이다.

다만, 암막새와 솥막새는 구와가 많다. 기단은 정면 약 12.9m 측면 10.8m로서 건물의 정면으로 약 2.4m 정도의 여유를 두었다. 기단의 재료는 정면과 북측은 화강석 장대기단이며 배면과 남측면은 자연석 기단이다. 정면 장대석 기단은 5벌대로서 높이가 1.4m 가량 되며, 기단 위는 흙바닥이다. 정면 기단의 갑석은 하부를 쇠시리로 가공해서 면석보다 약간 내쌓기가 되어 있다. 기단의 중앙에는 폭 2.3m의 화강석 계단이 8단으로 구성되었고 양옆을 소맷돌로 마감했다. 소맷돌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의 소맷돌은 운형으로 마감했고 하부의 소맷돌은 연봉으로 장식했다. 이들 석재와 소맷돌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서 비전 영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고석재를 혼용해서 쓴 것은 초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웅전의 초석은 주좌와 고막이를 새긴 고급 화강석 기초로부터 다듬은 화강석 방형주초, 자연석 주초까지 다양한 형태가 발견된다.

기둥은 하부 직경을 키운 민흘림 기법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높이에 비해 직경이 다소 굵은 편이다. 기둥의 길이는 평주보다 우주를 약 세 치 정도 더 길게 하여 귀솟음을 주었다. 민흘림과 귀솟음의 기법은 상인방의 형태와 주선의 형태가 차츰 좁아지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측면의 기둥은 구불구불한 자연재의 형상을 그대로 살린 것이 인상적인데, 1982년 수리 때 교체한 직선형 신재 기둥이 조화를 깨뜨리고 있다. 벽체는 중깃에 맞벽을 치고 새벽으로 마감한 회사벽으로서 수장면에서 10mm 정도 들어간 상태로 마감했다. 포 사이에는 포벽을 설치해서 외부에는 불화를 그렸고 내부에는 뇌록가칠에 굿기마감을 했다. 정면 문짝은 궁판을 둔 띠살 사분합문으로서 두 짝을 좌우로 열어 겹쳐서 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측면도 외쪽 띠살문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절제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창호의 단정한 문양과 휘어진 기둥의 꿈틀거리는 형상은 대조적이면서 특별한 조화를 연출하고 있다. 후면의 문은 궁판을 둔 꽃살문으로 교살에 연화문을 취했는데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공포는 앞뒤로 10구씩 설치되었다. 중앙 칸을 넓게 잡지 않고 등간격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공포 역시 규칙적으로 배열되었으며, 주심포와 주간포의 차이가 없다. 공포의 형식은 내외3출목의 다포계 형식으로 제공과 첨차를 십자로 포개어 짜고 그 위에 장혀를 결합하는 일반적인 수법이다. 출목간격은 외출목에서 238mm, 내출목에서 245mm로 거의 유사하다. 제공의 형태는 외부에서 보면 양서형에 연화문이 있는 형태인데, 내부에서는 운각, 연봉, 직절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 상황에 맞추어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주두는 굽받침이 없는 평굽 주두로서 굽은 사절되어 있다. 첨차 양단에는 공안을 두지 않았고 마구리는 사절을 했으며 하단은 궁굴렸다. 전체적으로 전면의 공포와 후면의 공포는 유사하지만 제공 끝 쇠서의 형태에서 차이가 보인다. 후면 공포의 쇠서가 조금 더 섬약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 가공기법과 초각이 다양하여 후대 수리과정에서 상당부

분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들보는 공포의 사제공 위로 얹히며 건물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부채로 구성되었다. 후불벽의 틀로 이용되는 내주는 대들보의 아래를 받치는데, 뒤로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리 선에 맞추어 둔 것으로 보아 원칙적인 건축계획을 중시했던 측면을 읽을 수 있다. 대들보 단면은 거의 원형으로 휘어진 자연목을 그대로 이용하여 실내공간에 울동감을 준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를 받쳤으며 종보와 중도리 장여 사이에 가로세로 각 8칸의 우물천장을 설치했다. 전후면의 내목도리 장혀에는 뒷보와 같은 수평재를 가설해서 대들보 위의 동자기둥에 연결해 두었다. 도리는 단면이 약 8치 정도로 실측되었는데, 장혀와 닿는 곳을 평평하게 치목하는 조선후기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측벽에서는 고주가 직접 종보를 받치고 있으며, 측벽에서 평방은 전후 뒷칸에만 설치를 했는데 남측면 전면 퇴칸 평방은 기둥에 밀착시키지 않고 452mm만 내밀었고 북측면 배면 퇴칸은 평방 뺄목을 두지 않았다.

대웅전의 단청은 1982년 보수 시에 개칠하였으나, 내부에는 아직 고단청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어칸 반자의 문양은 보상화문이며 윤곽을 돌음선으로 강조하고 금박으로 개금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돌음채색 기법은 주로 불화의 주요부분 채색에 사용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 숙련된 채색기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고급기법이다. 또 내부 반자의 황룡도는 몸통의 비늘에 금박을 도채하는 등 세부묘사의 정교함, 자연스러운 동세 표현, 능숙한 필선의 운용 등에서 고급 화사의 품격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밖에 주두를 하나의 화폭으로 설정하여 비구니와 연화, 파련문을 그리는 등 회화작품과 같이 뛰어난 솜씨도 있다. 『칠장사 대웅전 단청기록화조사』에 따르면 단청에 사용된 천연안료가 19세기 전반에 궁궐단청에 주로 사용된 안료의 성분과 다르지 않아서, 불사 주체의 강력한 자금력이나 왕실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칠장사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1982년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네 달 간 진행되었던 보수공사의 내역이 중요하다. 목부채의 상당량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도리 9개, 장혀 16개, 기둥 4개, 인방과 주선 37개 등 다수의 부채가 교체되었는데, 포부채와 관련해서는 출목장혀 57개가 교체됐지만 살미나 침차를 교체한 기록은 없다. 귀틀과 마루판, 풍판과 모끼연은 거의 대부분을 새로 교체했으며, 기와는 구재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막새는 전량 재사용하기로 하였다. 단청은 교체된 부채에만 하되 현재 남아있는 단청의 퇴색도에 맞추어 할 것을 주문했다.



##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에 중창하여 1828년에 이진된 것이 유력한 불전으로서 불교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보물지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칠장사 대웅전은 조선후기 불교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 사례이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전소되었던 칠장사는 16세기 초 중종대에 흥정대사에 의해 복구되고 17세기에 들어와 인목대비에 의해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세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1674년과 169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도가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스님이 분살을 당하는 대외적 위협 속에서 원래 위치에서 북쪽으로 사찰을 옮기는 등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703년 탄명스님이 작은 법당을 지어 노천에 있던 8존상을 모셨고, 그 이듬 해 본래 절터에 56동에 이르는 거대한 중창불사가 일어났으며, 1726년에 명부전, 천왕문, 해탈문, 미타전 등을 갖추면서 온전한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륜연대 측정 결과, 관세음, 지장, 사천왕상이 모두 1700년~1727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칠장사 경내의 형성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역의 기록에는 스님과 일반인의 이름이 다수 등장해서 왕실이나 유력가의 후원이 아닌 서민계층의 지원에 의해 사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대웅전은 1736년에 중수했고, 1790년 크게 중창했으며, 1828년 현재 위치로 이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세기 말에는 여흥 민씨 가문과 상궁 천씨의 후원에 의해 불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조선후기 유교사회의 차별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사찰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둘째, 칠장사 대웅전은 조선후기 건축양식과 기술의 영향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뛰어난 학술적 대상이다. 칠장사 대웅전은 정면 33척, 측면 22척의 정확한 3:2 비례를 갖는 비교적 세장한 평면을 가지고 있고, 조선 후기 사찰의 흰칠한 비례에 비해 다소 낮고 안정적인 비례를 취하고 있다. 또 18세기 이후 다포계 맞배집에서 보이는 절충적인 경향과는 달리 규칙적이고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면에서는 어칸과 협칸의 구별 없이 모두 같은 치수로 칸을 구획했고, 공포는 주심포와 주간포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실내 후불벽의 위치도 뒤로 이동하지 않고 중도리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다포의 양식은 18세기 이후의 형태이지만 초제공부터 4제공까지 같은 모양의 쇠서로 처리함으로써 디자인상 통일감을 우선하고 있다. 단정한 건축구성과는 대조적으로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나무를 활용해서 오래된 큰 나무의 구부러지고 흰 모습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재는 복원이 거의 불

가능한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특히 높다. 대웅전의 초석, 고막이석, 계단 소맷돌, 기단의 갑석과 면석의 일부는 고려시대 석재를 재활용한 것으로서 높은 품격을 드러내고 있으며, 실내 단청 중에는 희소가치가 큰 돌음채색 기법과 회화적 구성이 발견된다. 또한 공포를 구성하는 부재들이 정면과 배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신재와 구재를 혼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등 조선 후기 건축사 연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칠장사에는 대웅전과 더불어 불교의 오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유적과 기록이 남아 있다. 칠장사의 창건설화와 연결되는 혜소국사비(1060년, 보물488)를 비롯하여 17세기 인목대비의 후원을 증명하는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보물1627)와 오불회괘 불탱(1628년, 국보296), 18세기 초 중창불사의 산물인 삼불화괘불탱(1710년, 보물1256) 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불상과 불화, 사적기와 발언문, 석비와 현판 등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칠장사 대웅전은 기록에서 법당, 대법당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며 법당의 중수 및 중창의 역사는 여러 다른 유물들의 변모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기록에 등장하는 시주자와 장인의 명단은 조선후기 불교 예술의 영향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또한 대웅전 기단에 쓰인 고려시대의 석재는 혜소국사비가 있는 부도전 영역에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고려시대 건축의 연구에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6.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수원시 소재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내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사적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15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水原 華寧殿 雲漢閣·複道閣·移安廳)
  - 소유자(관리자) : 국유(수원시)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15
  - 조성연대 : 조선시대(1801년)
  - 구조/형식 : 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 우진각/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이안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 수량 : 3동

라. 현지조사의견(2019.02.13.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1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문화재청 명칭부여 기준에 따라 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2. 13.	대상문화재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5 월 26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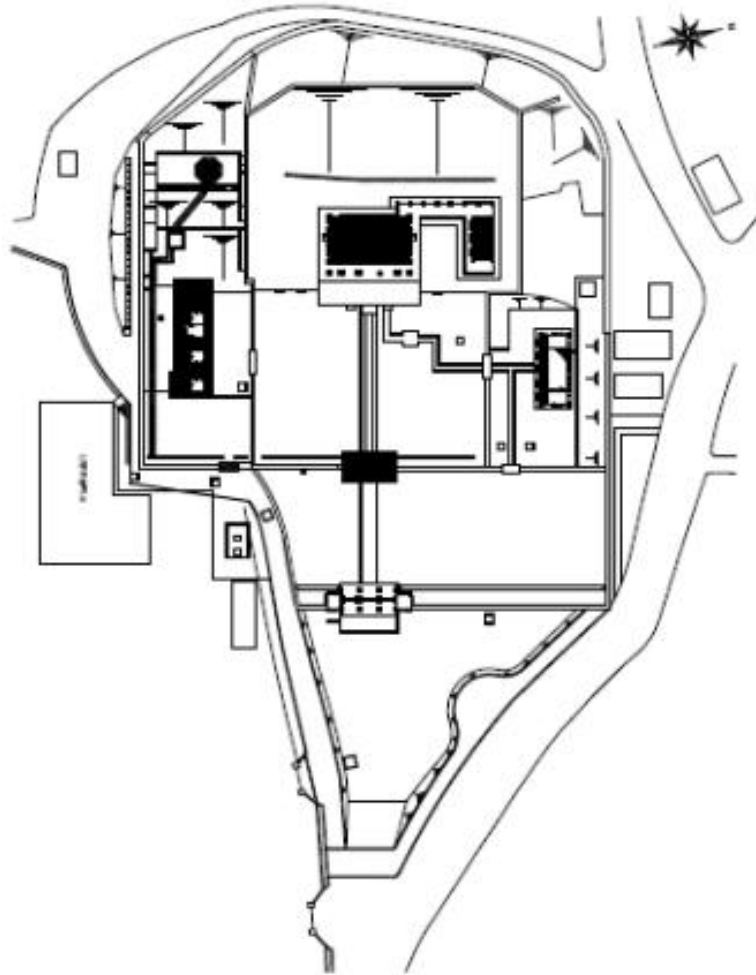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주변 환경

수원 화령전(사적 제 115호)은 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승하 후에,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지내기 위하여 지은 진전이다. 화령전 일곽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지정 신청의 대상은 화령전의 중심 영역을 구성하는 정전인 운한각(雲漢閣)과 복도각(複道閣), 이안청(移安廳)의 세 건물이다. 이들을 포함한 화령전 일곽은 모두 1801년에 조성되었다.



화령전 일곽의 배치도 (『지정신청서류』에서 전재)

화령전은 화성 행궁의 향우측(북쪽)에 있으며, 행궁과 마찬가지로 팔달산의 동사면에 자리하여 동면을 정면으로 삼아 자리하였다. 화령전 건설 당시의 건축군 구성은,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 1804)』에 자세하다. 이에 따르면, 화령전 안에는, 정전, 이안청, 복도각 등 이번에 지정 신청된 세 건물 외에도, 재실, 향대청, 전사청 등의 부

속시설과 내외삼문 및 어정(御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바깥으로부터 순서대로 외삼문, 내삼문, 정전(운한각)이 동서의 종축선상에 놓이고, 정전의 오른쪽에 복도각과 이안청이 서로 연결되어 자리한다. 내삼문과 이어진 담장으로 구획된 영역의 왼쪽(남쪽)으로는 전사청, 향대청, 어정 등 제사 준비시설이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000년의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05년 복원한 것이다. 그 맞은편인 오른쪽(북쪽)으로는 제향시 침전으로 사용되는 어재실이 역시 담장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정전과 이안청 등이 자리한 중심공간은 내삼문을 정문으로 삼은 작은 울타리 안에 자리하고, 그 바깥에 좌우로는 향대청 영역과 재실 영역이 그리고 전후로는 외삼문 안의 바깥마당과 정전 울타리 뒷마당 등이 둘러싸는 이중 구성을 갖는다.



1917년 지형도 상의 화령전 영역  
(『지정신청서류』의 자료를 확대  
편집)

이러한 구성은 1917년에 발행된 『一万分一朝鮮地形圖集成』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현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삼문 좌우의 바깥 울타리가 직선으로 쪽 뻗어 바깥 담장이 완형을 이루고 있었던 점, 정전 좌우의 안쪽 울타리에 요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 등이다.

결국 이번 지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 건물은 화령전의 중심 영역 안에 들어 있는 중심건축물군으로서, 근대 이후 도시의 발달에 따른 주변 지역의 변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두 겹으로 둘러싼 담장과 부속시설, 마당 등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형 없이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혁과 보수 이력

화령전은 왕실과 관련된 주요 제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통해서는 창건이후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있어 연혁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801년 창건이후 기억할만한 수리는, 1804년(순조 4) 서문을 수리하였다는 기록과 1872년(고종 9) 정전 실내의 온돌을 마루로 고쳤다는 기록이다. 서문은 정전 앞마당에서 향대청 영역으로 통하는 문으로, 원래 1칸의 문이었던 것을 고쳐, 향이 드나드는 향문 1칸과 하급 관원의 출입을 위한 협문 1칸으로 구분하여 증설하였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있다.

또, 1872년 정전 실내의 좌우에 가설되어 있던 온돌을 마루로 바꾼 것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어진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되며, 이 역시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확인된다. 현재도 아궁이와 온돌 고래독이 남아있어 확인된다.

화령전이 크게 바뀐 것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향사리정’에 관련한 조칙에 의해, 도성 내외에 흩어져 있던 왕실 사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롯하였다. 이때 정조의 어진은 창덕궁 선원전으로 이안되었고, 화령전은 국유가 되었다. 이후 화령전의 건물과 터는 학교로 전용되거나 자혜위원의 건립 대상지로 정해졌다는 기사가 있으나, 실제 수원자혜위원과 신흥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위치한 화성행궁터에 자리하면서 화령전은 훼손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후 “전재민과 무랑노민들이 숙소로 사용하여 건물을 말할 것도 없이 파손되고 내외성안의 잔디는 밭으로 갈아제쳐 여지없이 황폐되어” 있던 것을, 주민과 대한청년단원 등의 노력과 수원시청, 화성군청 등의 지원에 힘입어, 중수하였다는 기사가 『동아일보』(1949.12.11. 제2면)에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같은 기사에서 “고전 건축의 권위자 임배근(林培根)의 지도”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당시 대목장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하다. 또 같은 기사에,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중수 역시 기획하였으나, 물자 등의 관계로 중단하고 명년 봄을 기약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내성과 외성은 위의 두 겹을 이루고 있는 둘레 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공사를 기획하였던 그 다음 해는 주지하다시피 6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이어서 더 이상의 주민 참여형 중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사에, 화령전을 “수원의 단 하나의 고적”이라고 칭한 것을 보면, 화령전이 당시에든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진귀한 사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보수 이력은, 『지정신청서류』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화령전의 중심 건물을 직접 대상으로 한 보수는, 1973년(운한각), 1978년(운한각, 복도각), 1987년(풍화당), 1992년(운한각내 영정 배판 설치), 1998-99년(운한각, 이안청, 복도각), 2016년(운한각)



등이다. 이 가운데 목공사가 포함된 것은, 1978년의 보수 공사가 있고, 1998-99년의 보수 공사 역시 번와를 동반한 것으로 규모가 큰 것이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의 보수는 일부 지붕면의 해체 및 기와고르기 공사로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기록에 남아있는 근래의 보수 공사 중 목부재의 교체를 동반한 것은 1978년의 보수 공사가 중요하며, 운한각의 경우 서까래의 일부, 평고대와 연합의 전체, 사례 1개 등이 교체되었고, 복도 각의 경우 전돌을 새로 깔고 기와를 새로 이었다. 1998-99년의 보수 공사 때에도 기와를 교체하고, 석축 및 월대의 바닥면 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949년 임배근 도편수가 지도하였다는 중수 공사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도’하였다는 표현과 주민 및 대한청년단의 울력으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보면, 해체 보수와 같은 형식의 대규모 보수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후 기록을 남긴 현대적 보수 이력을 보더라도, 화령전의 중심 건물들은 원형을 잘 유지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건축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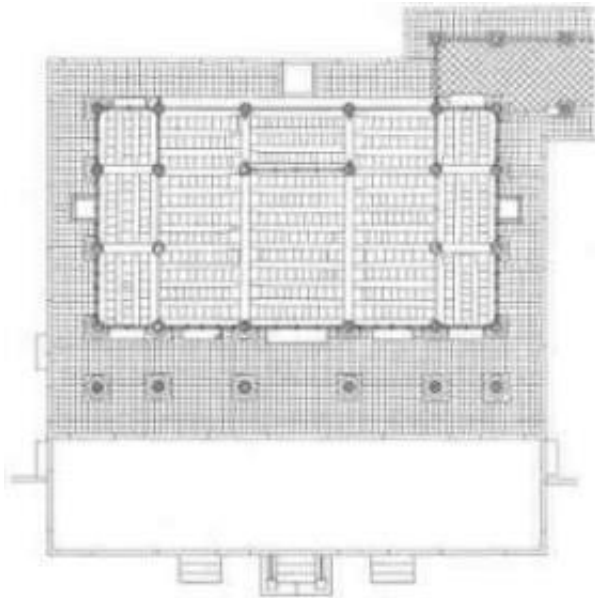
#### 1) 운한각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지붕마루엔 양성을 하였다. 기단의 전면에 월대를 갖추고 그 앞에 세 개의 계단을 두었는데, 어도아 이어진 가운데 계단에만 소맷돌을 두어 다른 계단과 구분하였다. 월대의 좌우 폭은 기단폭과 같은 17.7m이고, 앞뒤 폭은 4.1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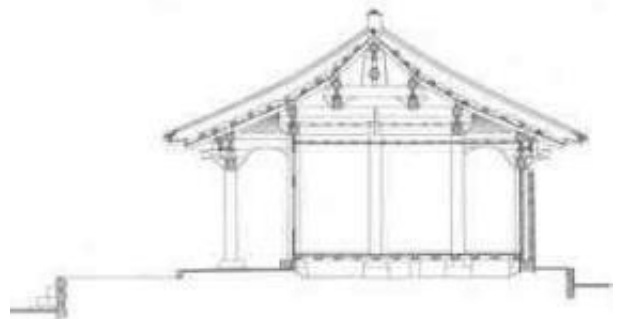


운한각의 정면

평면 구성은 중심과 이를 둘러싸는 주변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5칸x4칸의 구성에서 도리칸 칸 치수는 여칸을 12자로, 그 양 옆의 두칸은 10자, 그리고 좌우의 협칸은 7자로 줄어나갔고, 보칸의 칸 치수는 가운데 두 칸은 9자, 앞뒤의 퇴칸은 7자로 줄어났다. 이러한 칸치수의 조정은 내부 공간의 기능에 따른 조정이기도 하며, 상부의 지붕 가구를 구성하기 위한 구조적 고려에 따른 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간의 구성 역시 이러한 질서를 쫓아서, 전후의 퇴칸은 각각 개방된 의례공간으로 꾸미거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한 구분된 감실인 합자를 두었고, 좌우의 협칸열은 익실을 두는 등 중앙부와 구분하였다. 현재 실내 공간은 모두 터져있는 단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의 3칸과 좌우의 협칸 사이에 원래 벽을 세워 구분하였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즉, 중앙의 여칸 좌우로만 내주를 두지 않고 대들보로 처리한 점, 양 협칸의 내부 기둥 사이에 중방을 끼웠던 흔적이 남아있는 점, 우물마루의 귀틀의 방향이 서로 직각으로 구분되는 점 등은 과거 양 협칸이 익실로 구분되어 있었던 증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운한각 평면도(『지정신청서류』에서 전재)



운한각 종단면도 (『지정신청서류』에서 전재)

이러한 익실의 존재는 운한각 각 면의 벽체와 창호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즉, 운한각의 측면은 전체가 머름을 갖춘 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은, 익실로 연결되는 양협칸에는 문이, 그리고 가운데 3칸은 화방벽으로 마감되어 있다. 또 우측면 후면의 문은 복도각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전면을 통하지 않고도 익실로 바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실에는 제례의식에 사용하는 여러 기물을 보관하는 한편, 정조가 편찬한 서책도 두었다고 한다.



어칸 최후열에 설치된 합자와 어진



운한각의 측면과 후면 벽체와 창호

내부의 합자는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는 곳으로, 배면과 좌우측면을 벽으로 막고 정면에는 고주사이에 분합문을 달아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다. 바닥은 한단 높게 하고 천장은 한단 낮게 하여 마치 집 속에 집이 들어가 있는 형식을 취하였다. 별도의 당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은 주합루의 예를 좇은 것으로, 소박함과 경건함을 위한 것이다. 현재 봉안되어 있는 어진은 2006년 새로 제작한 군복본 어진이다.

내합의 바닥은 양 익실과 같이 원래 온돌 구조였다고 하며, 이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고종 년간에 화재의 위협에 대비하여 합자와 익실의 온돌을 마루로 바꾼 것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물 바깥 기단면에 불을 떼기 위한 아궁이 구멍이 있고, 이를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그 원형을 짐작할 수 있다.



운한각 후면 기단에 있는 합자의 아궁이 장치



운한각의 우측 기단 상면에 있는 우익실의 아궁이 장치와 고맥이

운한각은 2고주7량 구조이고, 양 고주의 밖에 있는 전후의 퇴칸은 각각 개방된 퇴칸과 합자를 두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공간구성과 구조계획이 호응하고 있는 점을 잘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들보의 사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2고주 5량이라면, 두 고주의

사이에 대들보를 두고, 그보다 한단 낮추어 양 뒷칸에 뒷보를 두게 마련이지만, 여기선 고주 상부를 잇는 대들보 외에 추가로, 뒷보의 높이에 맞추어 고주의 윗부분에 같은 높이로 들보(덧보)를 걸었다. 그리고 그 들보의 하면에 격자천장을 가설하였다. 그 결과, 구조는 2고주 5량가이지만, 3중보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공간적으로는 중앙과 전후면의 3구분이 아니라, “개방된 전퇴의 공간 + 평천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실내공간”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신청서류』에서는 덧보를 후대에 천장을 가설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해방 후의 보수를 제외하곤 특별한 보수 이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통합된 실내의 중심 공간”을 구미기 위한 고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익실부분에는 천장을 가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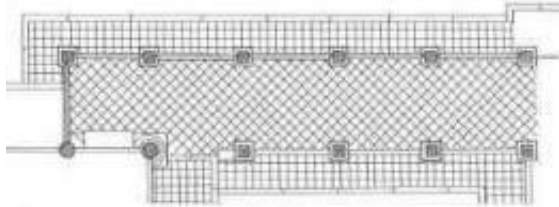
운한각의 격식이 돋보이는 부분은, 세부 가공 기법에 있다. 기둥의 민흘림 가공, 익공과 보아지의 초각과 쇠서 조각, 창호의 궁판널과 창틀의 고정쇠, 단청, 지붕 마루 양성과 잡상, 기단 석축의 가공 등의 세부는 모두 궁실 건축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내의 반자는 격자살의 우물 반자를 가설하였으나, 검박함을 쫓아서 장식은 없고 단색 단청으로 마감하여 제사 건축의 성격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2) 복도각

복도각은 정전과 이안청을 연결하는 통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규모는 단칸 폭에 5칸의 길이를 가지며, 정전인 운한각의 후면 협칸에 뒤로 붙어서 이안청의 좌측 협칸에 정면으로 붙어 있다.

한 칸의 규모는 사방 8자로 하였는데, 이는 이안청의 칸치수에 맞춘 것이다. 다만, 운한각에 붙어있는 첫번째 칸의 경우, 운한각의 협칸 가로폭에 맞추어 7자로 줄여 맞추었다.

구조는 3량가의 민도리집이고, 바닥에 방전을 대각선 방향으로 깔고, 주변 기단보다 한 단 올려 구분하였다. 기둥은 각기둥으로 하여 정전인 운한각의 원기둥과 구분되게 하였고, 초석 역시 방형으로 가공하여, 원형의 운한각 주초와 구분된다. 전체가 벽을 두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지만, 후면 5칸과 운한각과 만나는 측면 1칸에는 평난간을 둘러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복도각 평면도 (『지정신청서류』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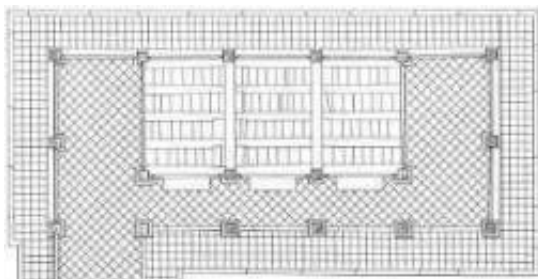


지붕은 운한각과 만나는 부분엔 우진각의 꺾음지붕으로 하고, 이안청과 만나는 부분의 단부는 맞배로 처리하였다. 두 건물의 지붕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높이를 낮추었고, 굴도리를 사용하였으나 익공 없이 민도리로 처리한 것도 이와 같은 높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이안청

이안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전체의 칸치수가 사방 8자로 통일된 실용적이고 단순한 구성을 갖는다. 운한각의 오른쪽에 위치하나, 방향을 틀어 직각으로 앉았다. 즉 운한각을 바라보는 형국이며, 운한각이 동향인데 반하여 남향이 된다.

이안청은 수리와 포쇄 등의 때에 어진을 임시 봉안하는 곳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평면의 구성은 가운데 세 칸에 반칸을 물러 마루방을 들이고, 나머지 양 협칸과 중앙의 전퇴 부분에는 방전을 칸 개방적 공간이 된다. 바닥의 방전은 복도각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깔아서 기단 위의 방전 패턴과 구분되게 하였다.



이안청 평면도 (『지정신청서류』에서 전재)



구조는 전퇴를 둔 1고주 5량으로 하여, 그 고주의 열에 맞추어 마루방과 전퇴 공간을 구분하였다. 기둥은 각기둥이고 공포는 출목이 없는 초익공이다. 익공의 세부 조각 형태와 수법은 운한각의 경우와 같이 궁실 건축에서 보는 정갈한 솜씨를 보여준다. 개방된 전면 외의 나머지 세면은 중방 아래로 화방벽을 설치한 벽체로 막았고, 양측면의 중방 위로는 창방 아래, 기둥 사이로 가득 너살창을 달았다.

복도각에 의하여 연결된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의 세 건물은 모두 동시에 같은 집단에 의하여 지어진 집들이지만, 지붕의 형태와 장식, 기둥의 형태와 규격, 익공의 종류, 기둥의 높이, 벽면과 개구부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격에 따른 세심한 구별이 보인다. 또 다양한 형식의 창호와 전돌, 잡상, 기단석과 고매이, 도드레 등 세부 기법이 풍부하게 남아있어서, 조선후기의 건축 기법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4. 종합 검토의견

화령전은 조선시대 국왕의 어진을 모신 영전 건축 가운데,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써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전과 달리, 화령전에는 순조, 헌종, 철종, 고종에 이르기까지 정조 이후의 모든 왕들이 직접 방문하여 제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인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은 화성 성역과 공해의 공역을 마친 직후에 건설하여, 당대의 숙련된 건축 기술이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으며, 이후 수원의 근대적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도 두 겹으로 둘러싸인 성역 내에 위치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최초 건축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해온 것으로서 보인다.

전체적인 건축적인 세부는 화려하지 않으나 품격이 있고, 나무와 돌 등 재료의 사용과 가공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갖추어 왕실 건축으로서의 위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정전인 운한각의 내부에 합자와 익실을 마련한 점, 운한각과 이안청 사이를 복도각으로 연결한 점 등은 화령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서, 왕실 영전 건축에 대한 당대의 새로운 해석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례에 사용되는 집기와 어진을 모신 합자의 구성 등도 진전 건축의 완전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하며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내용이다.

이상에서 약술하였듯,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인,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의 세 건물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 2. 13.	대상문화재	화령전 운한각 및 복도각과 이안청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화령전 영진 및 이안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영진의 지역적 특징, 건축 및 학술적 가치, 희소성, 보존상태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2 월 2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화령전은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34에 있으며, 이곳은 화성 내로 화성행궁과 연결하여 행궁 좌측(북쪽)에 행궁과 같이 동향을 하고 있다. 서쪽의 팔달산을 주산으로 배치된 행궁과 나란히 주산을 공유하고 있다. 정조는 화성건설을 위해 먼저 정조13년(1789)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을 먼저 수원도호부가 있던 화산으로 옮기고 수원도읍은 새 장소인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도록 하였다. 새로 옮긴 수원신읍은 지방고을의 웅색한 모습을 벗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또 수원부사의 직급도 한성부 판윤과 같이 정2품으로 승격시켜 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수원부로 부르던 명칭을 화성(華城)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줄곧 수원은 화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으나 1895년 지방관제 개편과정에서 다시 수원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신도시가 건설되고 4년 정도가 지난 정조17년(1793)부터 화성축조가 준비되고 1796년에 완성하게 되었다. 정조는 즉위 후 규장각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시파의 사람들을 대거 관료로 기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도세자 무덤의 이전, 수원읍의 이전과 유수부 승격, 화성의 축조 등을 진행시켰다. 화성축조가 시작된 정조17년 5월에 당대 제일의 명재상 채제공을 새로 영의정으로 임명했다. 채제공은 그 전에 초대 수원부 유수를 지낸 인물이었으며 화성축조에 관한 방도를 왕에게 올린바 있던 화성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원로대신인 채제공을 화성축성의 공사 총책임자인 총리대신에 임명하고 동시에 당대 가장 총망 받던 젊은 학자 정약용에게 화성 축성계획을 맡겼다. 당시 정약용은 31세로 원로의 경륜과 젊은 학자의 참신함을 바탕으로 화성을 축조하게 하였으며 실제 공사의 집행은 당시 수원부 유수였던 조심태가 진행하였다. 실용성에 바탕을 둔 근대적 건축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개혁과 화성축조를 주도했던 정조는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화성이 완공된지 4년 만인 1800년 6월 28일 49세의 일기로 승하하였다. 정조의 영정을 모실 별도의 사당을 지은 것이 화령전이며 화성행궁 바로 옆에 자리잡게 되었다. 화령전은 지형 조건상 주산인 팔달산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향을 하게 되었고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을 잇는 남북간 도로를 좌우도로로 두고 대로에서 살짝 안으로 후퇴 한 곳에 자리잡았다. 좌우도로 너머에는 수원천이 가로 놓여 있다. 안산으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창룡문을 주변으로 낮은 구릉이 자리잡고 있어서 미약하지만 풍수형국의 사산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붙임2> 연혁·유래 및 특징

### 1) 창건과 변천

화령전은 정조 승하 3개월이 지나서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명으로 지어졌다. 이듬해 1801년 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4월 29일에 준공하였다. 5월 2일에는 사도세자의 현릉원 재실에 있던 정조의 어진과 창덕궁 주합루에 있던 어진을 옮겨와 정전에 봉안하게 되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려는 뜻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현릉원 재실에 두도록 하였는데 정조가 승하하여 건릉이 만들어지면서 어진을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화령전에 국왕의 작헌례가 시작된 것은 1804년 순조4년이 최초이다. 이후 순조대 9번, 헌종대 1번, 철종대 3번, 고종대 2번의 작헌례가 거행되었다. 국왕이 꾸준히 지방의 영전에 작헌례를 행한 것은 화령전이 유일하다. 국왕의 행차도 특별한 것이지만 국왕이 직접 절을 올리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화령전의 위상이 각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축 또한 한양의 궁궐 목수들을 불러 지은 것으로 정교하고 세련되며 19세기 영전건축의 진수를 보여준다.

화령전 건축은 수원부 유수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터를 살핀 결과 강무당에서 남쪽으로 77보, 낙남헌에서 북쪽으로 79보 되는 곳에 동향한 자리에 터를 잡고 도형을 그려 바쳤다. 그리고 실내에 모시는 어진은 당가를 만들지 않고 간단한 감실 형태의 합자(閣子)를 설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2월 30일 정초를 시작으로 3월16일에 입주하였으며 4월29일에 준공하였다. 매우 신속하고 빠른 공사의 진행이었다. 5월2일에는 어진을 봉안하였는데 주합루 본은 대본으로 펼쳐서 봉안하였고 현릉원 재실본은 궤짝에 넣어 보관하였다.

공사의 총책임자로 제조에는 수원부 유수 이만수가 맡았고 실무책임자인 도감동은 친위군별장 이건수와 본부판관 이병원이 담당하였다. 기술적인 실무책임자는 성곽공사에서도 별간역을 맡았던 정우태로 순조대 인정전공사까지도 별간역을 맡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화령전은 화성과 궁궐건축의 계보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령전이 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헌례를 행하려고 하니 서문(西門)이 문제였다. 서문은 정전 남쪽 담장에 난 협문을 가리키는데 원래 1칸이었다. 문 밖에는 향대청과 전사청이 있었다. 제례 때에는 향대청에서 향을 옮겨 정전으로 가려면 서문을 지나게 되는데 1칸으로 좁아 1804년에 1칸을 추가하여 향문1칸과

협문1칸으로 했다.

그리고 1872년(고종9)에는 정전 실내 온돌을 마루로 고쳤다. 고종은 화령전뿐만 아니라 영희전과 경기전과 창덕궁 선원전도 모두 온돌을 마루로 교체하였다. 온돌은 습기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상시 관리가 어렵고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루로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을 마루로 고치는 공사는 1872년 6월 2일에 착수되어 6월 5일에 마쳤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향사이정 정책에 따라 창덕궁 선원전으로 어진이 옮겨지고 재실은 학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축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1949년에는 화령전을 고쳤다는 신문기사가 있으나 얼마나 변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1978년에는 정전인 운한각은 변화공사로 암기와 1,665장, 수키와 603장, 막새 54장이 교체되었고 기단석의 드잡이와 장연 및 단연 각 24, 선자연13본, 부연24본, 연함 및 평고대 전체가 교체되었다.

1999년에는 월대 바닥의 양성바름과 지붕공사로 암기와 3,147장, 수키와 1,385장, 막새 114장, 잡상 1조가 교체되었다. 전체 기와의 40% 가량이다. 이때 이안청도 변화공사가 있어서 적심이상 해체하여 암기와 1,710매, 수키와 777매, 암수 막새 각각 73매가 교체되었다. 1999년에는 발굴을 통해 이를 근거로 2005년에는 향대청과 전사청 영역을 복원하였다.

## 2)건축적 특징

화령전의 정전은 운한각이며 운한각을 바라보고 운한각과 직각으로 놓인 이안청과는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안청은 정전을 수리하거나 정전에 이변이 있을 때 어진이나 서책, 기물 등을 잠시 옮겨 놓는 용도이다. 정전과 이안청이 직각으로 배치되어 복도각으로 연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초기의 태조의 어진을 모신 영전들은 왕릉의 정자각과 같이 정전이 정자형을 이루고 있어서 후기 영전들과 차이가 있다.

정전은 정면5칸×측면4칸 건물로 전면에는 장대석을 사용한 월대를 두었다. 전면의 주칸은 어칸 12자, 협칸 10자, 퇴칸 7자로 확연하게 차등을 두어 간살이하였다. 측면은 중앙2칸이 9자이고 앞뒤 퇴칸은 7자이다. 1899년에 간행된 ‘수원부읍지’에도 화령전은 7량에 20칸 규모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건물은 당초의 규모와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조척은 308mm 정도로 당시 보편적인 척수를 사용하였다. 기둥은 원기둥으로

1자4치로 육중하고 굵은 편에 속한다. 내부는 현재는 모두 마루가 깔려 있으나 창건 당초에는 양쪽 협칸에는 온돌이 있었던 것을 다른 영전과 함께 1872년에 마루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아궁이 흔적은 지금도 정전 뒤쪽 기단에 남아 있다. 또 양쪽 퇴칸과 협칸 사이에는 벽이 있었으며 그 중간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이 부분은 언제 고쳤는지 알 수 없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로 추정된다.

공포는 1출목 이익공형식으로 익공을 포함한 행공과 보머리, 화반에는 당초가 조각되어 있다. 당초의 모양이 그대로 익공과 행공 등의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부드럽고 섬세하며 궁궐건축의 고급스런 장식기법을 보여준다. 단청이 아닌 조각으로 당초를 표현한 것은 창덕궁 낙선재, 화성 화서문 등 궁궐건축에서 보이는 형식과 일치한다.



그림38. 궁궐양식의 초각형 공포와 보머리 장식



그림39.영정을 건 합자의 모습



그림40.구들은 없어졌지만 아궁이 흔적은 남음



그림41.지금은 보기 드문 문짝 고정장식물

가구는 2고주7량가로 고주 머리에서도 뜯창방이 사용되었고 당초가 새겨진 고주 행공과 고주익공이 사용되었다. 다만 고주 익공은 평주와 달리 물익공형태이다. 전퇴와 좌우퇴 부분에는 천장이 없고 중앙에는 우물반자를 설치했다. 처마는 겹 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으로 지붕마루는 양성바름하였고 용마루 양쪽에는 취두, 내림마루에는 용두, 추녀마루에는 7마리의 잡상을 올렸다. 전면은 모두 이중청판

세살분합을 달았고 양측면은 머름이 있는 세살분합이며, 배면은 좌우 퇴칸을 제외하고는 창방 하단까지 화방벽을 설치했다. 그리고 분합 상부에는 교살광창이 있다.

창방에는 행사 때 사용하던 차일걸이와 도르레 등이 원형으로 남아 있고 하방에는 문을 고정하는 목재로 만든 호리병모양의 장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한 장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초석은 원형으로 운두가 외만한 곡선이며 고맥이초석으로 고맥이석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통판으로 막음하였다. 수리에서 고맥이를 교체한 적이 없으므로 원형이라고 추정된다. 초석의 모양은 조선 후기 궁궐건축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다.

정전 북쪽의 이안청은 정면5칸×측면2칸 규모로 모든 주칸은 8자로 일정하다. 기둥은 방형이며 공포는 초익공으로 출목도 없으며 정전보다 격을 한 단계 낮추었다. 좌우협칸과 전퇴는 방전을 깔았고 중앙 3칸은 우물마루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으로 양성바름하였고 용마루 양쪽에는 용두를 올렸다. 전면은 퇴가 개방되어 있고 고주열에는 청판세살분합을 달았다. 양쪽 측벽은 중방 이하는 화방벽이고 그 위에는 만살광창을 달았다. 배면은 중방 이하는 화방벽이며 그 위는 심벽이다. 가구는 1고주 오량가로 고주와 공자주에는 익공과 행공을 사용하지 않았고 종도리 하부에만 뜬창방을 사용했다. 화방벽은 사고석 위에 전벽돌을 사용했으며 기둥이 있는 부분은 용지판 대신 두꺼운 각목을 전체적으로 덧붙였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처리방식이다. 문살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고식의 투밀이 기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익공과 보머리, 보아지 등에 당초를 조각한 모습은 정전과 동일하다. 내부는 정전과 같은 우물천장을 설치했다. 창방 등에는 차일걸이 등 철물장식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정전과 이안청을 연결하는 복도각은 5칸으로 정전과 접하는 첫째칸을 7자로 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8자주칸이다. 바닥은 방전을 깔았으며 초석과 기둥은 모두 방형이다. 전면은 개방되어 있고 배면은 교란이 설치되었다. 가구는 삼량가이며 민도리집이다. 그러나 부재의 사용은 정전과 이안청 못지않게 후덕하다. 대공은 당초가 새겨진 파련형이다.

### <붙임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화령전은 1801년 창건 당초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붕 재료를 제외한 부재와 재료 및 장식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구조부재는 물론이지만 문짝 고정장

식물이나 장식 철물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다.

-화령전은 정전인 운한각과 이안청이 복도각으로 연결된 구성인데 조선초기 정자각 정전에 이안청이 별도로 있는 영전과는 달리 조선후기 영전의 변화된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 간 건축제도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일곽이 잘 남아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정전의 평면구성이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으로 주칸의 크기를 달리해 격식을 두는 건축제도를 보여준다. 이런 영전의 평면 모습은 다른 영전에서 보기 어려운 화령전 정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몇 안 남아 있는 영전의 희소성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화령전은 조선시대 영전의 전통을 계승한 유적으로 시대적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 유적으로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 또 대부분의 부재가 창건 당초의 것으로 진정성이 높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 동원과 기술 및 기법이 남아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석물뿐만 아니라 목부재의 치목수법, 치밀한 가공과 조각, 장식물의 원형 보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인정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8. 2. 12	대상문화재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학교	직위(직책)	조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 명칭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6 월 5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조사보고서>

1. 조사자 : ○○○
2. 문화재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3. 문화재명칭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수원 화령전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正朝)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제사지내던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華城) 내 행궁(行宮)의 북면에 접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으로 미복원시설인 우화관, 별주, 장춘각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화성유수부의 제2관청이었던 이아(貳衙) 또한 복원사업을 계획중이다. 화령전이 자리잡은 수원행궁은 팔달산 북동쪽 산자락 끝에 있다. 팔달산은 146m 높이의 야트막한 산으로, 수원의 주산인 광교산을 멀리 바라보며 안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팔달산은 행궁의 서쪽을 감싸고 낮아져서 서쪽문인 화서문과 만나며, 정상에는 서장대가 있다. 서장대(西將臺)는 화성의 군사지휘본부로서 '화성장대(華城將臺)'라고도 불리며, 1794년(정조 18년) 8월 11일 공사에 착수, 9월 16일에 상량하고, 9월 29일에 완공됐다. 화성장대 편액은 정조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장대에서는 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화성 일대는 물론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100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와 같은 지형 아래 화령전과 행궁은 모두 서측의 성벽을 등지고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원 화령전은 국왕의 초상화를 봉안하는 영전이다. 국왕의 초상화를 그려 제사지내는 전통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꽤 많은 건축물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08년 향사리정 칙령에 따라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궁궐에 있던 선원전, 전주 경기전, 개성 목청전, 수원 화령전 정도이다. 화령전에서는 매 5일 간격으로 봉심하였고 삭망에는 분향을 올렸으며 사맹삭 15일에 대봉심을 하였다. 화령전에서 봉심은 어진을 살펴본 후 향을 피우고 건물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매년 정해진 기일에 탄신제와 납제가 올려졌다. 역대 국왕의 탄신제를 거행한 곳은 화령전이 유일하다. 또 화령전은 건립 이후 역대 임금들이 화성에 오면 반드시 작헌례를 올리는 곳이었다. 최초의 작헌례는 순조4년(1804)에 시작했으며, 순조대에만 9회, 현종대에 1회, 철종대에 3회, 고종대에 2회의 작헌례가 거행되었다. 작헌례는 공자를 모신

문묘에 국왕이 예로써 잔을 올려 제사를 드리는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왕릉에서 부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국왕의 능침 친제는 이따금 거행되는 행사지만, 국왕이 지방도시에 있는 영전에 작헌례를 거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화령전의 작헌례는 현릉원과 건릉 친제를 위해 국왕이 화성에 올 때 행궁에 연접해있는 화령전에 들르는 일이 관례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밖에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순조가 화령전에 행차하여 작헌례를 올릴 때 다례를 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화령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화령전에 모셔졌던 정조의 어진은 1954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소실되어 현재는 표준영정이 봉안되어 있지만 여타의 시설이 『화령전응행절목』에 따라 잘 복원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의례를 고찰할 수 있는 희귀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5. 연혁·유래 및 특징 :

화령전은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한 이후 산릉의 건축과정에서 계획되었다. 정조의 능자리로 현릉원(顯隆園)의 동쪽 언덕이 제안되었는데, 봉표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정조의 어진봉안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 7월 27일 어진을 화성 행궁으로 옮기게 되었다. 현릉원에 있던 어진은 1792년에 봉안한 것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을 상징하는 징표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전(影殿)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질적인 건축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현릉원의 정조 어진은 소본(小本)으로서 행궁에 지어지는 영전의 격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12월 6일 규장각 서향각(書香閣)에 봉안되었던大本(大本)을 화성행궁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의 정조 영전 건축계획은大本 1점과 소본 1점을 동시에 봉안하는 시설로서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 해인 1801년 1월 6일 영전의 전호를 화령전으로 정했으며, 1월 29일 화성행궁 낙남헌(洛南軒)에서 북쪽으로 79보가 되는 자리에 유좌묘향(酉坐卯向)을 한 건축계획이 도형(圖形)으로 작성되었다. 이어 2월 10일 건축물의 격식과 설비를 논의하여 정하였고, 2월 20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29일에 완공하였다. 화성행궁 유여택(維與宅)에 임시로 보관했던 두 점의 어진은 5월 2일 묘시에 화령전으로 옮겨왔다. 당시 실내에 보관된 물품들은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에서 확인되는데, 용상, 오봉대병풍, 보검 한 쌍,大本 1좌와 소본 1좌 등 중앙에 봉안된 물품뿐만 아니라 『어정사부수권』 12권, 지문, 주칠제상, 주칠향상, 일산, 양산, 도끼, 주칠의장기, 어제현판 3좌, 봉안각현판 1좌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전 실내의 복합적인 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화령전응행절목』에는 정전, 이안청, 복도각, 재실, 향대청, 전사청, 내외삼문, 어정이 등장하는데, 이중 중심부의 건축물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 있고, 1999년과 200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훼손된 전사청과 어정 등의 상황이 파악되어, 전체적인 배치는 창건 이래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화령전의 배치는 외삼문과 내삼문, 정전이 동서 방향의 직선축에 위치하고, 정전의 북측에 복도각과 이안청이 연결되어 있으며, 별도의 담장을 두고 북측 협문을 지나 재실이 자리한다. 남쪽으로도 담장과 협문을 두고 전사청과 어정을 복원해두었다. 정전에 이르는 길은 참도를 두었는데 내삼문에서 정전에 이르는 직선 참도는 신도와 좌우 어도를 갖춘 삼도로 구성했고, 재실에서 협문을 나와 정전에 이르는 참도는 어도만으로 구성되며 중간에 판위가 있다. 참도는 외곽에만 전돌을 두르고 안을 흙으로 마감했다.

정전이 자리잡은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주변을 두르고 안쪽에 흙과 전돌을 깔았으며, 앞쪽으로 약 4m를 내민 월대를 두었다. 월대의 전면에는 계단을 3개 두었는데, 가운데 계단은 운문을 새긴 소맷돌을 갖추고 내삼문과 이어지며, 오른쪽 계단은 재실에서 시작하는 임금의 동선이 연결된다. 정전의 당호는 운한각(雲漢閣)으로서 순조가 1804년 4월에 처음으로 작헌례를 올린 다음 그 해 가을에 내려 보낸 어제현판이 달려 있었으나 20세기 중에 유실되었고, 1966년과 2005년에 각각 편액을 새로 썼다. 운한(雲漢)이란 은하수와 같이 방대한 서책을 섭렵한 학자를 비유하는 문구로서 학문을 존중했던 정조를 기리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운한각의 건축형식은 1801년 2월 10일 수원유수 이만수(李晩秀)의 제안에 따라 건축제도에서 견고함과 소박함을 위주로 하고 실내에 당가(唐家)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앞에 합자(閣子)를 설치해서 창덕궁 주합루(宙合樓)의 구성을 따랐다고 한다.

운한각은 정면7칸, 측면4칸 규모의 평면에 팔작지붕을 올리고 지붕마루를 양생한 모습이며, 이익공 양식의 격조높은 위상을 드러내면서 반듯한 부재를 단정하게 사용하여 견실한 유교건축의 풍모를 보여준다. 칸의 규모는 308mm를 1척으로 볼 때, 정면5칸은 7척-10척-12척-10척-7척이고, 측면4칸은 7척-9척-9척-7척으로서, 22척과 18척 크기의 내주가 없는 3칸×2칸 평면에 7척의 퇴칸을 사방으로 돌린 모습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궁궐의 정전이나 중층 건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 과도하게 큰 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건축물의 위계가 드러나고 안정적인 목구조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된 점이 특징이다. 중심부 구조의 형식은 2고주 7량가로 하였고, 평주 위로는 출목도리를 받치는 2익공 양식의 공포를 두었다. 고주에도 초익공과 주두를 두고 대들보를 얹었으며, 같은 양식이 뒷보 아래 보아지, 대들보 위 중보를 받치는 대공 등에서 항상 반복되어 디자인적 통일감을 완성한다. 중보 위로는 파련대공을 얹어 뜬창방, 장혀, 중

도리를 차례로 받쳤으며, 뜬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화반을 설치했다. 대들보 아래로는 뒷보와 같은 높이로 덧보를 설치했고, 중간에 홈을 파서 반자를 끼웠다.

운한각의 전퇴 부분은 모두 외부로 개방했기 때문에 기단의 전돌 바닥이 그대로 이어지며, 이를 제외한 실내 공간은 정면5칸, 측면3칸의 규모가 된다. 이중 3칸×3칸 규모의 중앙은 제청으로, 좌우 뒷칸은 익실로 구성했으며, 제청 뒷벽은 벽돌을 창방 높이까지 쌓아 영전건축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청과 좌우 뒷칸의 구획은 현재는 사라졌으나 기둥에 중방을 끼웠던 흔적, 우물마루의 귀틀방향, 우물반자의 측면마감이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원래 벽체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청 중앙 후퇴 한 칸에 꾸민 내합은 배면과 좌우측면을 벽으로 막고 정면에 세살청판 분합문을 달았다. 문 위에는 교창을 설치했고, 바깥으로 허주와 낙양이 장식된 당가를 부분적으로 달아 왕실의 격식을 갖추었다. 아래쪽에는 연주가 장식된 머름동자와 초각을 세긴 머름을 설치해서 장식성을 더했다. 내합의 안쪽에는 평상을 짜고 주변에 난간을 둘러 용상을 꾸몄으며, 용상 뒷벽에 일월오봉병풍을 놓고 병풍 앞에 어진 대본과 소본이 든 케를 두었으며, 어진 소본의 족자는 꺼내어 중앙에 걸었다. 좌우 익실에는 정조의 유품들과 함께 영전 의례에 사용되는 물품을 보관했다.

운한각의 특이한 시설 중 하나는 어진과 서책 등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난방 시설이다. 운한각의 아궁이는 모두 3개소가 발견되는데, 내합의 후면부에 하나, 좌우 익실의 측면에 각각 하나씩 있다. 내합에 온기를 공급하는 배면의 온돌 시설로는 아궁이와 구들장, 기단석에 뚫린 연도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아궁이에는 매 5일마다 불을 때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측면 아궁이 안쪽으로는 온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불을 넣는 설비라기보다는 훈습(煇濕)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872년(고종9년) 5월에 고종은 영희전과 화령전, 이어서 경기전과 선원전의 온돌을 마루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화재를 우려한 조치인 이 교지에 따라 화령전의 온돌이 철거되었는데 6월 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구들의 철거와 마룻바닥의 조정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안청은 운한각의 측면을 바라보고 서있는 건물로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진을 임시로 봉안하기 위한 시설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이지만 실제 봉안하는 곳은 정면3칸의 우물마루를 설치한 공간으로 좌우 칸과 전퇴는 개방했다. 칸 치수는 모두 8척으로서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고 있으며, 퇴칸을 4척이 아니라 5척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지붕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처마도리로부터 부연 끝까지의 내민 길이는 1,645mm로서 퇴칸을 4척으로 계획했을 때보다 약 0.5m가량 큰 처마가 생겨났다. 목조

양식은 1고주5량가를 바탕으로 운한각의 격식을 한 단계씩 줄였다. 공포는 초익공 양식을 적용했고 뒷보와 대들보 아래에는 동일한 형태의 보아지를 구성했지만 고주 상부와 대공에는 익공 형태를 표현하지 않았다. 후면에는 벽돌벽을 중방 위치까지만 낮게 쌓았다. 기둥 안쪽의 바닥에는 방전을 깔았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방전을 배열한 것이 독특하다.

복도각은 운한각과 이안청을 잇는 통로로서 영전 건축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건축적 장치이다. 총 5칸으로 구성된 3량가 홀처마의 단순한 구성이지만 두 건물의 평면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복도각의 좌측은 운한각의 후퇴와 연결되는데 운한각의 후퇴폭이 7척이므로 자연스럽게 1척을 줄였다. 나머지 네 칸은 모두 8척 크기의 정방형 칸을 갖는다. 또 운한각 및 이안청과 각각 만나는 위치에서 지붕을 처리한 방식이 교묘하여 디테일을 처리하는 건축가의 솜씨를 감상해볼 수 있다. 바닥은 이안청과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방전을 깔았다. 복도각과 이안청 계획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주칸이 모두 8척이라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이안청의 정면 너비 40척은 운한각의 측면 규모 32척에 복도각의 폭 8척을 더한 것과 일치해서 정전, 이안청, 복도각이 모두 8척 간격 그리드 선에 맞추어 서있다. 이와 같은 정합성은 궁궐이나 궁가 등 최상위 건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서 화령전 건축계획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화령전은 1872년 온돌을 철거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커다란 변화 없이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08년 향사리정(享祀釐正) 칙령에 따라 정조 어진이 창덕궁 선원전으로 옮겨지면서 재실은 학교로 전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풍화당 부로들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일제강점기가 도래하면서 1910년에는 관립자혜의원이 개원하여 운한각과 이안청을 제외하고 병실로 활용한 적이 있으며, 『동아일보』 1934년 2월 4일자 기사에 의하면 수원고적보승회(水原古題保勝會)에서 문을 수리한 바 있다. 당시 수원 화성은 로맨틱한 풍경의 도시로 알려졌는데, 화령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한 여성 아티스트 나혜석의 유화 「화령전 작약」은 1943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령전은 아름다운 정원의 배경처럼 그려져 있다. 이후 해방 정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1949년 9월 수원 주민과 신평동의 대한청년 단원이 힘을 모아 약 2개월 간 화령전을 수리했다. 이때 수원시청에서 40만원의 비용을 대고 화성군수가 화산의 목재를 주선했으며 대목장 임배근(任培根)씨가 참여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화령전은 1963년에 사적 제115호로 지정되었고, 1978년에 기와를 모두 교체하는

등 큰 공사가 있었으나 목공사에서 서까래 아래의 주요 구조부재를 교체한 기록은 없다. 1999년에는 동파된 지붕을 해체하여 수리하고 월대를 강회다짐하였으며, 2016년에 기와고르기 공사를 하였다. 이처럼 화령전의 주요 건축물은 창건 이래 큰 변화 없이 양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화령전응행절목』에 의거 포진과 의물, 주렴 등을 복원하여 원상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화령전은 1801년부터 1908년까지 108년 간 지속되었던 정조대왕의 영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화령전은 임금의 초상화를 봉안하는 영전 건축의 희귀한 사례이다. 국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시설은 고려시대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준원전, 목청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도성 안에는 영희전에서 여러 왕들의 어진을 모셨고, 창덕궁에는 선원전을 두어 영전으로 삼았다. 이밖에도 몇몇 영전들이 더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사라졌거나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현재 영전의 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은 전주 경기전 정전(보물 제1578호)과 이곳 화령전 뿐이므로 대단히 희소한 귀중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화령전은 조선 후기 영전건축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조선 초기에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건축된 경기전, 준원전, 목청전은 모두 정전 앞에 배전이 붙은 정자각(丁字閣)의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 정자각은 왕릉 이외에서는 보기 힘든 배타적인 건축형태이다. 이와는 달리 화령전은 배전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일자형 건물로 정전을 삼았다. 대신에 높은 월대를 건물의 폭만큼 넓게 빼서 권위를 높이고 행례에 대비했다. 또 어진을 두는 자리에 온돌을 설치해서 난방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경기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영전건축의 특징인데, 화령전 정전에서는 건물의 좌우 측면에도 아궁이를 둔 점이 색다르다. 정전에 좌우 익실을 두고 서책 등 여러 다른 기물을 함께 봉안했기 때문이다. 영전에는 정전 건물의 수리 등의 사유 발생시 어진을 임시로 봉안하기 위한 이안청을 두는데, 화령전에서는 정전과 이안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한 점이 주목된다. 정전과 이안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한 사례는 영전 건축으로서는 최초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화령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무렵 조선후기 건축기술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약 70일 만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대단히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장인집단이 공사를 주관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장인의 명단에서 화성 축성, 궁궐 조성, 왕실 사묘 건립 등 국가적 건축사업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의 명단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들에 의한 종합적인 건축 계획, 세련된 비례와 문양, 탁월한 치목 솜씨와 단청 기술은 조선 후기 건축기술의 최고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17. 해남 미황사 대응전 보수 설계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남 미황사 대응전」 해체 보수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남 미황사 대응전」 보수공사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해남 미황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서정리)
- 지정일 : 1988. 04. 01.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서정리)
- 사업예산 : 2019년 7억원(국비 490백만원, 지방비 210백만원)
- 사업지침 : 2017년 사업으로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대응전을 보수한다.
- 주요내용 : 대응전 평방이상 해체보수
  - 기둥 동바리 보수 1본
  - 금이 간 종량, 창방 교체 1본
  - 부식 및 파손된 부재 교체 (연목, 부연, 첨차, 소로 등)

### 라. 자문의견(2018.0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미황사 대응전은 우선 중보 중앙부가 파손되어 현재 대량에 응급 지지대를 걸쳐 놓 상태다. 이외 추녀의 현격한 처짐, 일부 기둥의 하부 부식, 출목도리에

가해진 하중으로 인한 공포부재의 변형 및 손상 등이 있어 평방 이상 해체 보수가 요구 된다.

- 각 부재의 교체범위와 보수 방법은 해체 후 부재 상태를 참조하여 건축 및 보존처리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하여 결정토록 한다.
- 내부의 천불도 관련, 교체부재의 땀 단청, 보수 시 해체되는 불벽의 보존대책 등은 관계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통해 보수방향을 결정토록 한다.
- 내부의 노후 및 균열이 심한 닻집은 해체 후 현장 자문을 통해 보수 설치 한다. 기 보수된 불단과 마루 등은 원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 대웅전의 전면 창호는 현재 부식으로 매우 낡고 틀어져 있다. 한편 1982년 교체 시 나사못 사용 등 철물도 부식되고 조잡한 상태다. 측면과 후면 창호도 대웅전 법식에 어울리지 않는 근대 풍 창호로 되어 있다. 현재 경내에 보관 중인 원형 창호를 참조하여 모두 교체토록 한다.
- 공사 기간 중 사찰의 종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웅전 마당 한쪽 편에 임시 법당을 건립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1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종합정비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종합정비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의 종합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종합정비계획 수립
  - 사업예산 : 2억원(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 주요내용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정비안
    - 학술조사 및 사적 승격 지정 계획
    - 전각복원 및 기반시설 계획
    - 활용, 관리운영 방안 등

### 라. 참고사항('18년 제4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2018.11.2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월남사지의 복원 정비뿐만 아니라 사적지정 검토 등 종합정비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토록 함

- 발굴 유구의 시기별 도면을 작성하여 기준시기를 설정하고 정비의 범위를 설정토록 함
- 현재 임시법당의 향후 이전위치가 중요함. 이와 유사한 경우의 바람직한 사례로 ‘회암사지’, ‘봉은사지’ 정비방안을 참고하여 사찰측과 협의한 후 포함시킬 것
- 월남사지 수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강당의 위치는 학술적 근거 및 고증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함
- 서탑의 학술조사는 월남사지의 성격유형과 관계가 깊으므로 단기에 포함토록 함
- 예산의 산정은 적정수준으로 재검토토록 함
-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사지와 이격시켜 배치하고, 측면 진입도로는 장기적으로 폐쇄를 검토토록 함

####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논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19. 부산 범어사 조계문 주변 비림정비사업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 금정구 소재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비림정비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금정구 소재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비림정비사업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부산 범어사 조계문

- 소재지 :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 지정일 : 2006. 02. 07.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비림정비공사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림정비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350,000천원(국비 245,000천원, 지방비 105,000천원)
- 주요내용 : 비림정비
  - 비석 : 21개소(사리탑비 10개, 중수기비 3개, 시주·공덕비 8기)
  - 부지조성 : 15m × 60m
  - 담장신설 : H=1.2m, L=100m / 석축설치 : H=1.2m, L=60m

## 라. 자문의견

### ○ 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

- 등나무군생지 문화재구역 내에 일정 면적을 비림으로 할애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님
- 범어사 경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시기의 비석들을 한 장소에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모아서 전시하고자하는 당위성은 있음
- 전통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전과 자연유산의 보존간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고려할 때, 사찰 측의 입장을 무조건 배척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비림조성 대상지는 등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됨
-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등나무군생지의 일부를 비림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이용하고 지세의 인공적 변화는 지양할 것

### ○ 2019.06.10. / 전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

- 이 건은 2019년 5월 20일 천연기념물과 현지 조사의견을 토대로 당시 제시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설계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임
- 전번의 의견에 따라 주변환경의 변화는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 지반고의 고저차가 4m정도여서 강우시 내수의 배출을 위해 주위 담 하부에 수구를 2~3m 간격으로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 비석의 배치에 뚜렷한 기준과 위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문을 받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비림(비석군) 내부의 탐방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설치하려면 격자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 비림에 속하는(비림을 계획하는) 부지의 정지는 지반고의 고저를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표토수의 배수로 인해 지반이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할 것

## 마. 의결사항

### ○ 보류

- 관계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재논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20.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안양료 개축 공사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안양료 개축공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안양료 개축 공사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포항 보경사 적광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보경로 523
- 지정일 : 2015. 03. 30.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18번지
- 사업예산 : 557,142천원(국비 390,000천원, 지방비 167,142천원)
  - ※ 사업구분 : 수리기술과 설계심사 대상
- 사업지침 : 경관이 불량한 안양료를 적정규모로 개축한다.
- 주요내용 : 안양료 개축 공사
  - 대지면적 : 4,932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90m<sup>2</sup>
  - 구조/지붕 : 한식목구조/맞배지붕
  - 층수/높이 : 1층/6.5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21.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평창군 소재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상륜부 해체보수공사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 소재지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지정일 : 1962. 12. 20.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상륜부 해체보수공사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팔각구층석탑 상륜부를 원형대로 해체보수한다.
  - 소요예산 : 250,000천원(국비 175,000천원, 지방비 75,000천원)
  - 주요내용
    - 상륜부 해체설치
    - 보존처리(부식화합물제거, 방청처리, 보호코팅, 결실부 복원)
    - 3D스캔

## 라. 자문의견(○○대학교 ○○○, ○○○대학교 ○○○, ○○○대학교 ○○○)

### ○ 정밀한 현황조사의 필요성

- 상륜부 찰주의 부식이 심해서 팽창하므로 석재 및 찰주 표면 동제관의 파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체하여 훼손상태와 재질, 내구성 등에 관하여 정밀하게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체, 방사선 촬영으로 상륜부 전체의 크랙과 훼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송림사 오층전탑과 일본 야쿠시지 동탑의 상륜부 보수 및 보존 사례를 참고한다.
- 해체 후 3D스캔을 하여 현황 부재 상세와 결구상세 도면을 작성하고, 보존 처리 후 상태도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 ○ 보수설계 범위

- 금회는 현황파악과 보존처리 및 재 설치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해체 후 상륜부의 상태에 따라 보존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 보개 화형장식의 볼트식 이음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보존처리만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작업들로 인하여 부재가 변형이 되거나 손상 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해체한 상륜부는 월정사 경내에 적절한 보존처리실이 없으므로 보존처리가 가능한 공간(가능한 보존처리업체)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한다.

### ○ 복원과 복제

- 현재 원형이 차지한 비율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원형 보존의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한다.
-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해 보이므로 해체와 보존처리와 함께 향후 보존 및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해체 후 보존처리 방식 등 보수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심의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22.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 검토

### 가. 제안사항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원주시 소재 보물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공사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 원주시 소재 보물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공사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
  - 소재지 :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4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 사업범위 :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공사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탑비 보존처리 및 지대석 보수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150,000천원(국비 105,000천원, 지방비 45,000천원)
  - 주요내용
    - 보존처리
      - 비신부 : 건식습식세척(오염도 40% 이하)
      - 이수 및 귀부 : 건식습식세척(오염도 80% 이하), 석재 강화처리
    - 지하수위조사(지하수위, 지질조사) 4공, 석재드잡이

라. 자문의견(○○문화재연구소 ○○○)

- 탐비 주변에 시추를 하여(2~3곳) 기반암 및 지하수의 흐름과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흑화 및 표면박리 발달 부위 세척 및 강화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대석 보수는 정밀진단 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대석은 그대로 둔 채 공극부분에 대한 충전 등을 검토할 것
  - 지대석 변화(변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2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 선정(안) 재검토

###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사업 완료 이후, 석탑 복원 위치 선정(안)을 부의하오니 검토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인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과 관련하여 석탑 복원 위치 선정(안)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9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9.02.21.) : 보류
  - 탑비와 탑을 함께 실내(전시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후 재검토토록 함
  - 원위치에 둘 경우 구체적인 보호각안을 제시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재지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 지정일 : 1962. 12. 20.
- (2) 보존처리 현황
  - 사업내용 : 지광국사탑 보존·복원 및 관련 학술 연구
  - 사업기간 : 2015~2020년(6년)
  - 추진경과
    - '15. : 정밀안전진단, 석탑 해체 후 보존처리 가결(문화재위원회)
    - '16. : 석탑 해체, 처리 전 상태조사, 세척, 해체부재 3D스캔 등
    - '17. : 모르타르 제거, 복원석재 산지추정, 결실부재 복원도상연구 등
    - '18. : 결실부재 신석복원, 파손부재 집착·구조보강 등

- '19. 현재 : 결실부재 신석복원, 파손부재 접착, 표면강화처리 등

○ 보존현황

- 옥개석과 탑신석, 양화 등 석탑 중요부재는 폭탄 충격 및 모르타르에 의한 물리·화학적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 특히 암석 내부로 유입된 수용성 염은 부분적인 제거만 가능하여 지속적인 풍화작용으로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음
- 화려한 조각과 뛰어난 장엄장식이 특징인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 완료 이후에도 대기 중 수분과 강우에 의한 동결(영하일수 126일), 수용성 염에 의한 표면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필요함

(3) 위원회 보고 경과

○ '18.05. : 석탑 보존처리 현황 및 복원안 보고(제5차 건축분과 위원회)

○ '18.07. : 석탑 복원 위치(안) 발표(건축분과 워크숍)

※ 보호시설 필요성 보고('18.05./07. 문화재위원회)

- 옥개석의 관통상·구조상 균열 등 손상 저감 필요
- 모르타르에 의한 2차 손상인 염 풍화 저감을 위한 강우 차단시설 필요
- '19.02 : 문화재위원회, 원주 범천사지 현장 방문 및 석탑 복원 위치(안) 검토
  - 탑비와 탑을 함께 실내(전시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후 재검토토록 함
  - 원위치에 둘 경우 구체적인 보호각(안)을 제시

라. 원주시 제안사항

원위치 이전		복제품 제작		전시관 이전 방안	
A안	보호구조물(구조물 유구 외곽으로 설치)	A안	석조 복제품	1안	부도전지 건물 전면 기단선(147㎡)
B안	보호구조물(최소한의 구조물 설치)	B안	FRP 복제품	2안	부도전지 건물 일부 포함(292㎡)
-	-	C안	복제품 제작 및 보호구조물 설치	3안	부도전지 평면과 같은 규모(501㎡)

## 마. 의결사항

### ○ 원안가결

- 지광국사탑은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기로 함.
- 다만, 원위치(승탑원지) 복원과 법천사지 내 전시관에 보존·전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된 후 재심의토록 함.

###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24.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보호구역 정비 검토

###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보호구역 정비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의 보호구역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번지
  - 지정일 : 1967. 06. 23.
- (2) 사업내용 : 보호구역 정비 계획(주차장 및 조경 정비)
  - 사업예산 : 7.5억원(국비 525백만원, 지방비 225백만원)
  - 사업지침 : 2018년 정비 기본설계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주차장 및 조경)을 정비한다.
  - 주요내용
    - 주차장 및 잔디광장 조성
    - 관람객 정자, 화장실, 등 의자 등 설치
    - 보도/차도용 투수블록포장, 수목 이식 및 식재 등

### 라. 의결사항

- 보류
  - 전반적인 디자인 보완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2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보·보물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 제2018-170호(2018.12.7.))에 따라 변동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문화재보호법(제27조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매 10년 마다)에 따라 2018년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474건에 대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 이 중 자치단체 및 소유자 등과 협의된 34건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조정 고시('18.12월) - 보호구역 조정 34건(확대 25건, 축소 3건, 정정 4건, 지정 2건), 지정구역 조정 2건(지정 1건, 조정 1건)
- ※ 보호구역 조정 고시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조정되는 36건과 기존 허용기준의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는 9건 등 총 45건을 조정코자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조정대상 :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등 28건

(2) 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1	국보	14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범위 조정	변경 없음
2	국보	16	안동 범홍사지 칠층전탑	보호구역 확대(안동 범홍사지 칠층전탑, 안동 임청각)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보물	182	안동 임청각		
	국가민속문화재	185	안동 고성이씨 탑동과 중택		
3	보물	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4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5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6	보물	114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7	사적	21	경주 김유신 묘	보호구역 확대(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보물	127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8	보물	129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9	보물	142	서울 동관왕묘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10	보물	243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보물	244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보물	247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보물	248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 서 삼층석탑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보물	254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601	대구 도학동 승탑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보물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11	보물	253	합천 청량사 석등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보물	265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266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12	보물	381	합천 백암리 석등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13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보물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4	보물	450	안동 의성김씨 종택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국가민속문화재	267	안동 귀봉종택		
15	보물	465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16	보물	475	안동 소호현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범위 조정	변경 없음
17	보물	521	영천 승렬당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범위 조정	변경 없음
	보물	616	영천향교 대성전		
18	보물	536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19	보물	537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20	보물	553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호구역 확대(안동 예안이씨 충효당)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국가민속문화재	178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287	안동 시은 고택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표
21	보물	790	영천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범위 축소	변경 없음
22	보물	805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23	보물	824	안성 청룡사 대웅전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24	보물	985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범위 조정	변경 없음
25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26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범위 축소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11	나주 불회사 석장승		
27	보물	1371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변경 없음
28	보물	1850	대구 과제사 원통전	제1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및 공통사항 조정

(3) 향후계획 : 허용기준 조정 예고(주민의견수렴 20일 이상)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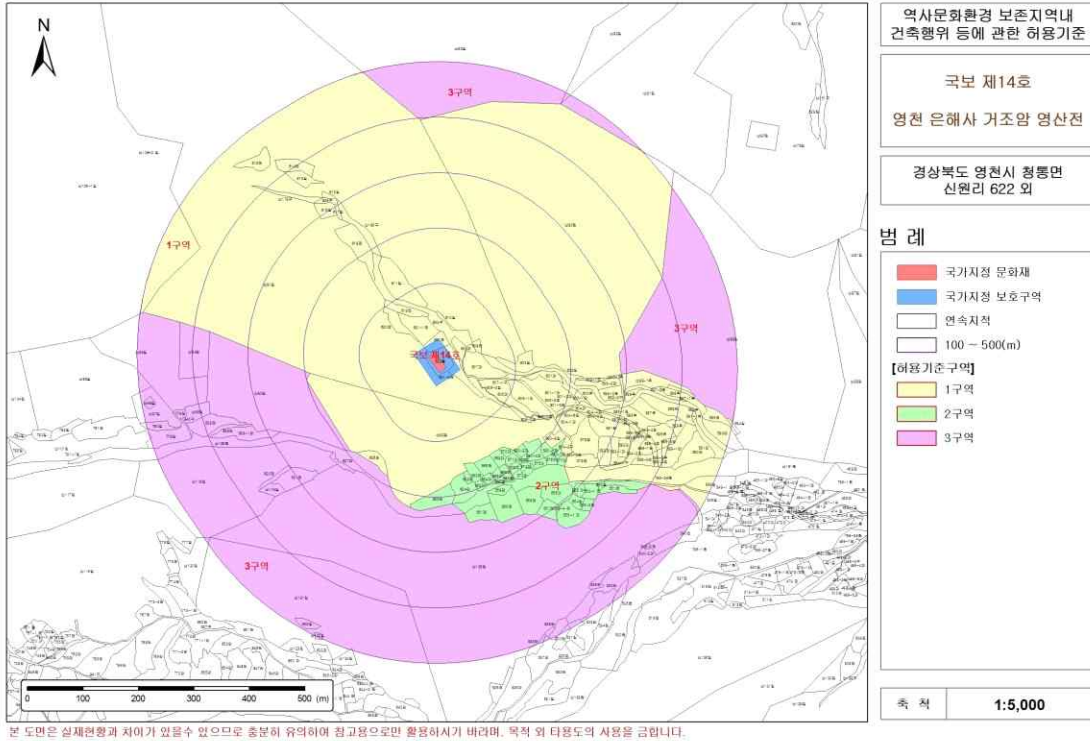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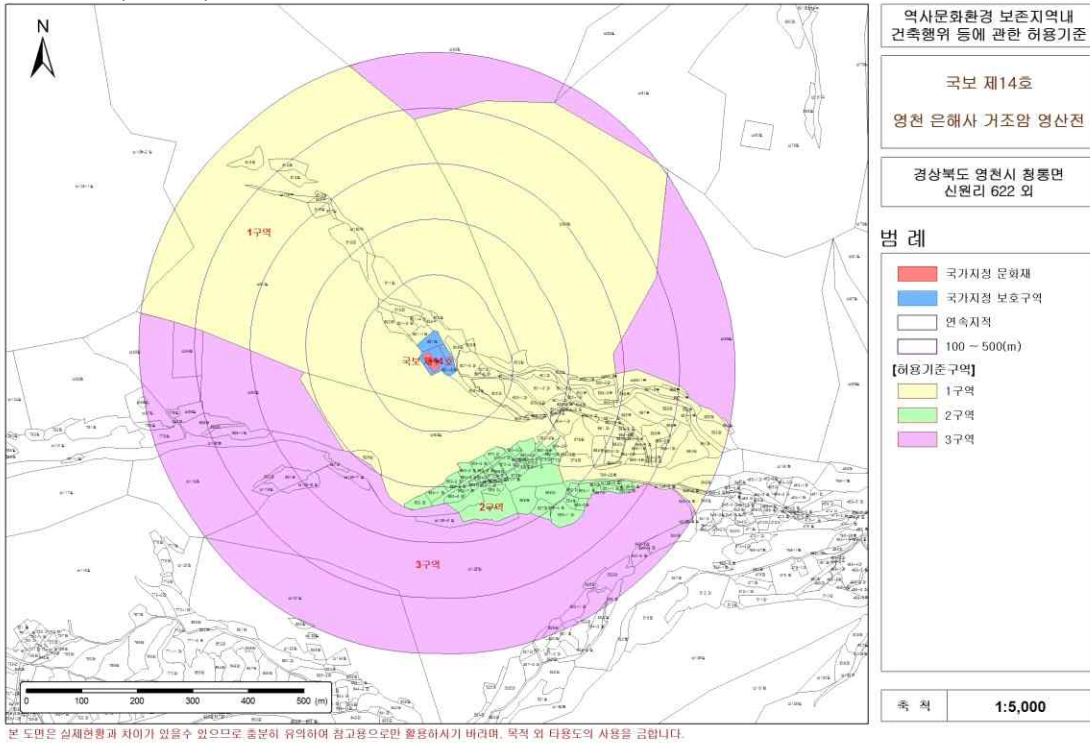
[붙임] : 허용기준 조정 전·후 각 1부.

[붙임]

▣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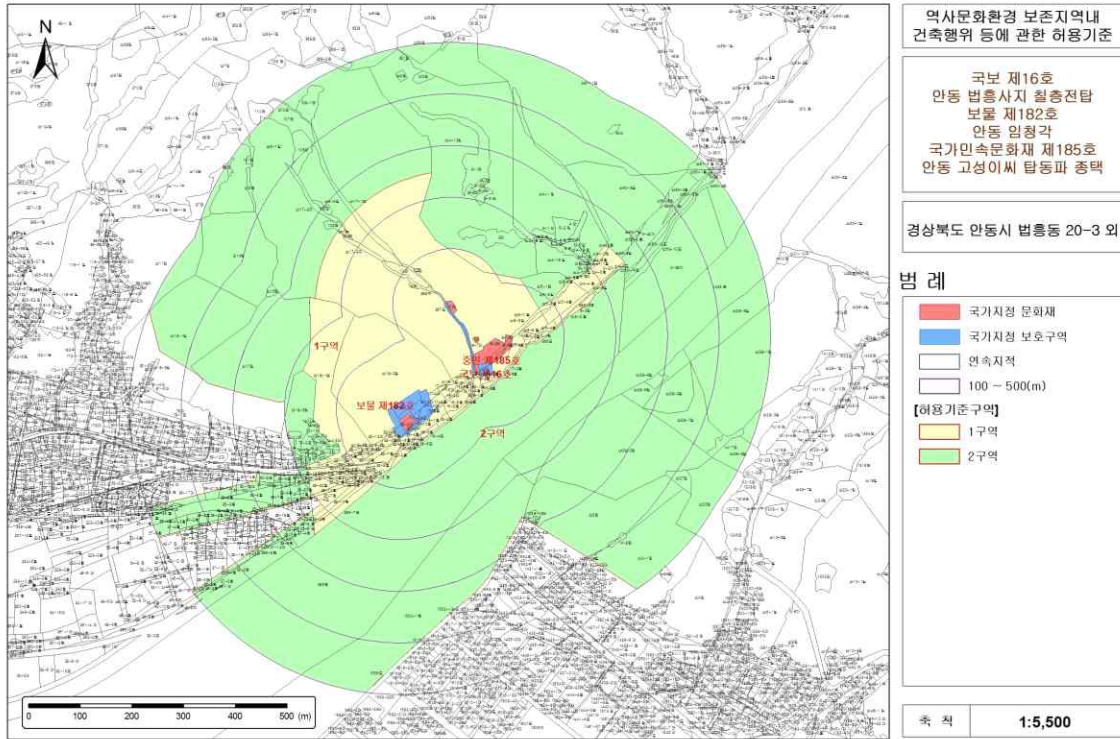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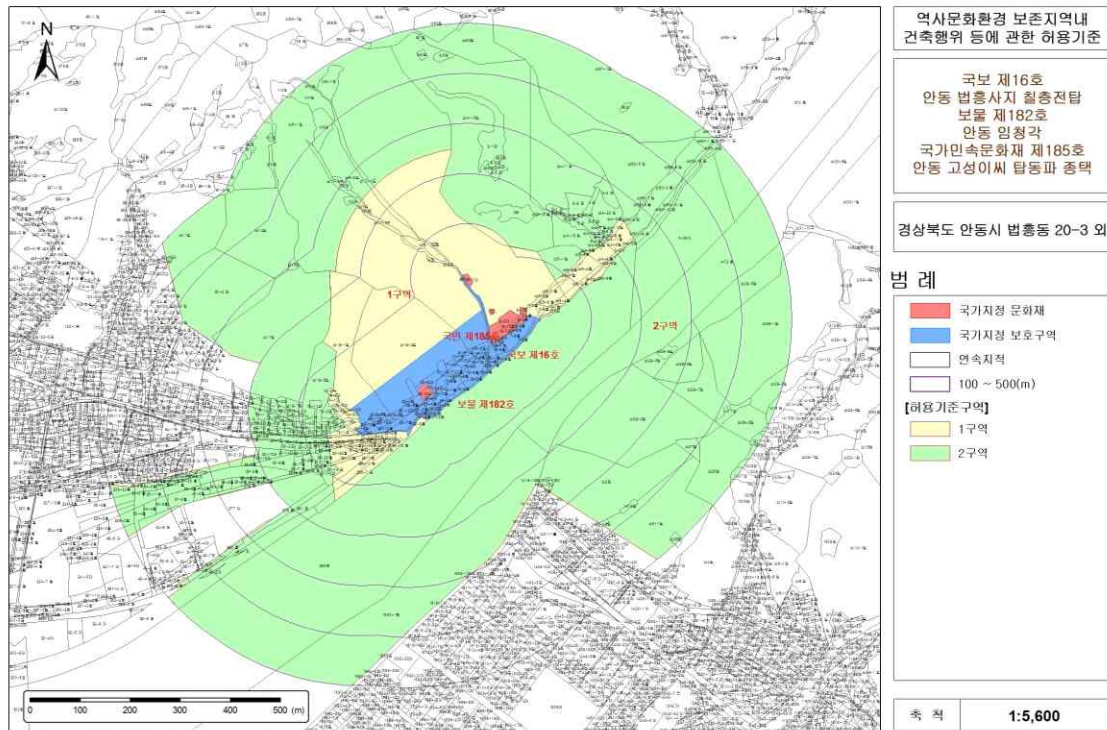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국가민속 문화재 제185호 “안동 고성이씨 탐동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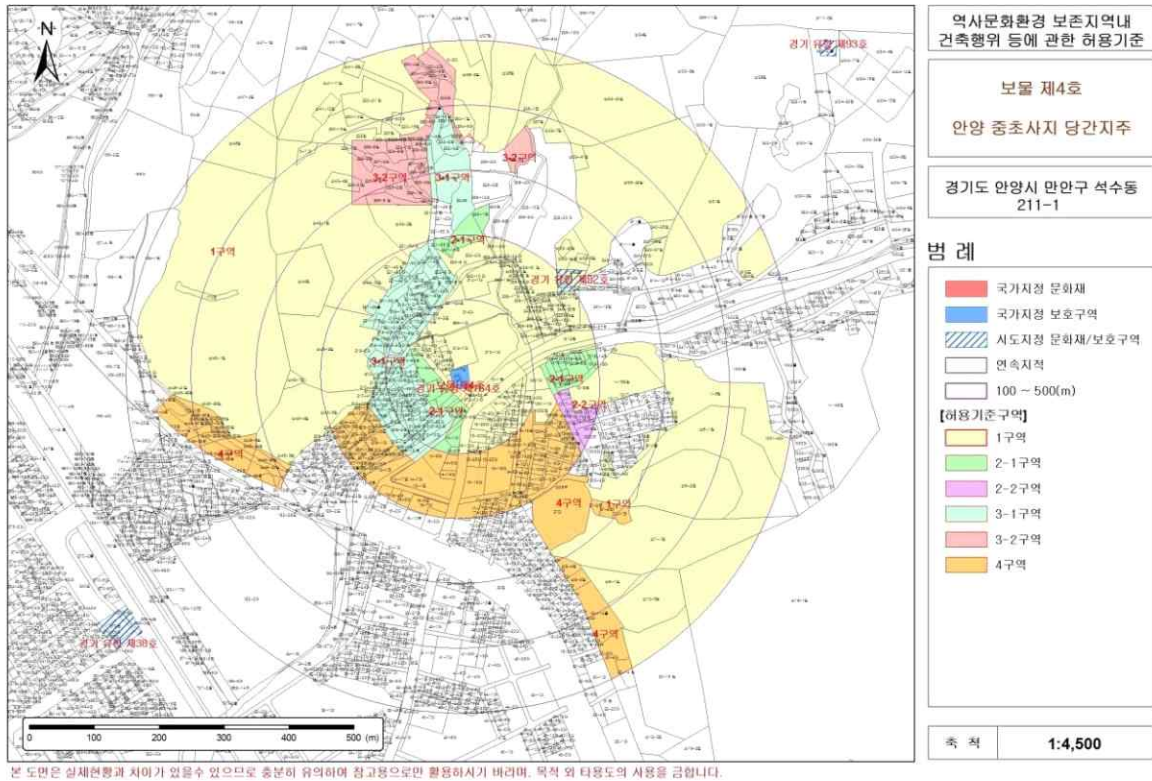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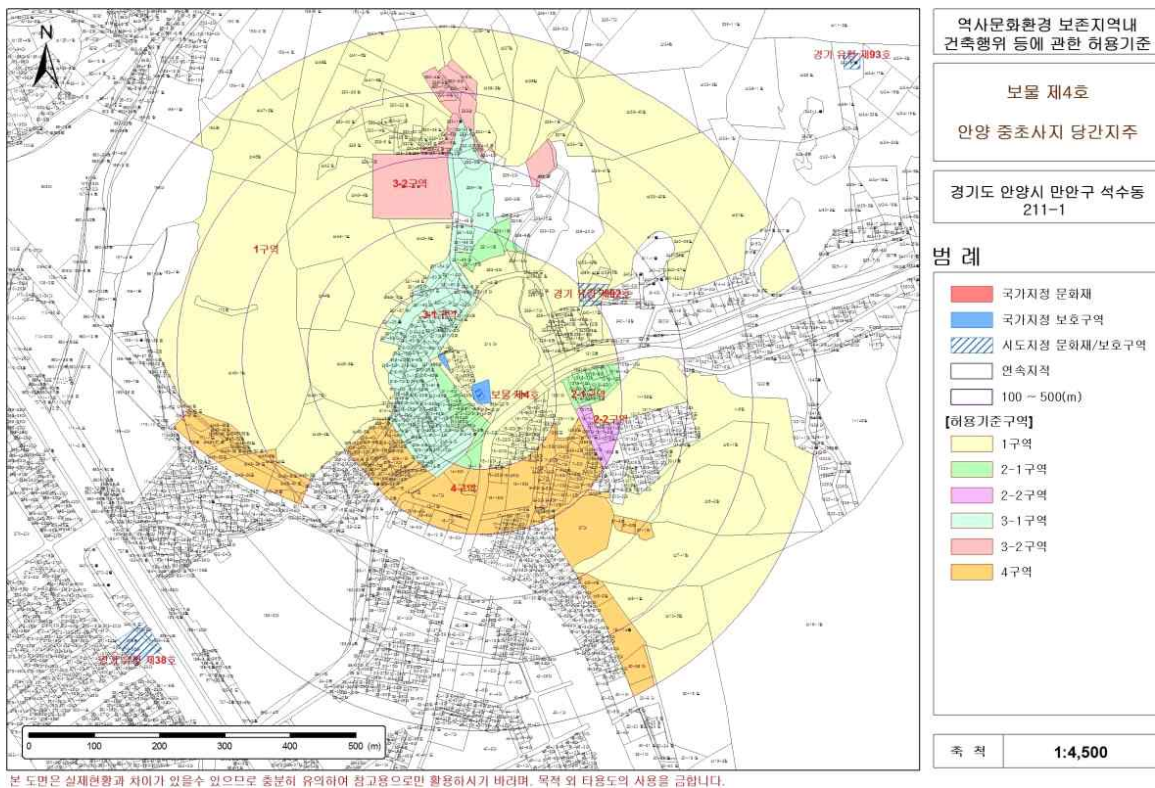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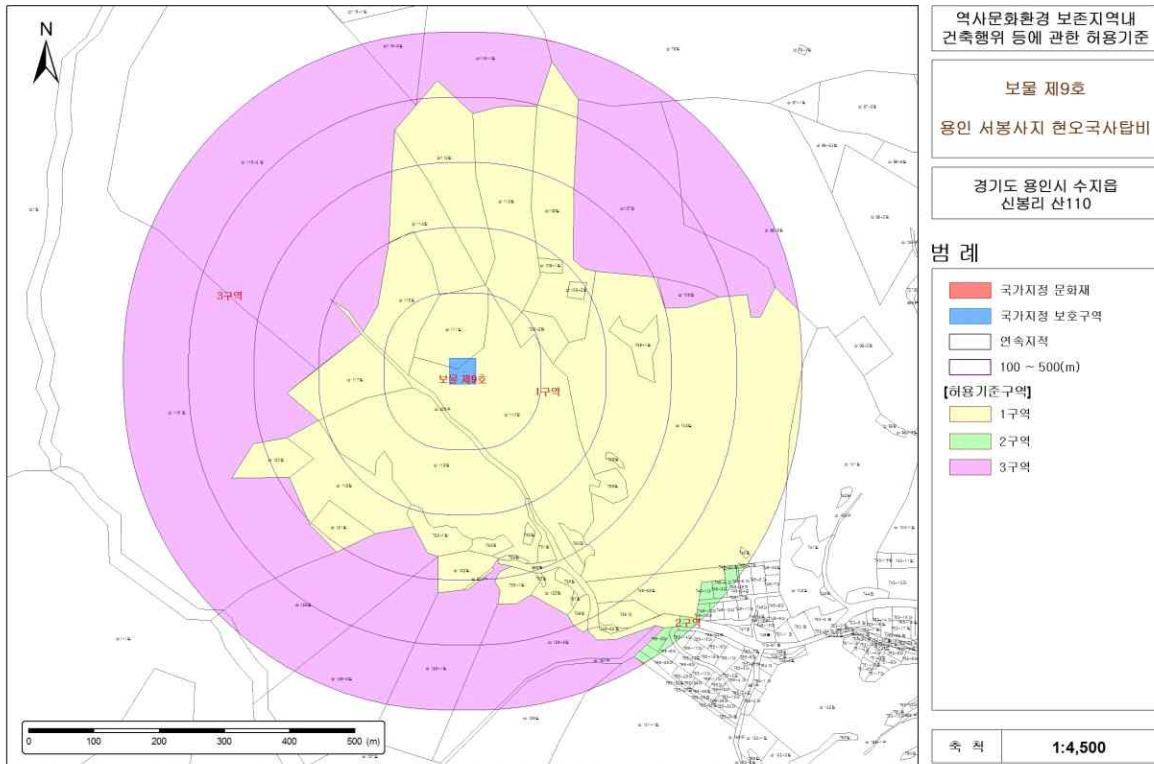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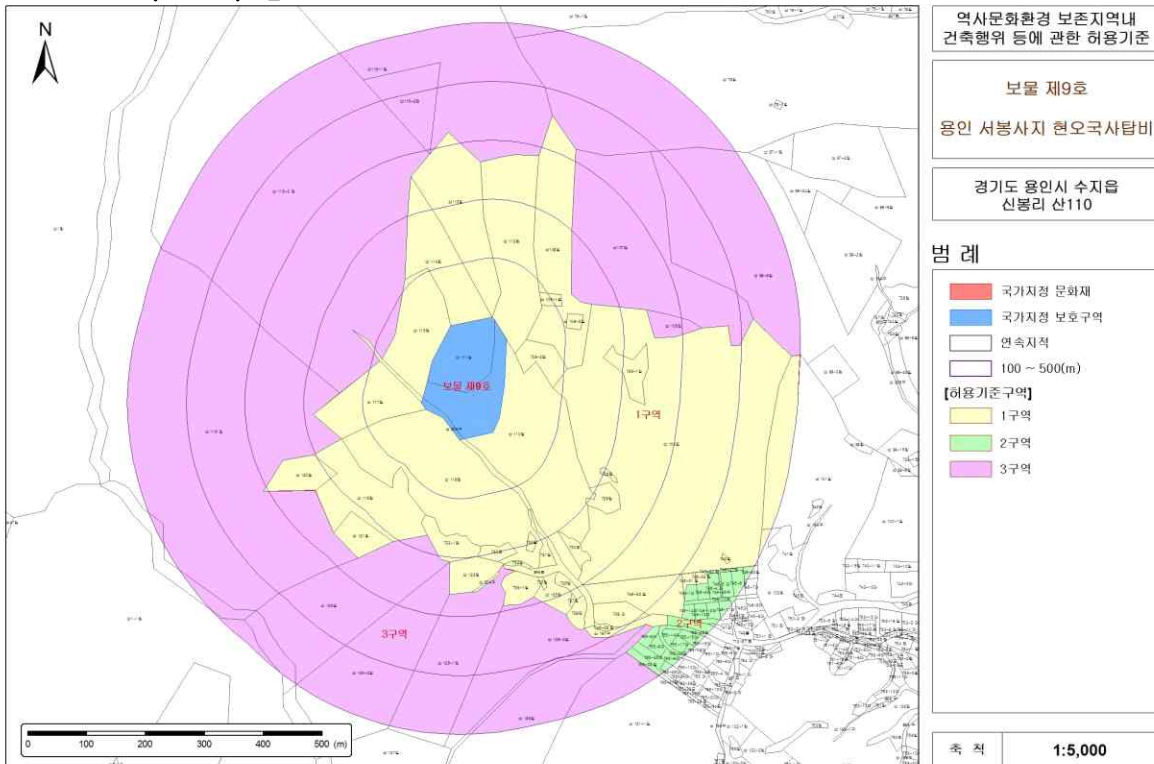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1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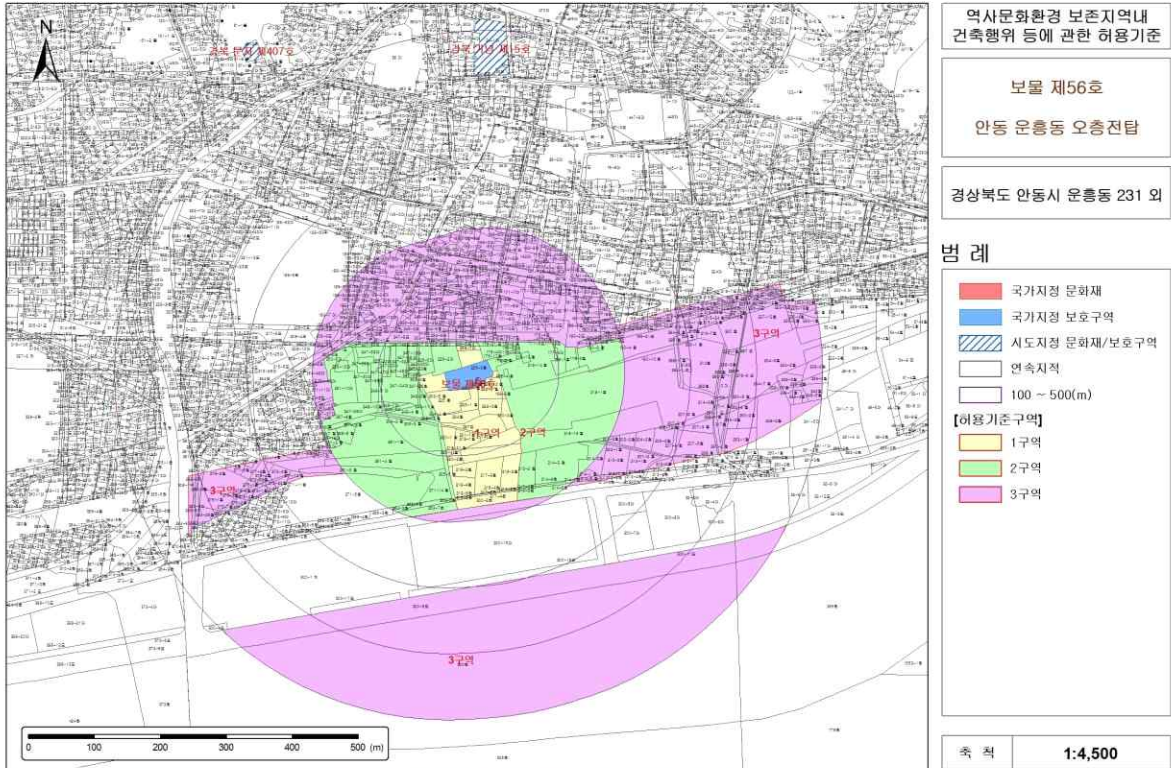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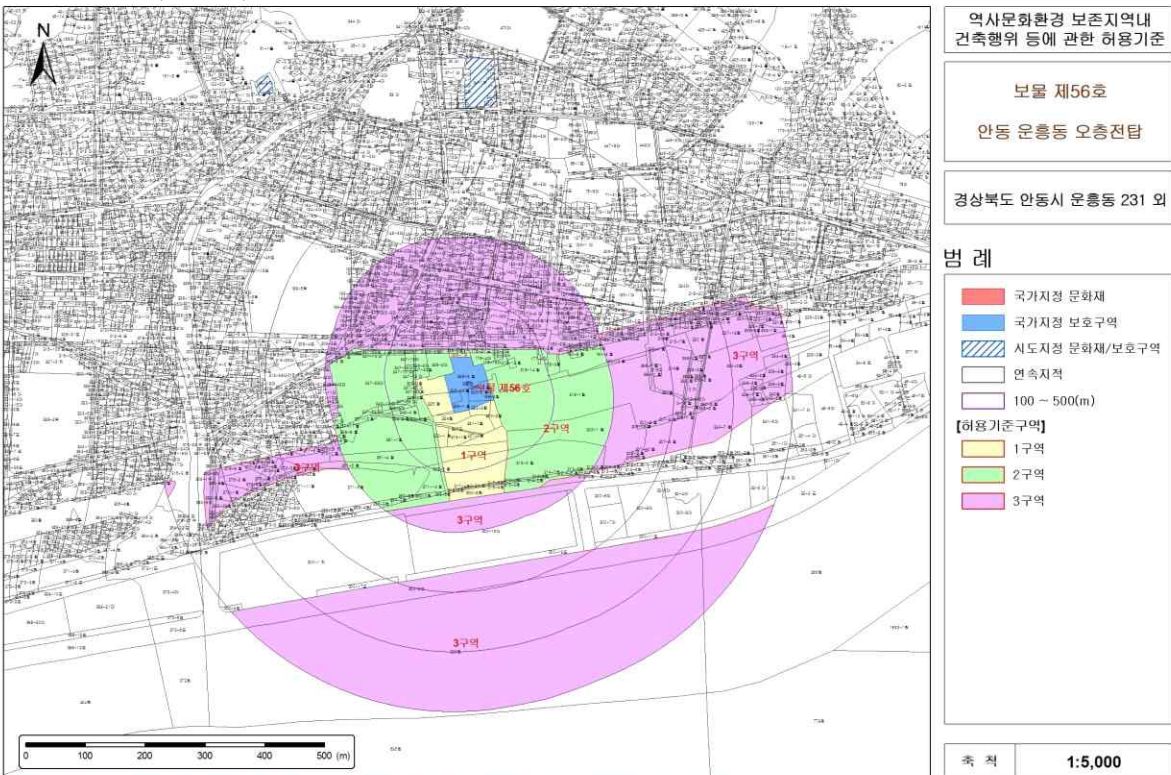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56호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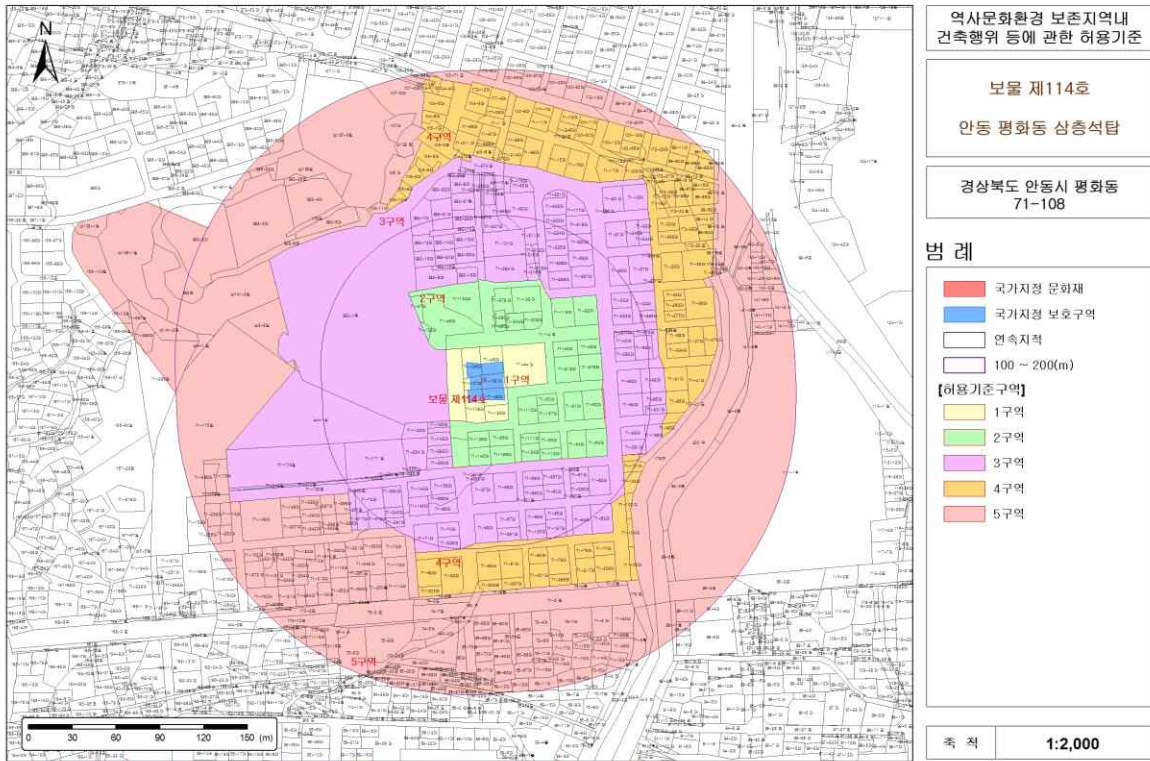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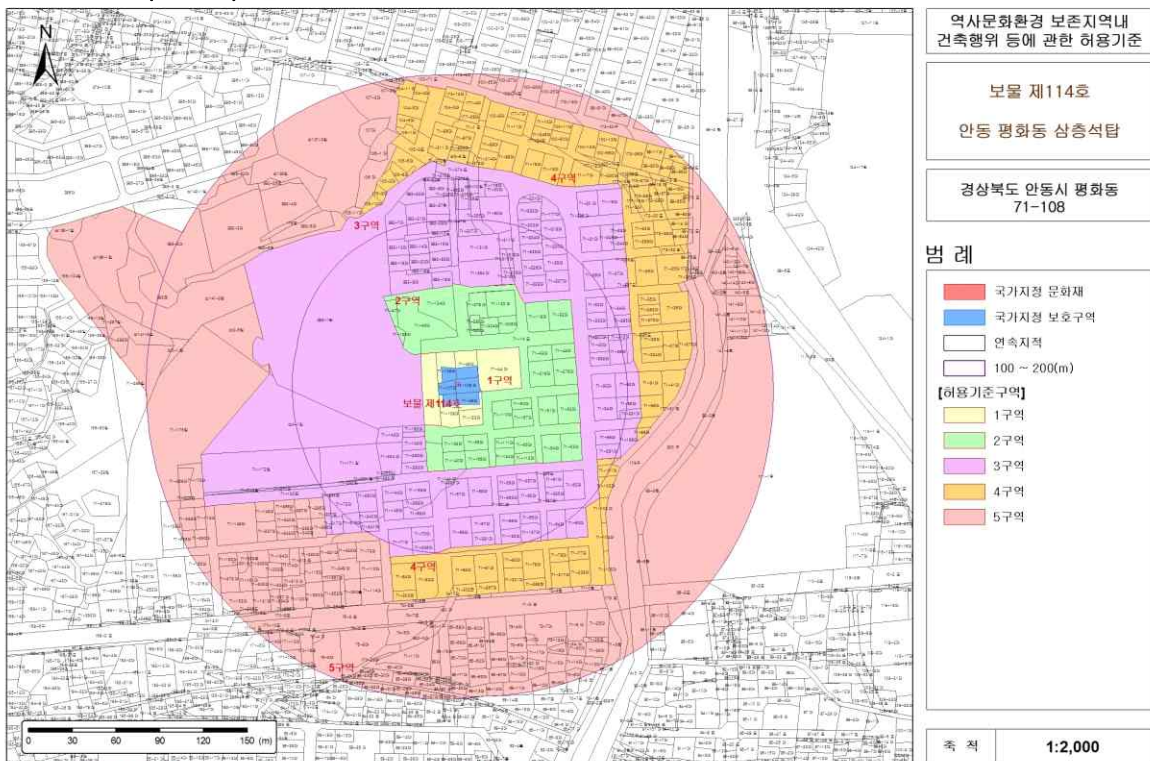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114호 “안동 평화동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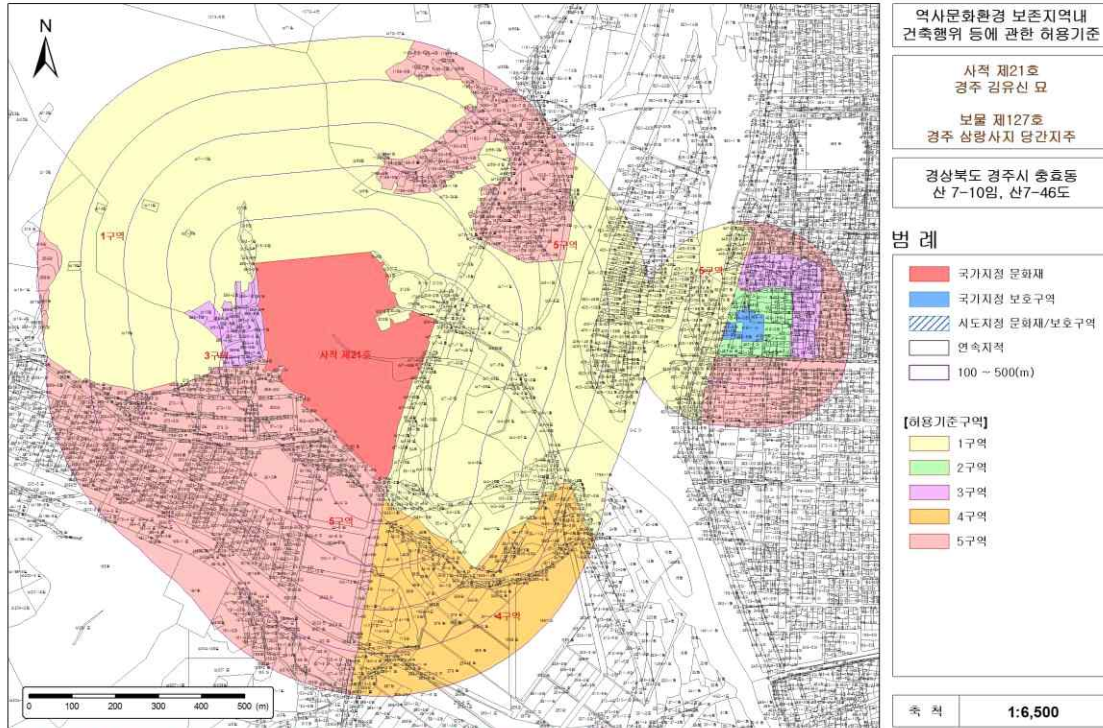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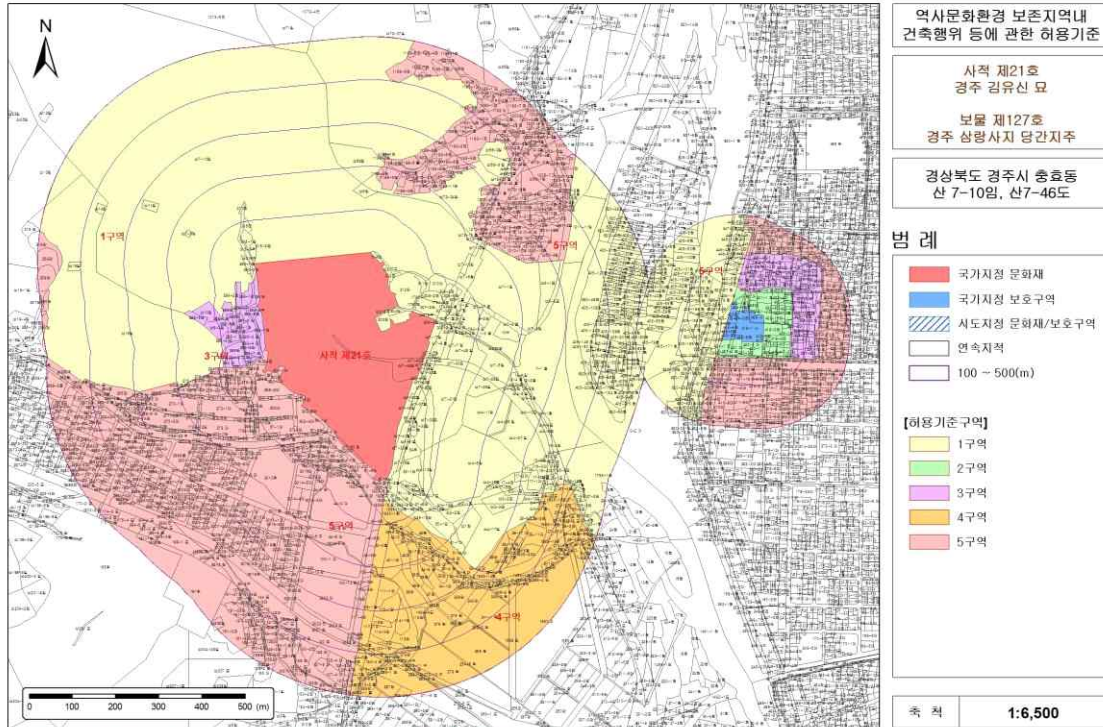
▣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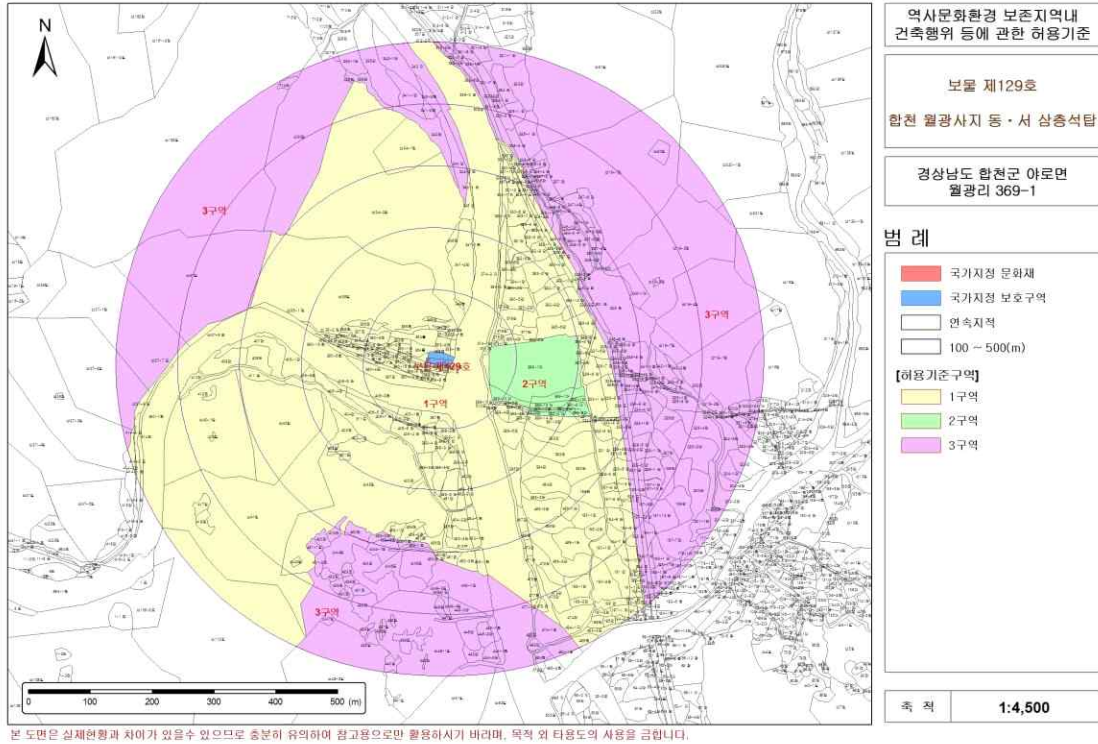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 개별심의지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 -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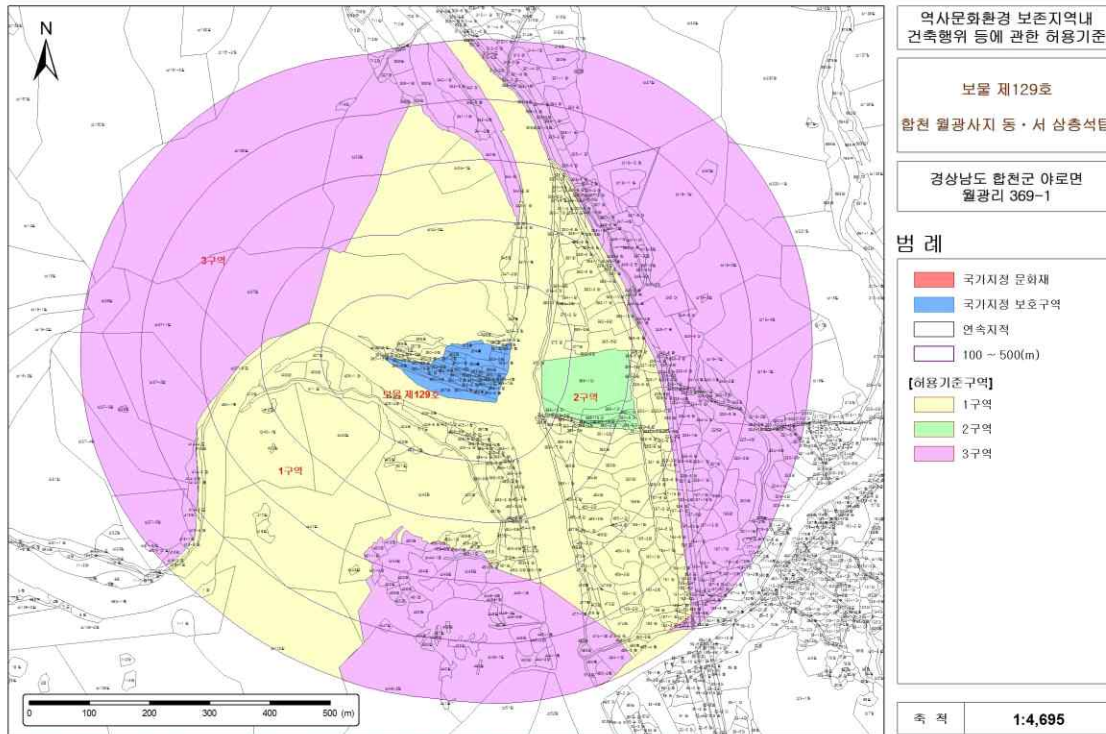
# ☐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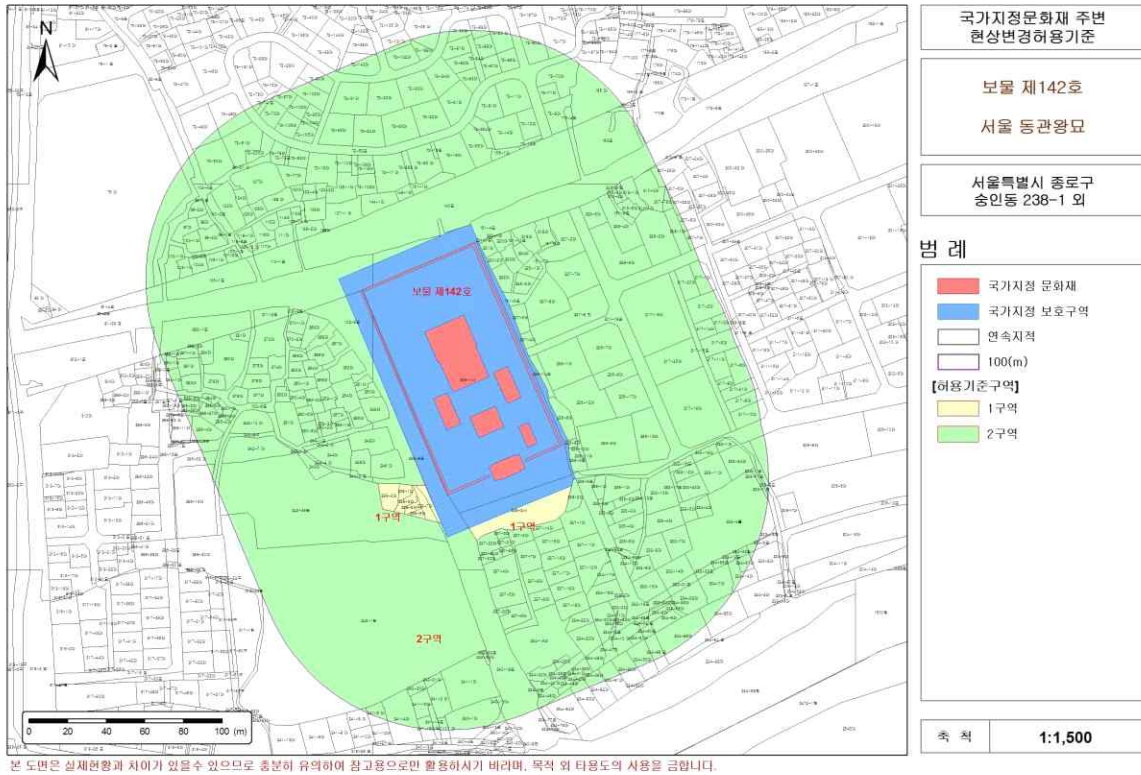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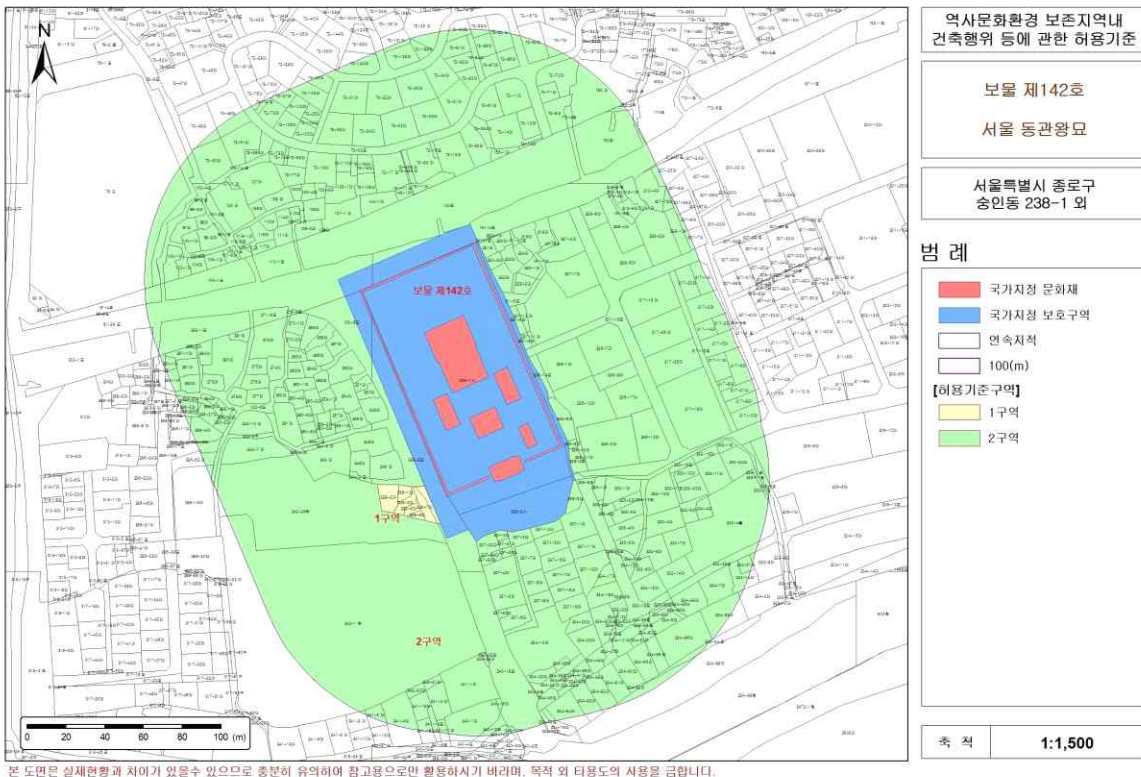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지형도면(당초) 】



###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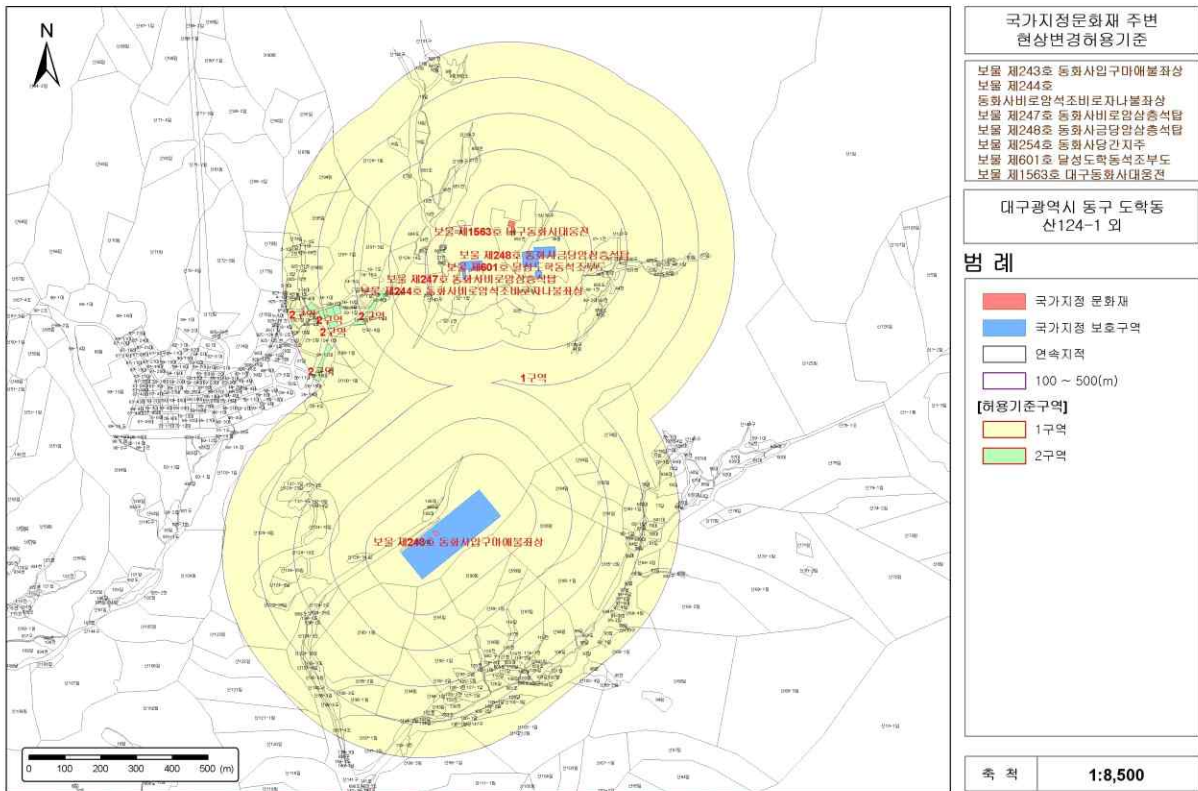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247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제248호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254호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제601호 “대구 도학동 승탑”, 보물 제1563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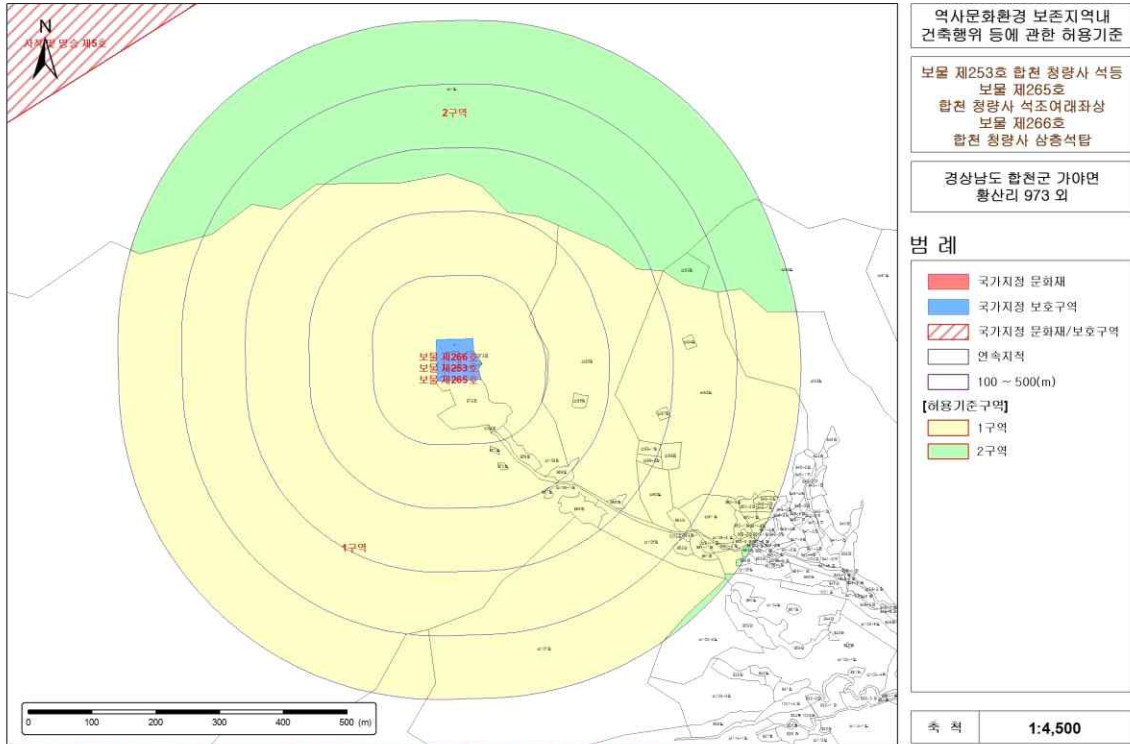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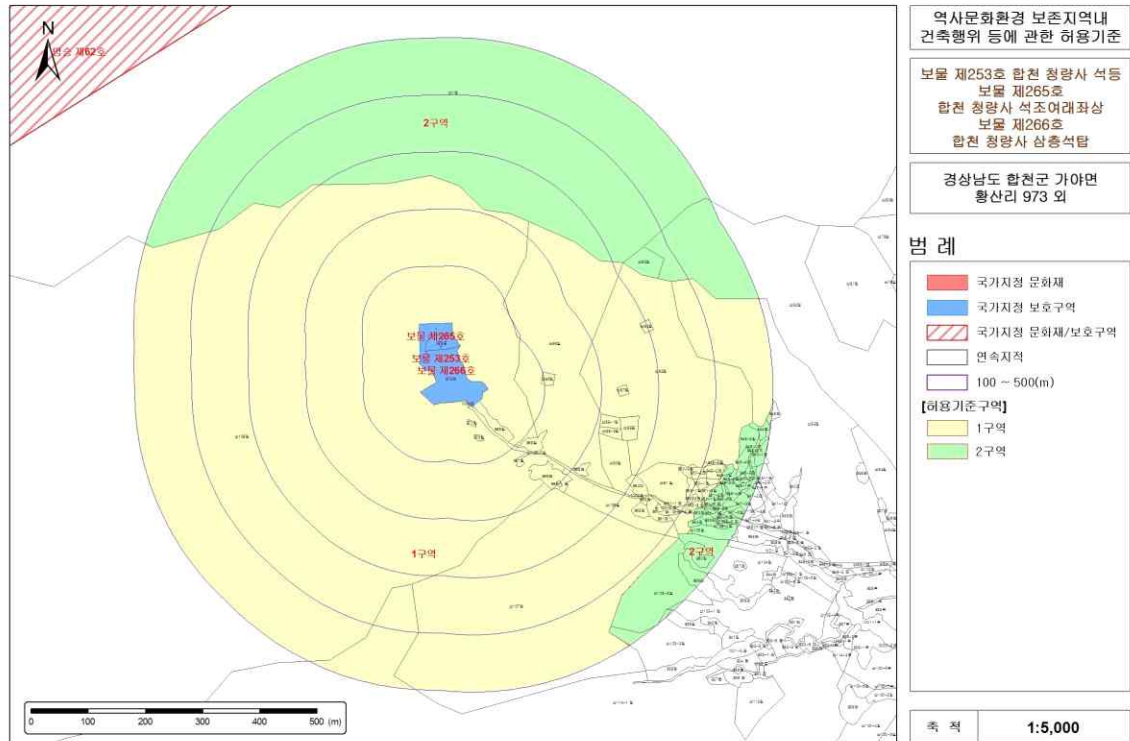


▣ 보물 제253호 “합천 청량사 석등”,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66호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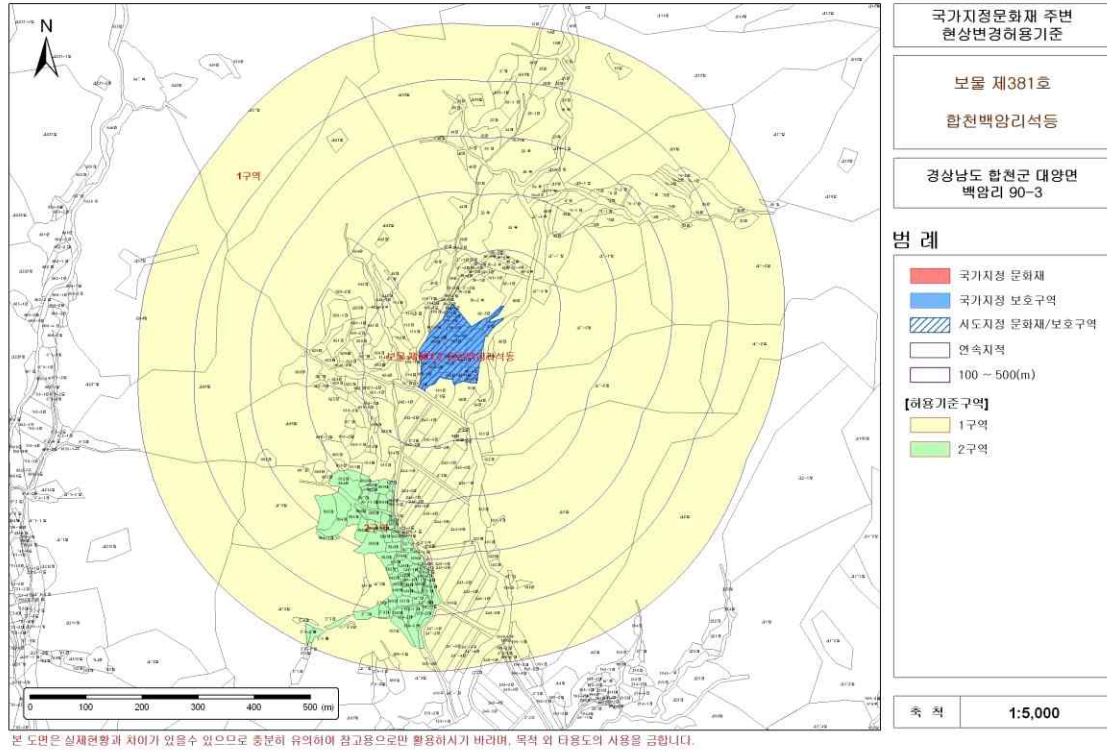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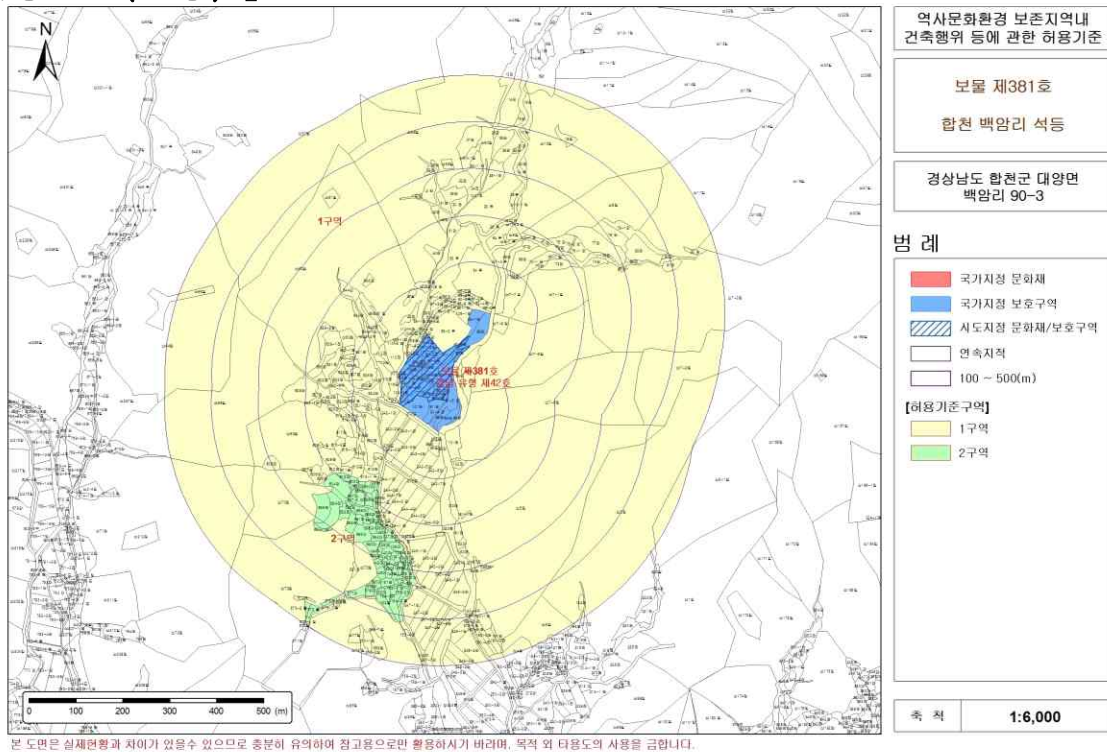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381호 “합천 백암리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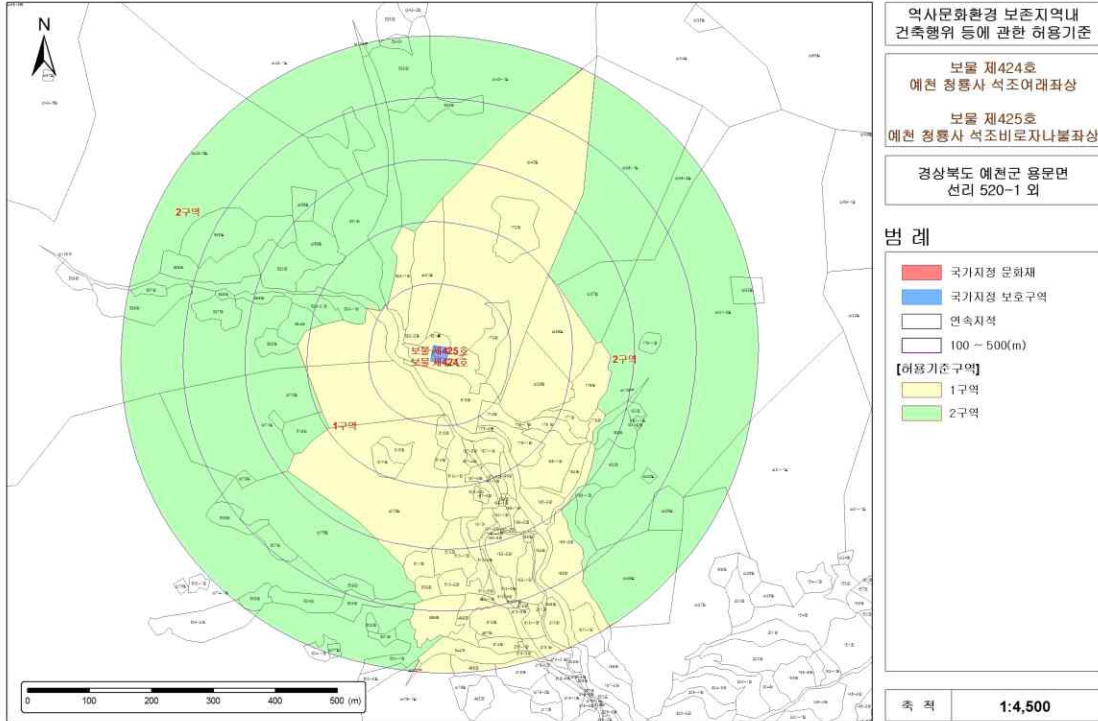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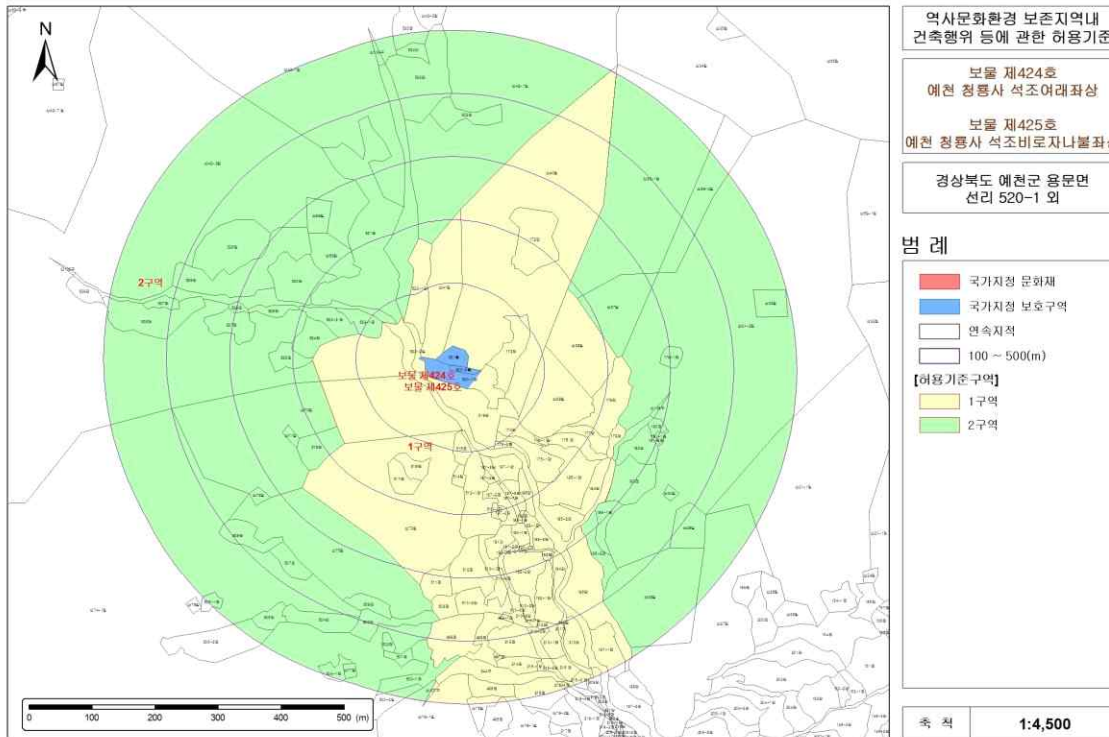
▣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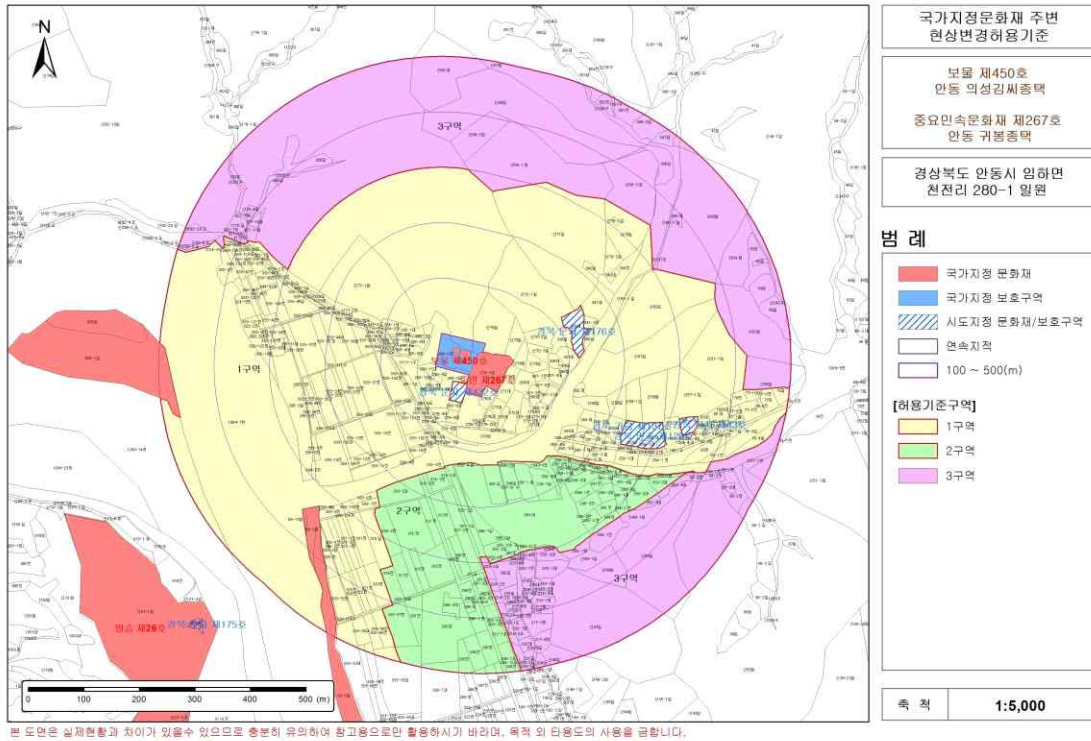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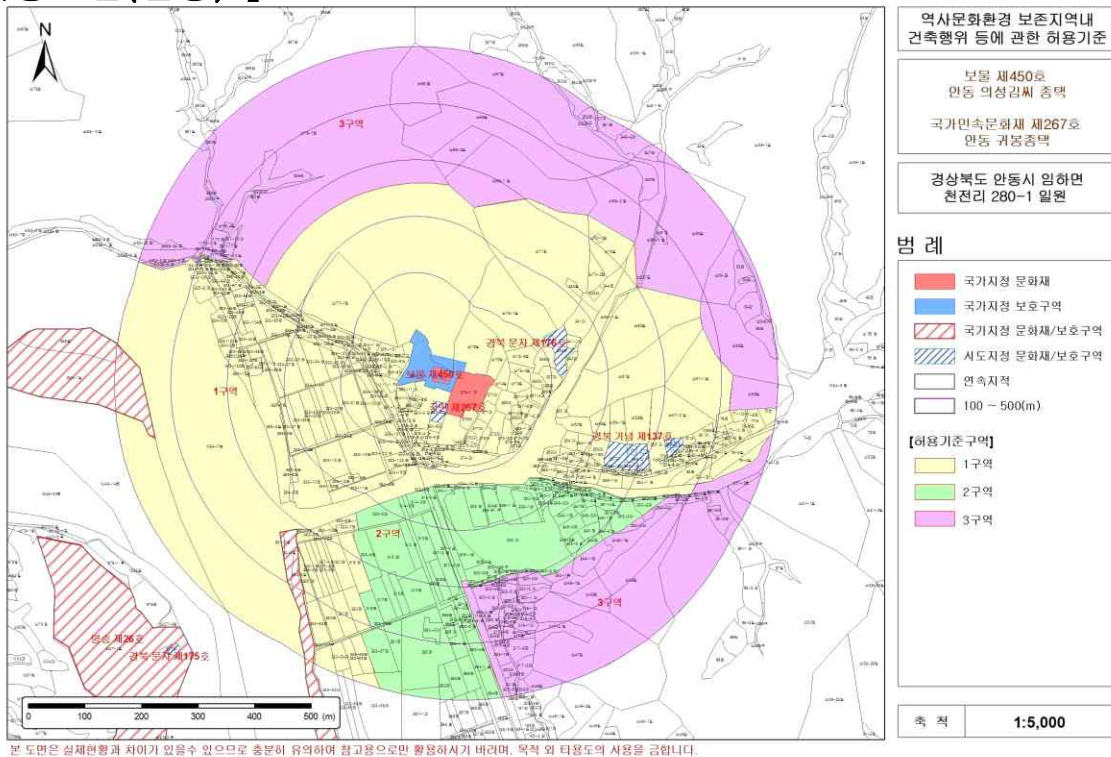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및 국가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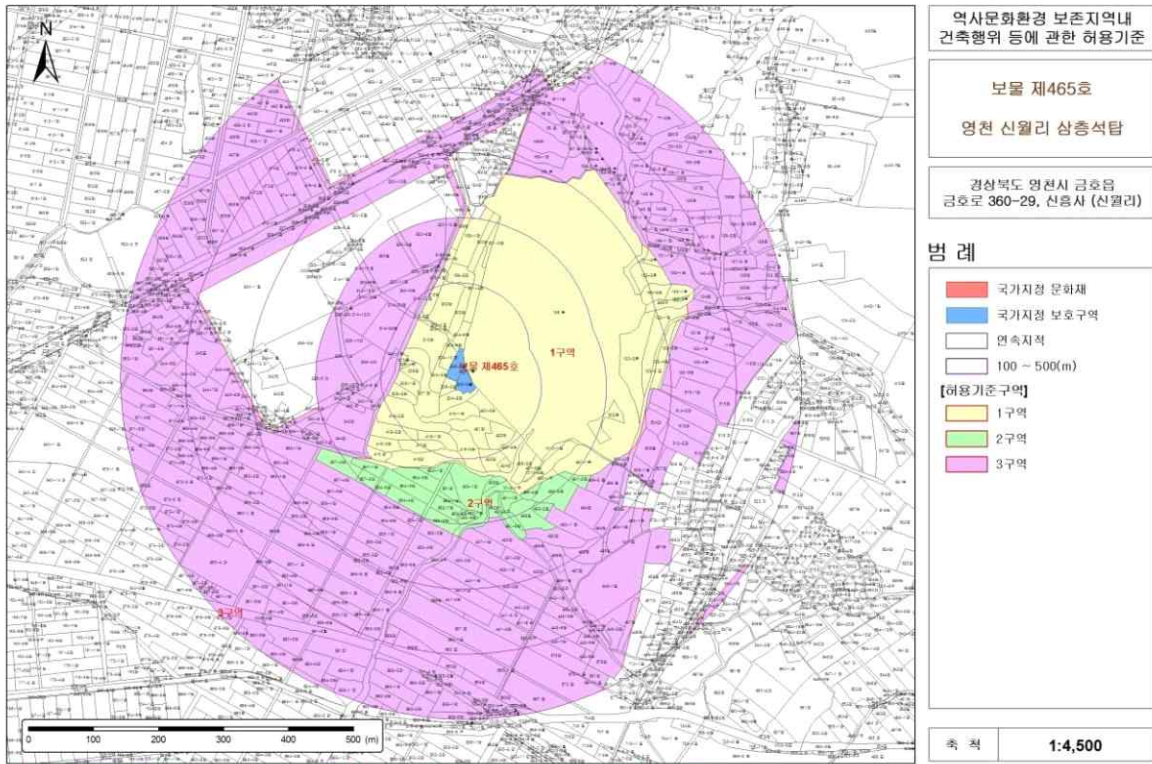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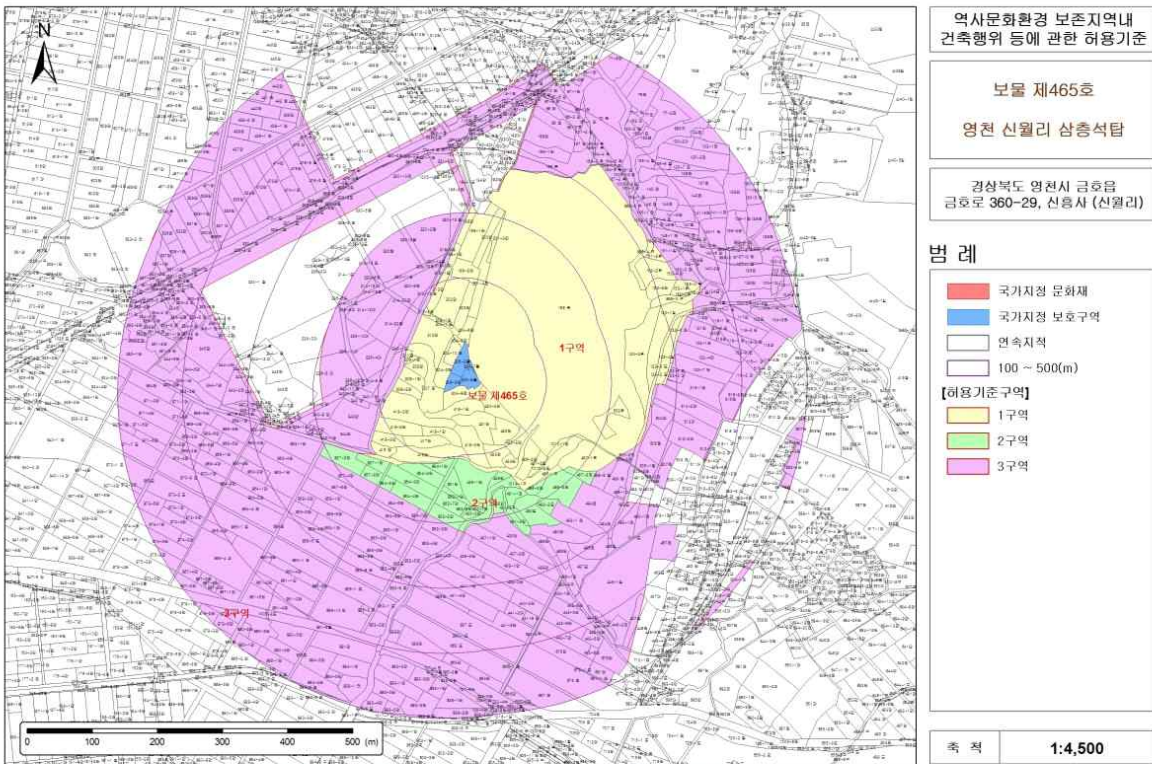


▣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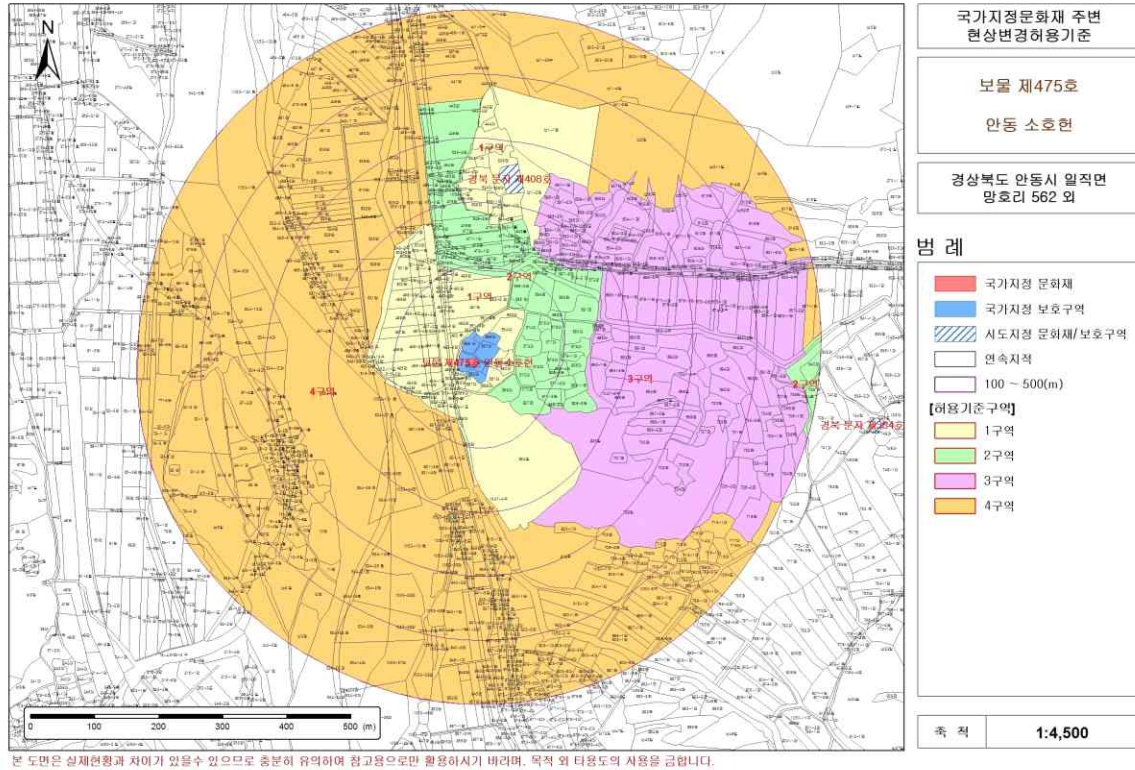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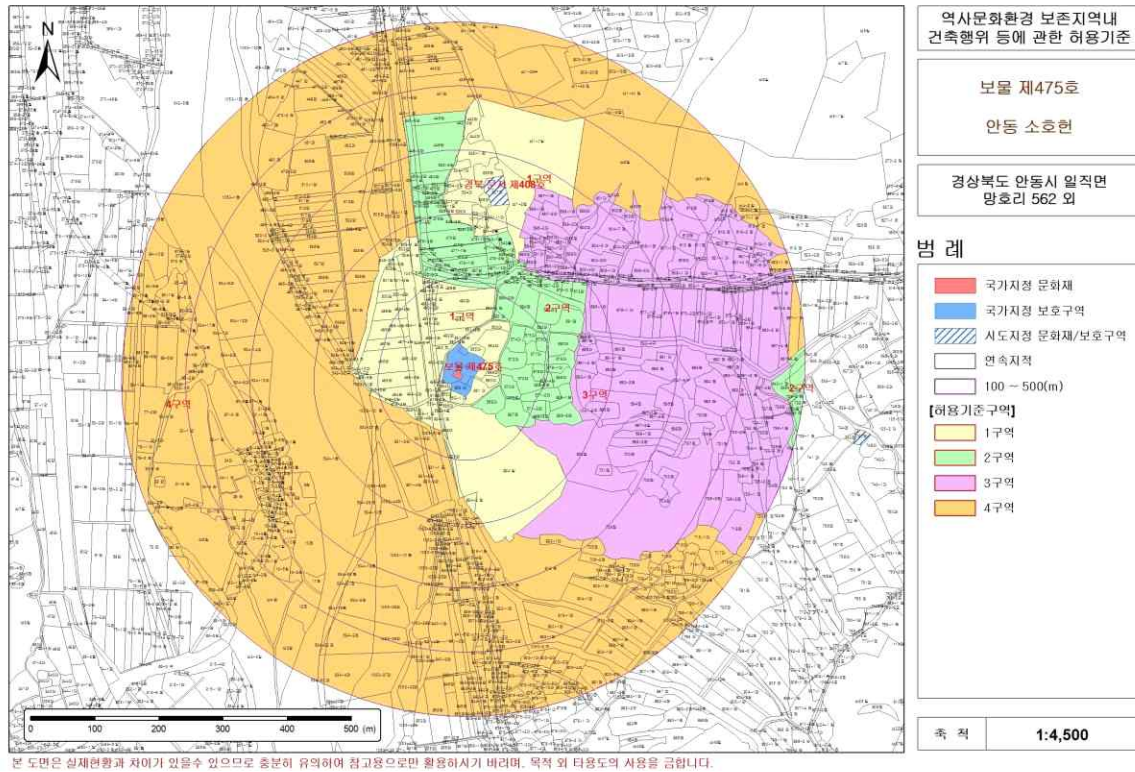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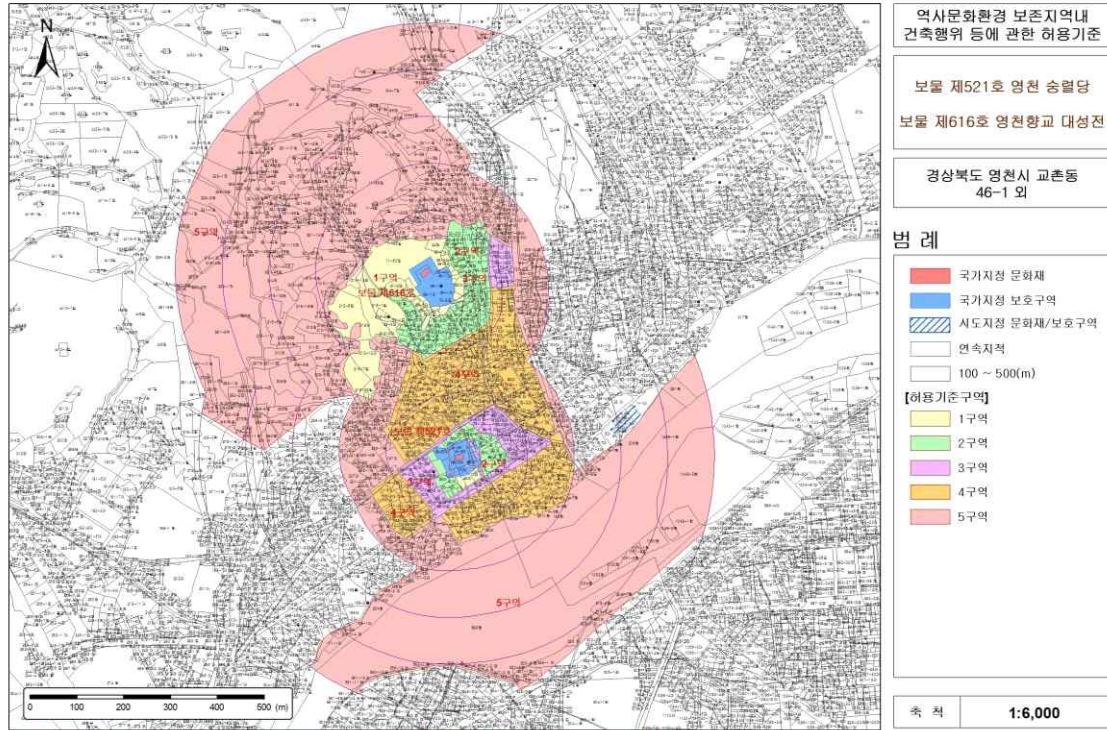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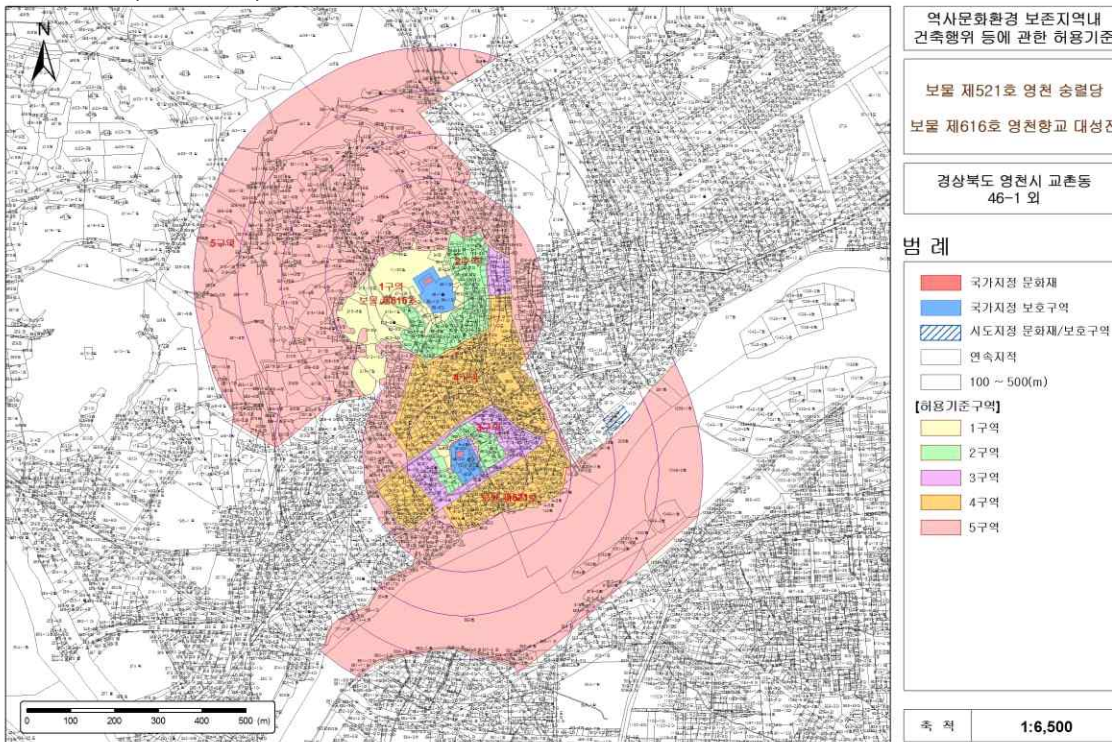
▣ 보물 제521호 “영천 송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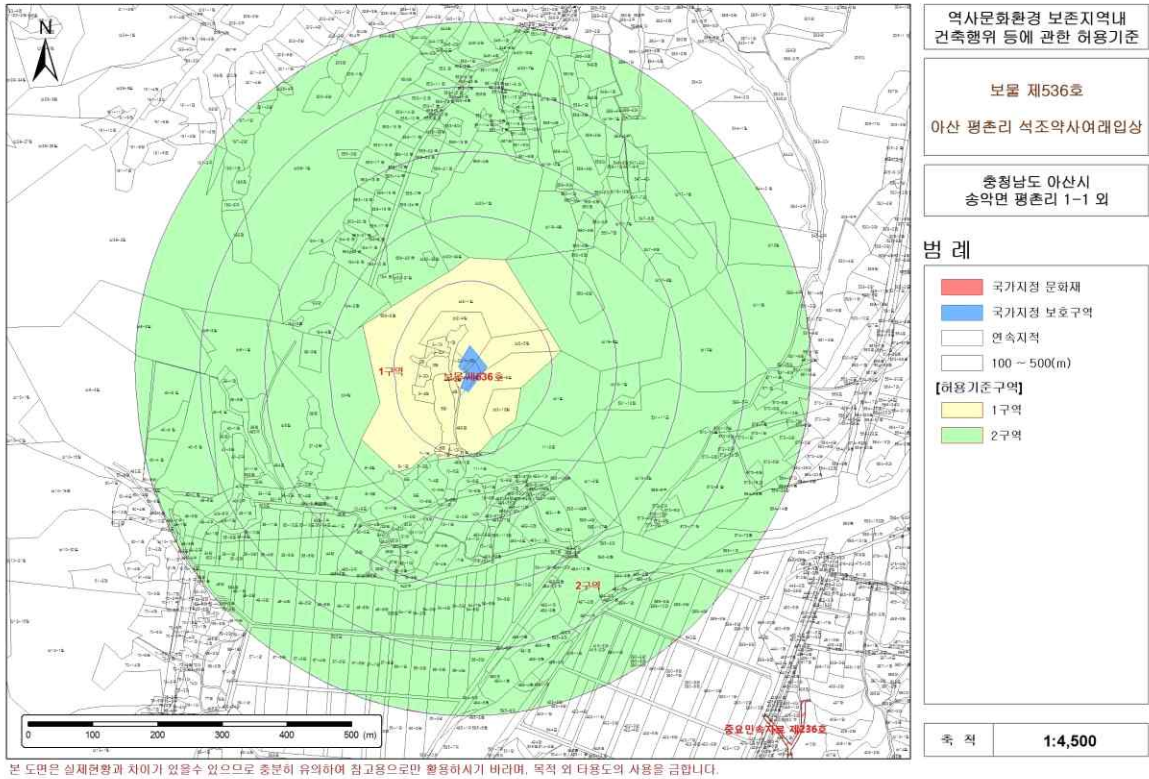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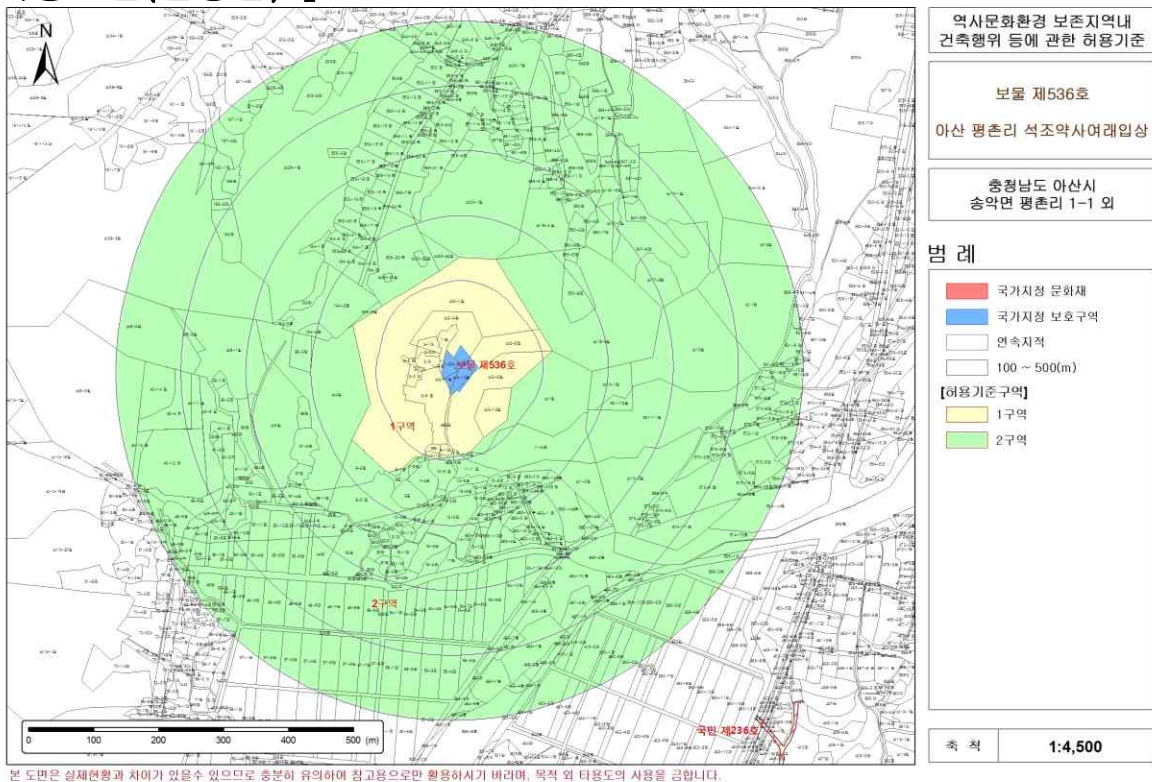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536호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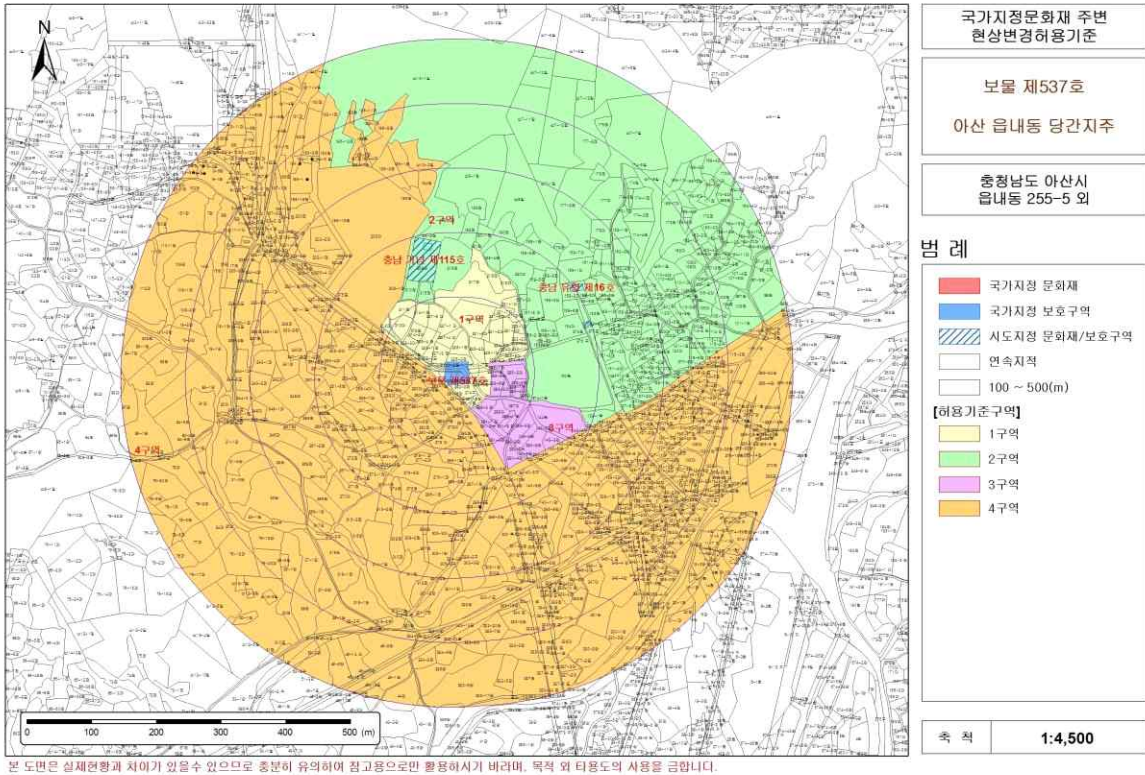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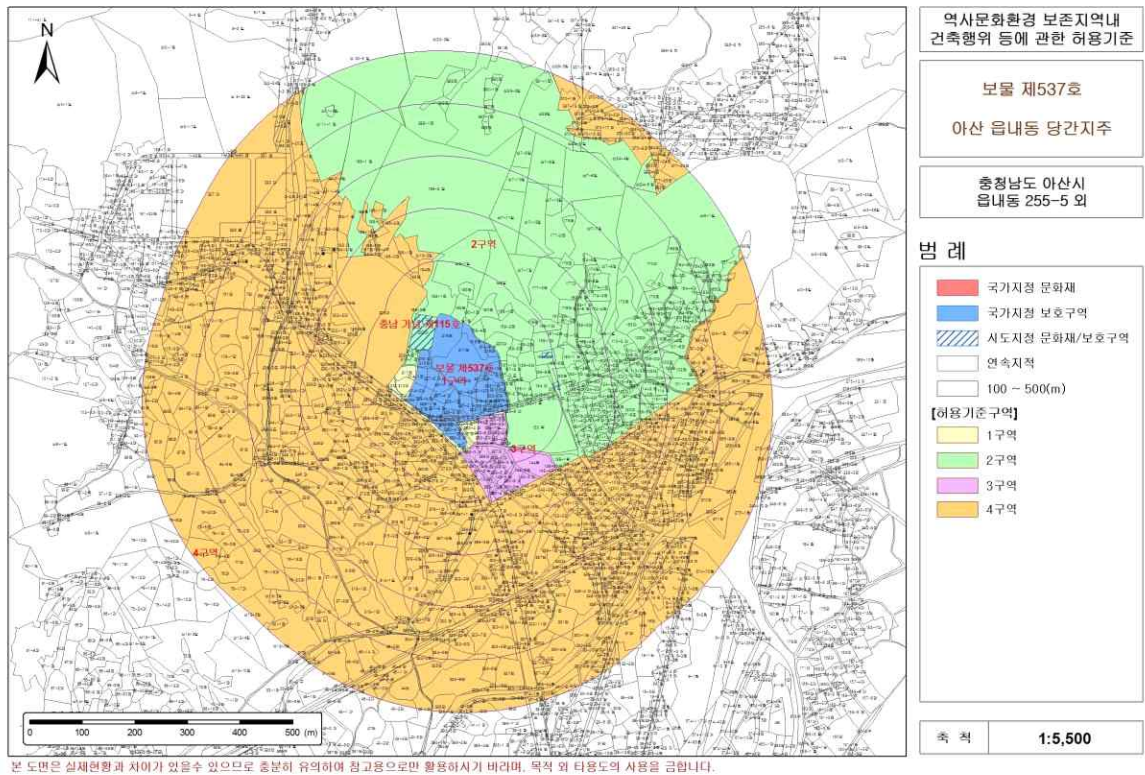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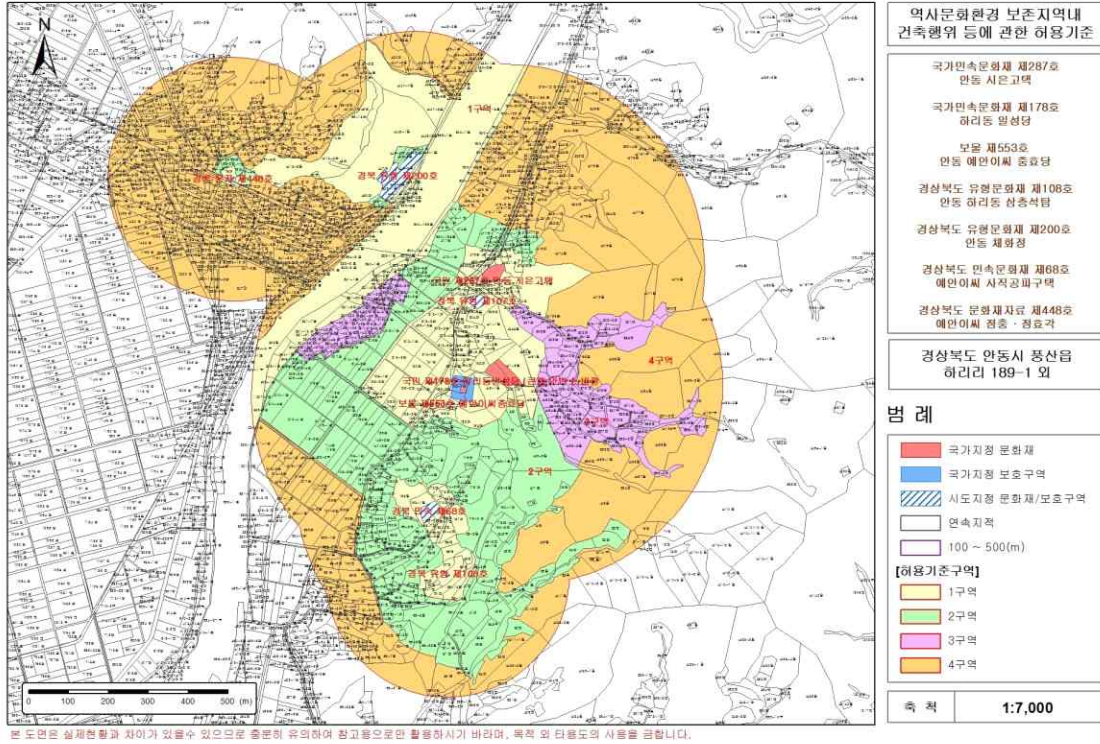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 「온양향교」 현상 변경허용기준 및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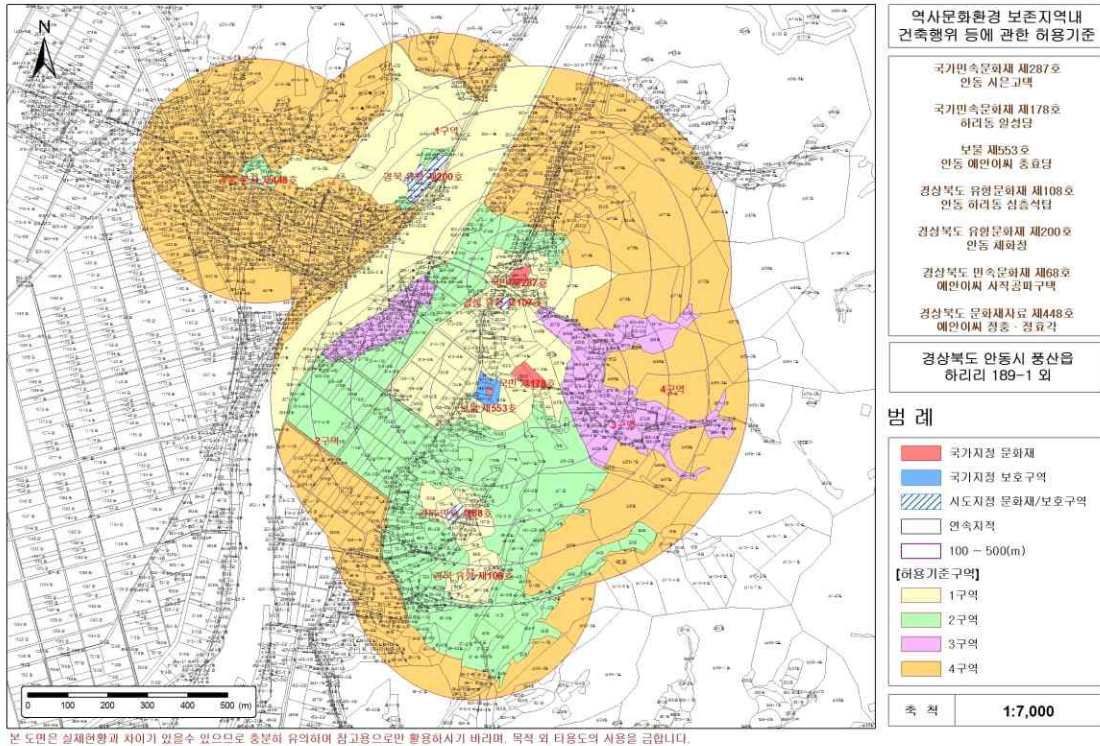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 「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 「온양향교」 현상 변경허용기준 및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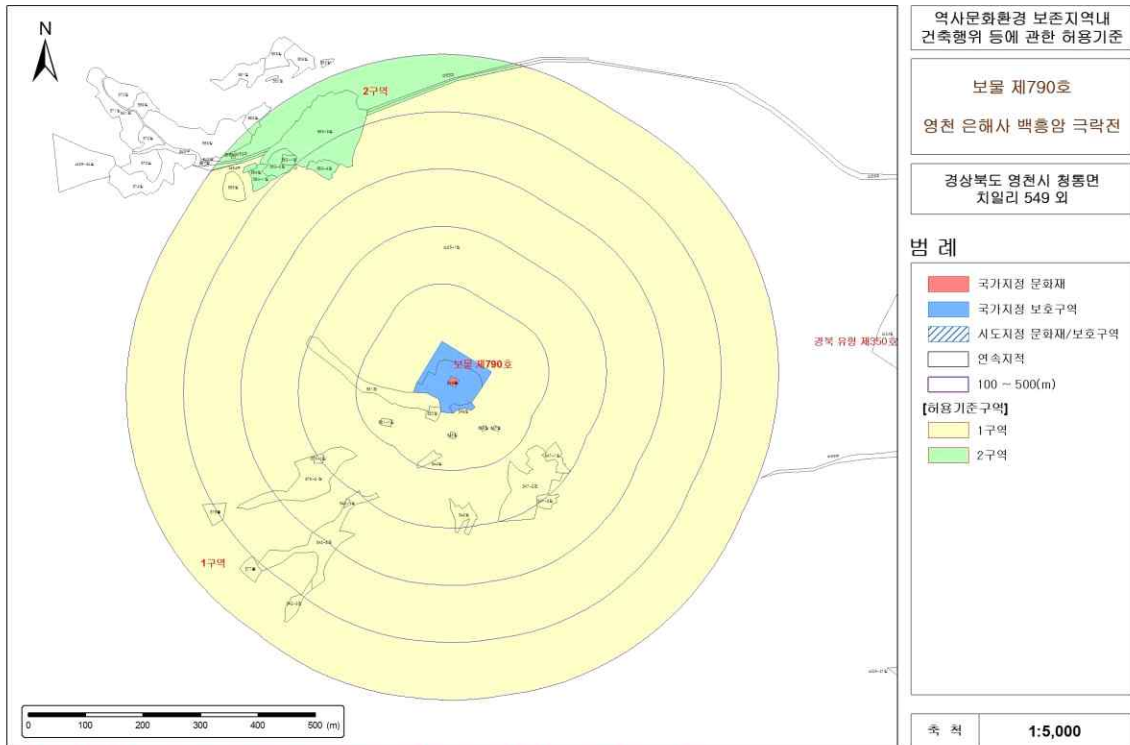
**【 지형도면(변경안) 】**



【 범례 표 (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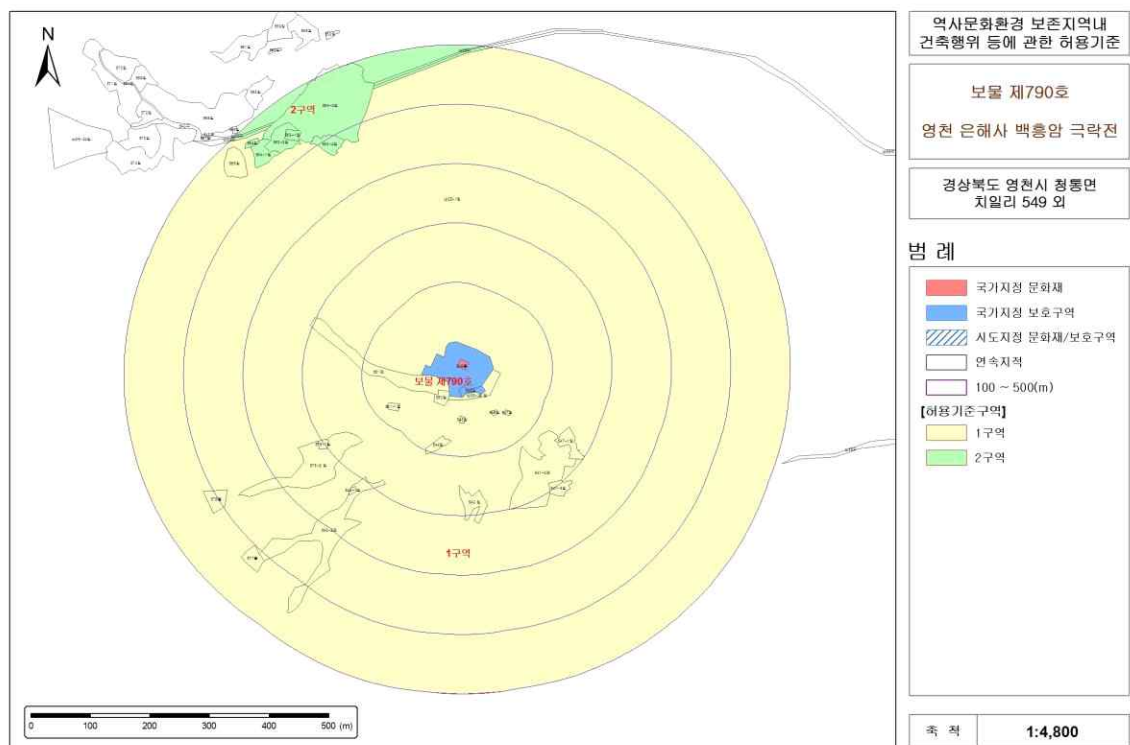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 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li> <li>○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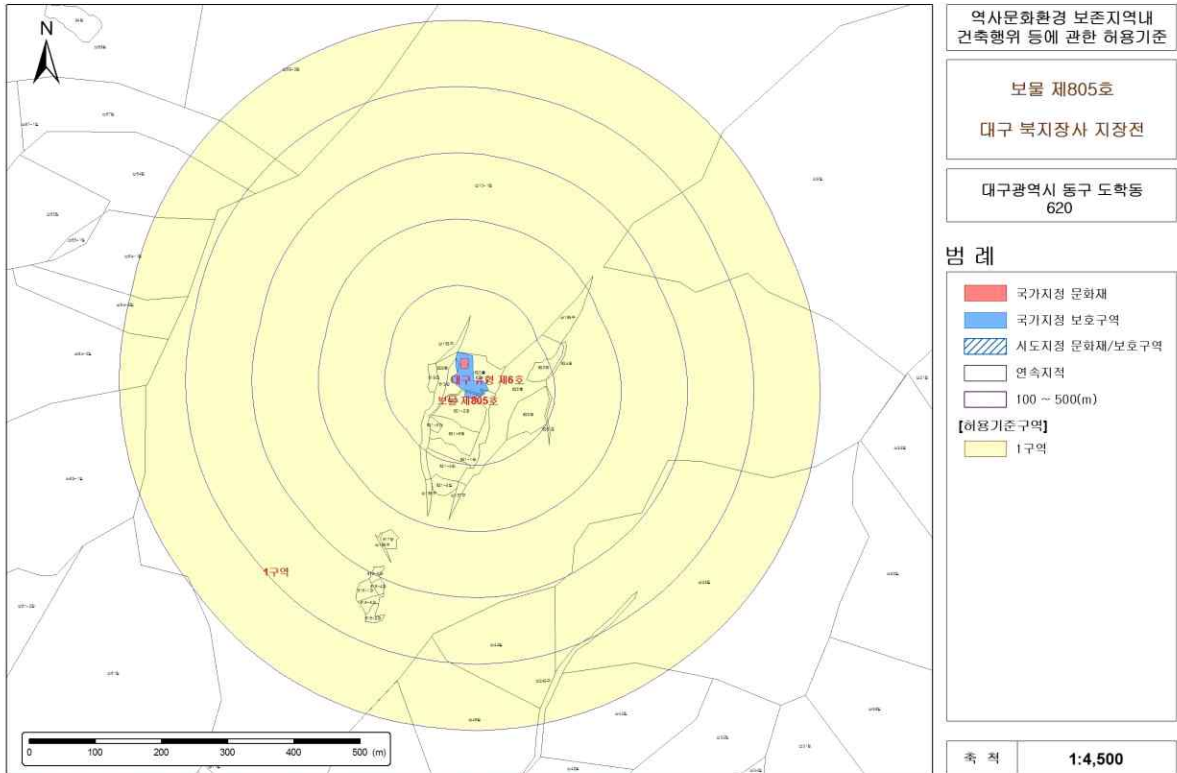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기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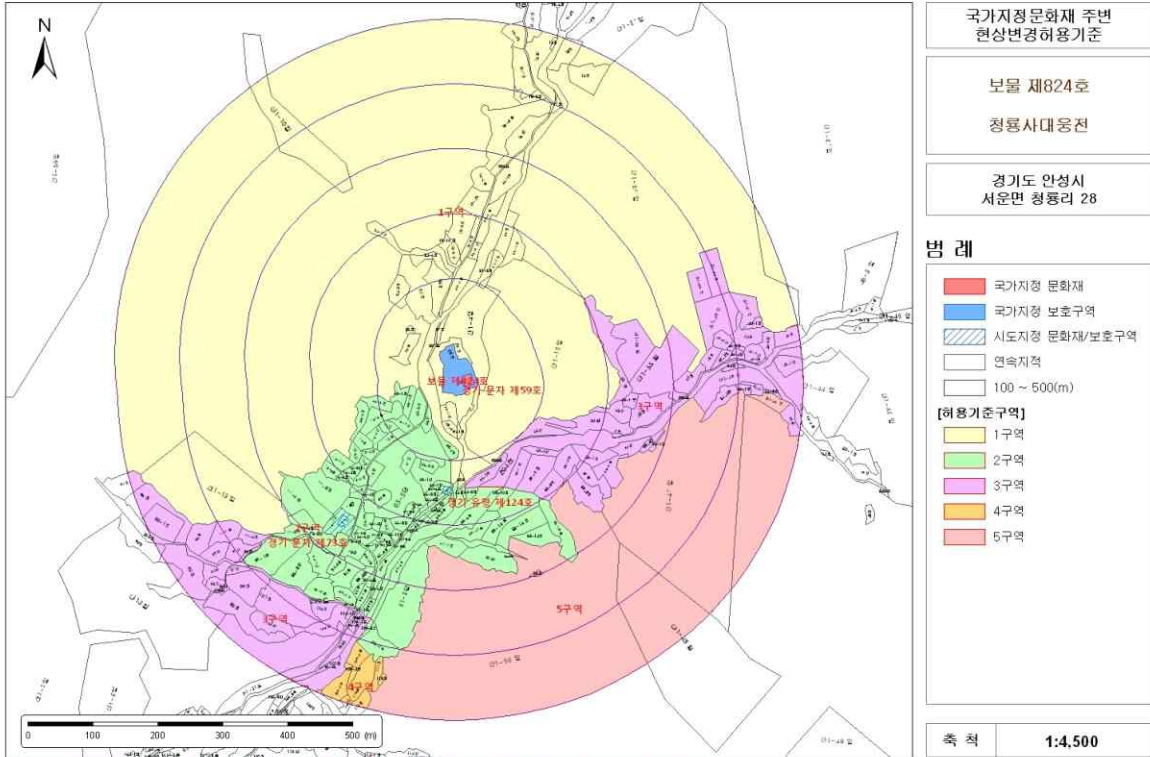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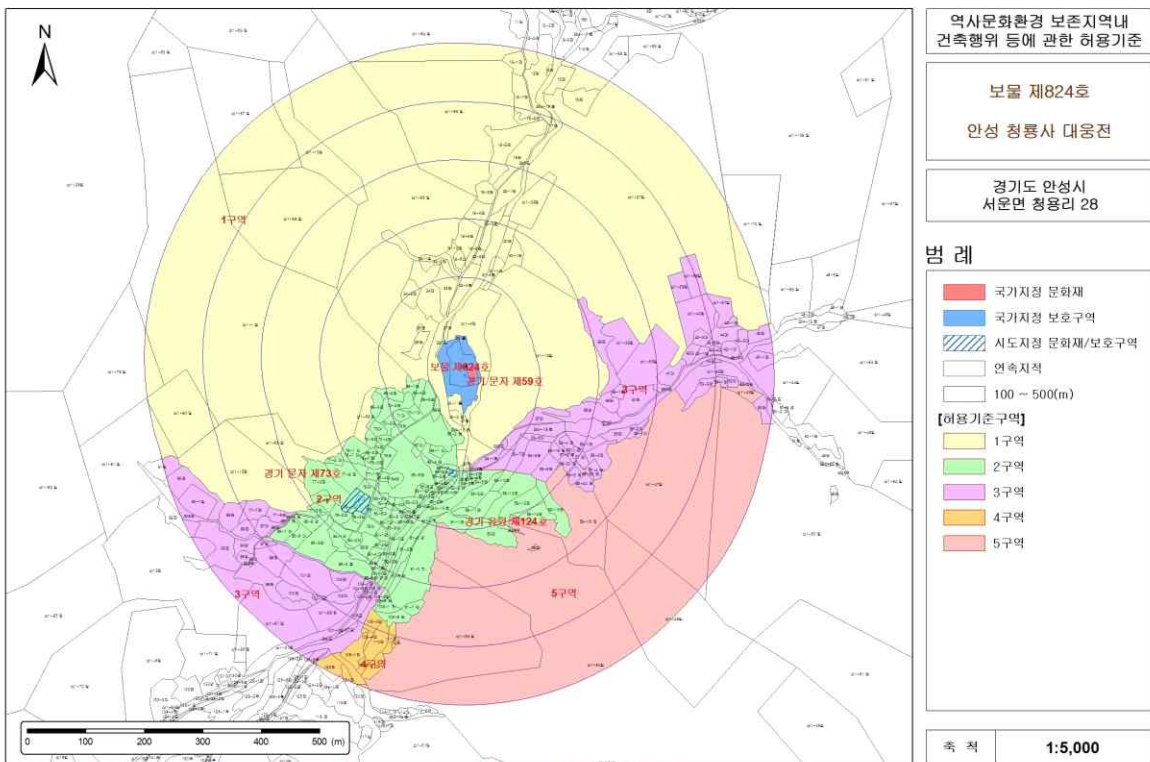


▣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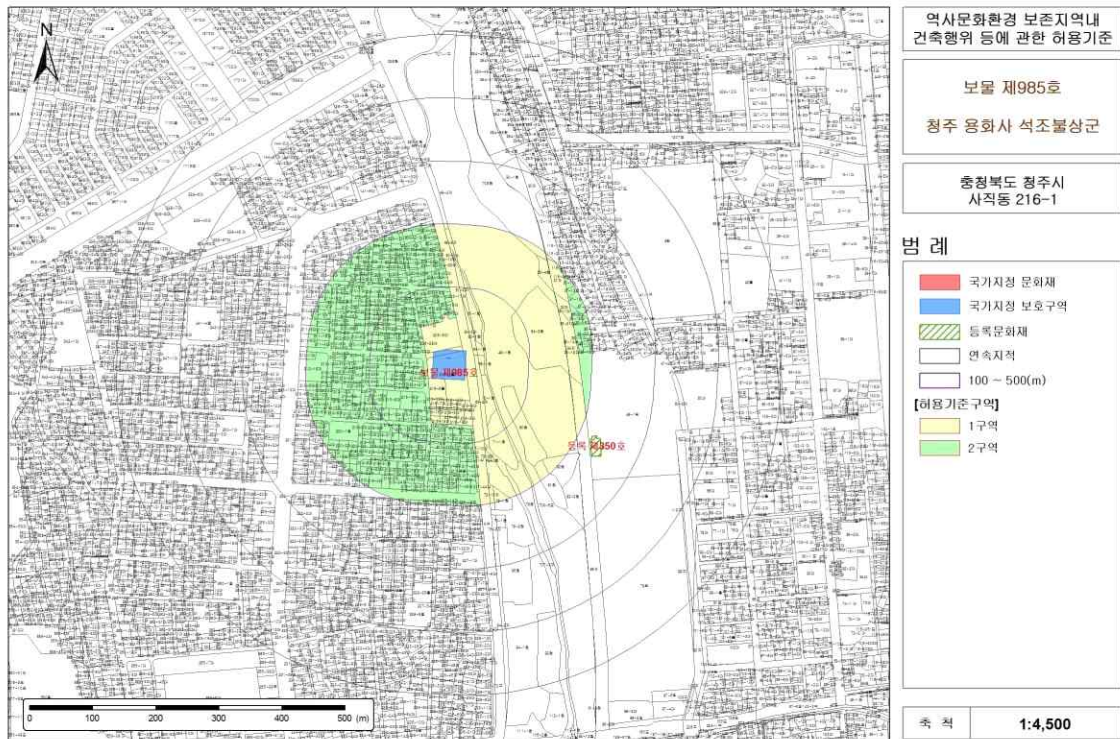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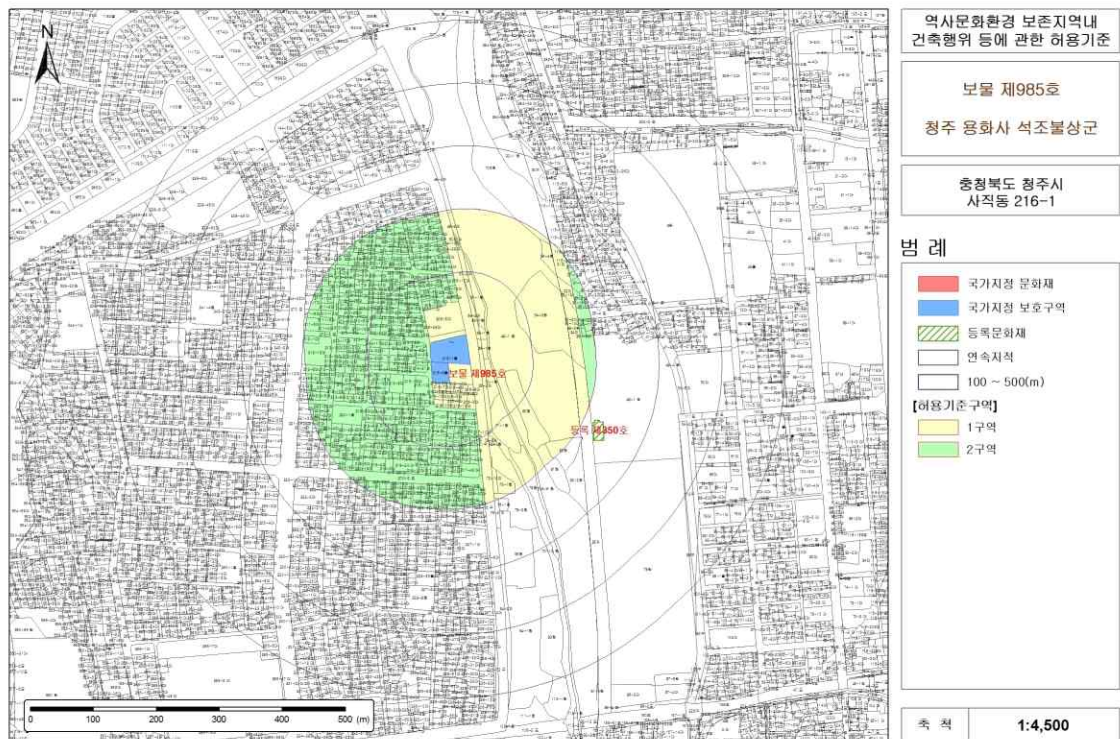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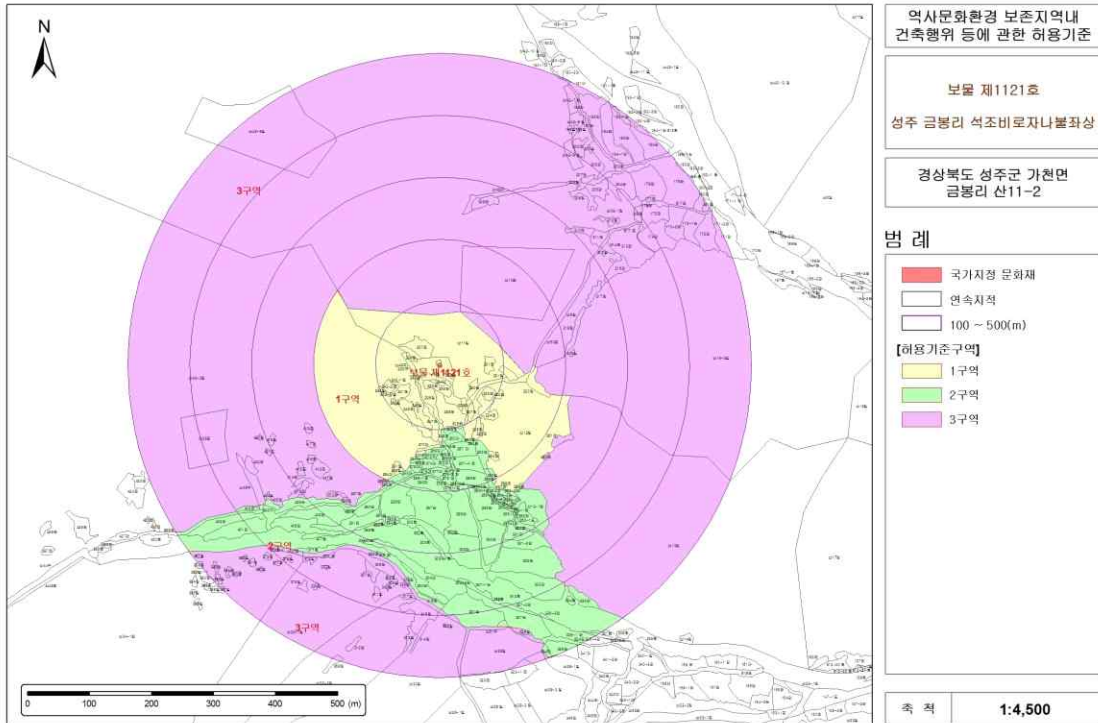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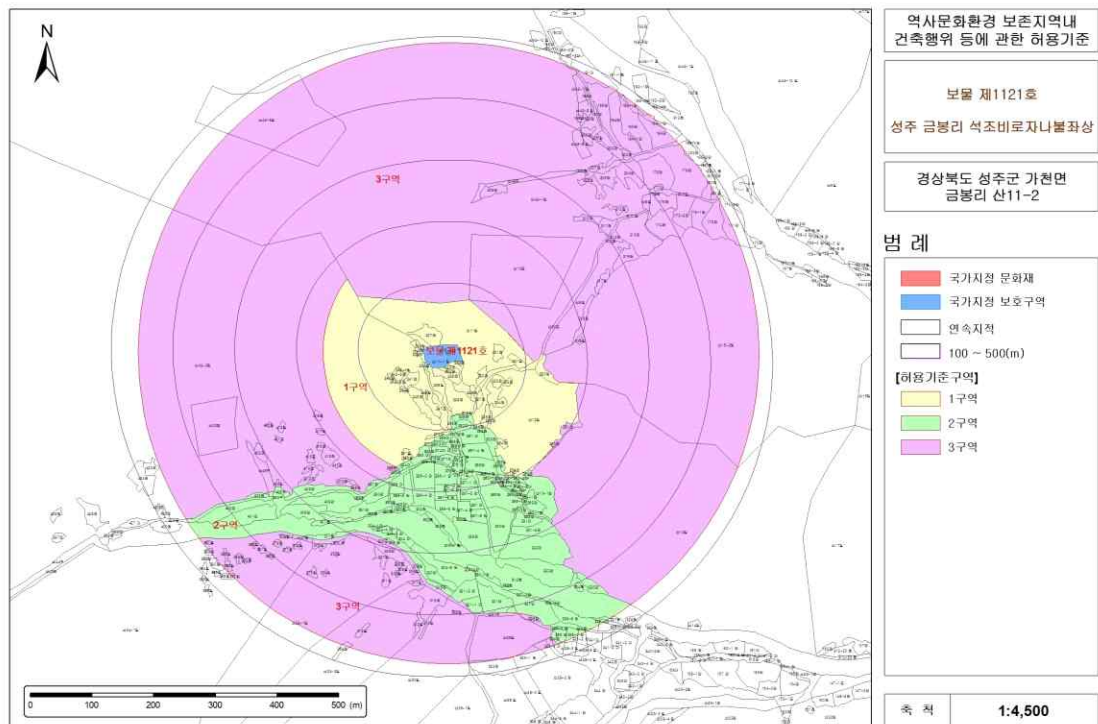
▣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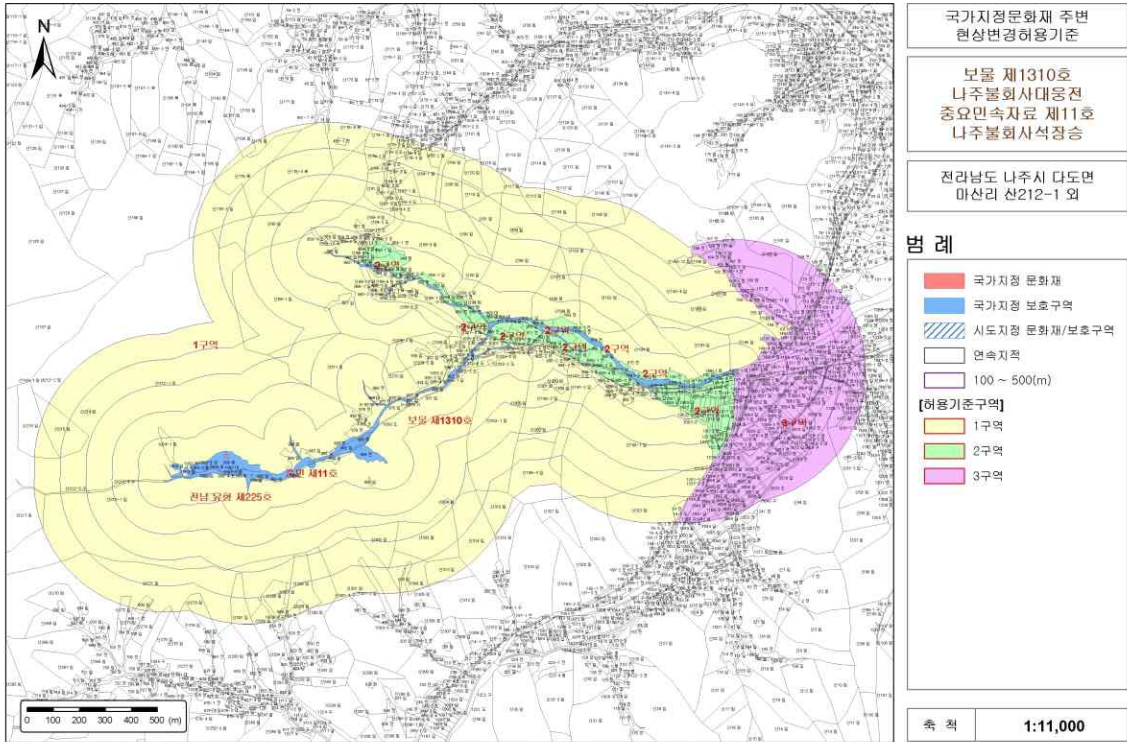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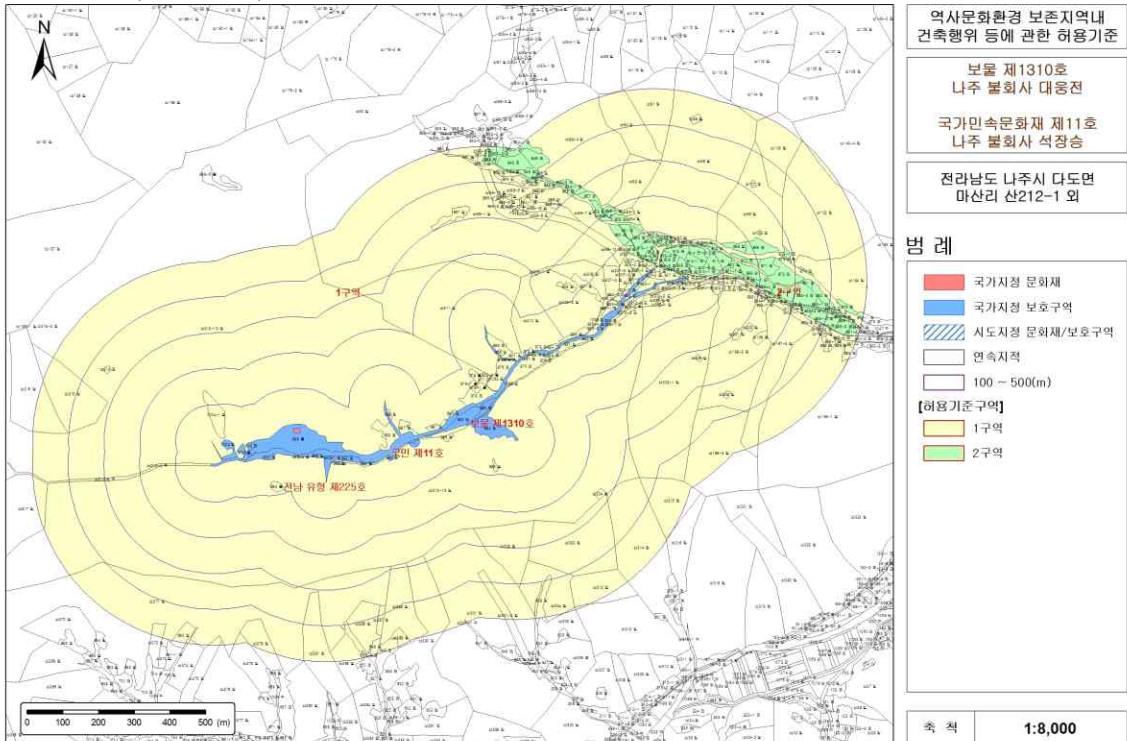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국가민속문화재 제11호 “나주 불회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변경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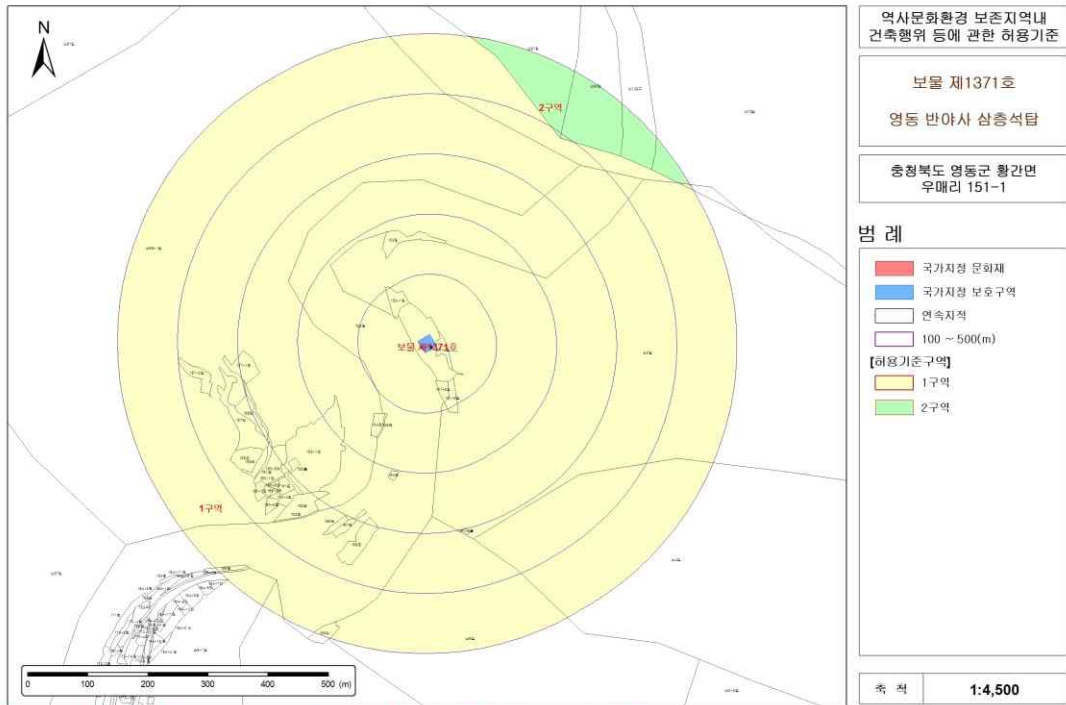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범례 표 (변경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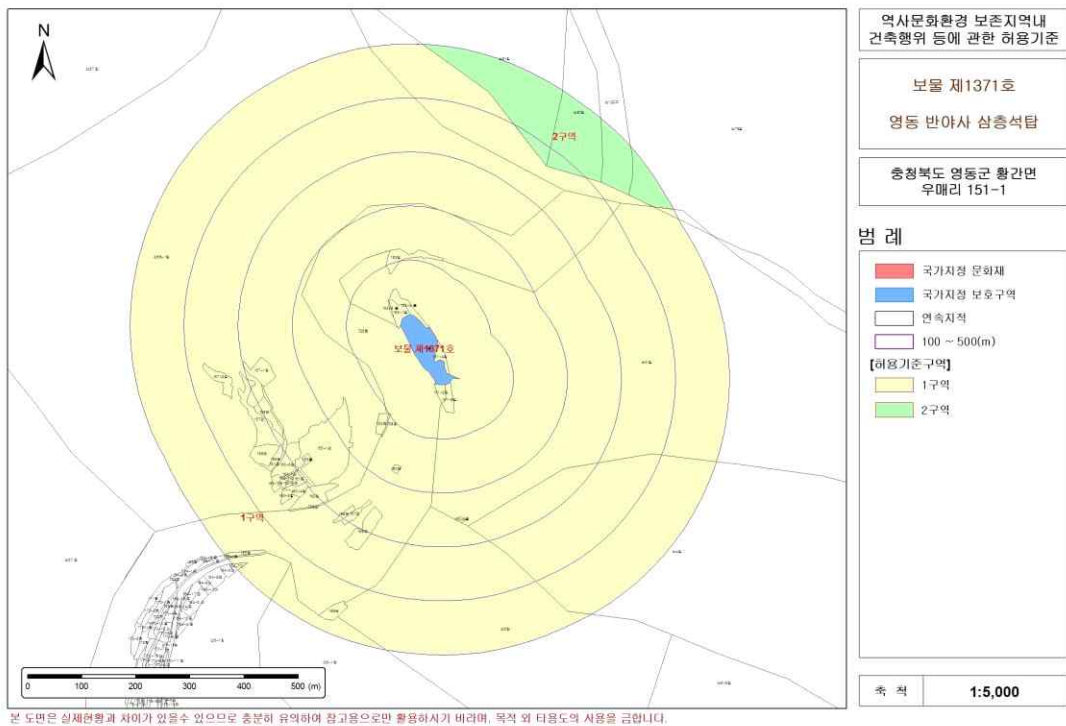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1371호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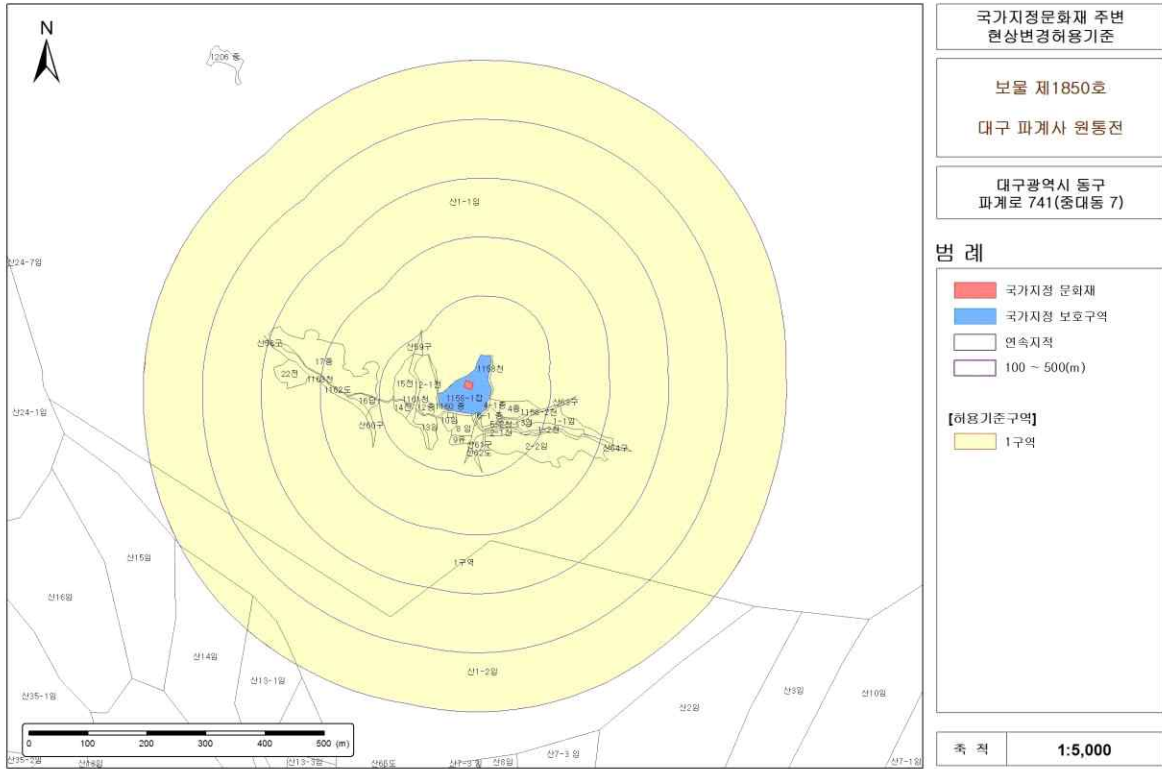
【 지형도면(변경안) 】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기존)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9-06-026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주변 석축 보수정비 사업 등 허가신청 25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5건	원안가결 20건 조건부가결 5건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석축 보수정비 사업 ○ 위치 : 경주시 황성동 291-1 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석축해체 : L=54.92m, H=0.34~2.75m - 배수로해체 : L=44.08m, H=0.3~0.45m, W=0.3~0.65m - 자연석축설치 : L=60.80m, H=0.34~2.67m - 자연석배수로설치 : L=43.10m, H=0.35m, W=0.45m	원안가결	'19.05.29
울주 천전리 각석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3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82m 이격) ○ 사업내용 : 농막 설치 - 면적 : 14㎡ - 높이 : 2.6m - 구조 : 조립식 판넬(연한 노란색)	원안가결	'19.05.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등 6개	경북 문경 (○○○)	<input type="checkbox"/> 진입로 정비(변경허가) ○ 위치 :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 5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8m 이격) ○ 사업내용	원안가결	'19.05.29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44 591 603 658">구분</th> <th data-bbox="603 591 815 658">당 초</th> <th data-bbox="815 591 1027 658">변 경</th> <th data-bbox="1027 591 1128 658">증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44 658 603 1106">1 공 구</td> <td data-bbox="603 658 815 1106">           - 토공 :            · 절토 : 41.0m<sup>3</sup>            · 터파기 : 21.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54.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765.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815 658 1027 1106">           - 토공 :            · 절토 : 30.0m<sup>3</sup>            · 터파기 : 21.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3.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490.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1027 658 1128 1106">           감11m<sup>3</sup>             감11m<sup>3</sup>             감275m<sup>2</sup> </td> </tr> </tbody> </table>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1 공 구	- 토공 : · 절토 : 41.0m <sup>3</sup> · 터파기 : 21.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54.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765.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30.0m <sup>3</sup> · 터파기 : 21.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3.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490.0m <sup>2</sup> - 부대공 : 1식	감11m <sup>3</sup>  감11m <sup>3</sup>  감275m <sup>2</sup>	원안가결	'19.05.29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1 공 구			- 토공 : · 절토 : 41.0m <sup>3</sup> · 터파기 : 21.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54.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765.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30.0m <sup>3</sup> · 터파기 : 21.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3.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4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490.0m <sup>2</sup> - 부대공 : 1식	감11m <sup>3</sup>  감11m <sup>3</sup>  감275m <sup>2</sup>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544 1106 603 1554">2 공 구</td> <td data-bbox="603 1106 815 1554">           - 토공 :            · 절토 : 28.0m<sup>3</sup>            · 터파기 : 17.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0.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13.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815 1106 1027 1554">           - 토공 :            · 절토 : 56.0m<sup>3</sup>            · 터파기 : 17.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68.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863.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1027 1106 1128 1554">           증28m<sup>3</sup>             증28m<sup>3</sup>             증350m<sup>2</sup> </td> </tr> </tbody> </table>			2 공 구	- 토공 : · 절토 : 28.0m <sup>3</sup> · 터파기 : 17.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0.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13.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56.0m <sup>3</sup> · 터파기 : 17.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68.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863.0m <sup>2</sup> - 부대공 : 1식	증28m <sup>3</sup>  증28m <sup>3</sup>  증350m <sup>2</sup>	원안가결	'19.05.29				
2 공 구	- 토공 : · 절토 : 28.0m <sup>3</sup> · 터파기 : 17.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0.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13.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56.0m <sup>3</sup> · 터파기 : 17.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68.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20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863.0m <sup>2</sup> - 부대공 : 1식	증28m <sup>3</sup>  증28m <sup>3</sup>  증350m <sup>2</sup>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544 1554 603 2002">3 공 구</td> <td data-bbox="603 1554 815 2002">           - 토공 :            · 절토 : 26.0m<sup>3</sup>            · 터파기 : 10.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33.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635.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815 1554 1027 2002">           - 토공 :            · 절토 : 37.0m<sup>3</sup>            · 터파기 : 10.0m<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4.0m<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60.0m<sup>2</sup>            - 부대공 : 1식         </td> <td data-bbox="1027 1554 1128 2002">           증11m<sup>3</sup>             증11m<sup>3</sup>             감75m<sup>2</sup> </td> </tr> </tbody> </table>	3 공 구	- 토공 : · 절토 : 26.0m <sup>3</sup> · 터파기 : 10.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33.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635.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37.0m <sup>3</sup> · 터파기 : 10.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4.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60.0m <sup>2</sup> - 부대공 : 1식	증11m <sup>3</sup>  증11m <sup>3</sup>  감75m <sup>2</sup>	원안가결	'19.05.29								
3 공 구	- 토공 : · 절토 : 26.0m <sup>3</sup> · 터파기 : 10.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33.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635.0m <sup>2</sup> - 부대공 : 1식	- 토공 : · 절토 : 37.0m <sup>3</sup> · 터파기 : 10.0m <sup>3</sup> · 되메우기밧다짐 44.0m <sup>3</sup> - 배수공 : · 측 구 수 로 관 (300x300) L=120m - 포장공 : · 황토콘크리트포장 A=560.0m <sup>2</sup> - 부대공 : 1식	증11m <sup>3</sup>  증11m <sup>3</sup>  감75m <sup>2</sup>											
※ 2018년 10월 3차 자체회의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19.05.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경북 울진 (○○○)	<input type="checkbox"/> 저온저장고 설치 ○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1491-1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53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 10㎡, 4*2.5 - 높이 : 2.3m - 구조 : 조립식패널조	원안가결	'19.05.29
홍성 고산사 대웅전	충남 홍성 (○○○)	<input type="checkbox"/> 농막 설치 ○ 위치 :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0-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80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 18㎡, 3*6 - 높이 : 3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원안가결	'19.05.29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북 김천 (○○○)	<input type="checkbox"/> 산불소화시설 설치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84-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m 이격) ○ 사업내용 - 수관수막타워 1호기 : 강파이프구조, 높이 24m, 지름 1.5m - 수관수막타워 2호기 : 강파이프구조, 높이 26m, 지름 1.5m - 수관수막타워 3호기 : 강파이프구조, 높이 25m, 지름 1.5m - 기계실 : 1동,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건축면적 75.29㎡, 최고높이 4.5m	원안가결	'19.05.29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전북 부안 (○○○)	<input type="checkbox"/> 공중화장실 정비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4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화장실 리모델링 - 화장실 개보수(건축면적 47.5㎡, 1층) - 황토 콘크리트 포장 28㎡(T=100) - 콘크리트 물탱크·FRP물탱크·폐쇄오수 처리시설 철거 등	원안가결	'19.05.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전남 부안 (○○○)	<input type="checkbox"/> 사리탑 조성(변경허가)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0 지장암 * 보호구역 내 ○ 기존 : 석탑 철거 후 사리탑 조성 ○ 변경 : 석탑 이운하고 사리탑 조성	원안가결	'19.05.29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전북 부안 (○○○)	<input type="checkbox"/> 사천왕상 멸실 후 조성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보호구역 내 ○ 내용 : 기존 사천왕상(FRP) 철거 후 목조로 조성	원안가결	'19.05.29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충북 청주 (○○○)	<input type="checkbox"/> 마을회관 상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314-1 외 1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85m 이격) ○ 내용 : 신축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 설비 설치 - 규모 : 7.060m×3.937m(5kw급) * 마을회관 : 2층, 높이 7.8m	원안가결	'19.05.29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1-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5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table border="1" data-bbox="555 1496 1129 1845"> <thead> <tr> <th>구분</th> <th>3월 허가</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건축 및 연면적</td> <td>86.7㎡</td> <td>99.98㎡ (주택 91.23, 창고 8.75)</td> </tr> <tr> <td>층수/높이</td> <td>5.1m</td> <td>5.1m</td> </tr> <tr> <td>구조</td> <td>경량철골조</td> <td>좌동</td> </tr> <tr> <td>마감</td> <td>사이딩패널, 금속기와</td> <td>좌동</td> </tr> </tbody> </table>	구분	3월 허가	변경	건축 및 연면적	86.7㎡	99.98㎡ (주택 91.23, 창고 8.75)	층수/높이	5.1m	5.1m	구조	경량철골조	좌동	마감	사이딩패널, 금속기와	좌동	원안가결	'19.05.29
구분	3월 허가	변경																	
건축 및 연면적	86.7㎡	99.98㎡ (주택 91.23, 창고 8.75)																	
층수/높이	5.1m	5.1m																	
구조	경량철골조	좌동																	
마감	사이딩패널, 금속기와	좌동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서울 서대문 (○○○)	<input type="checkbox"/> 이동식화장실 설치 ○ 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9-698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m 이격) ○ 사업내용 : 이동식화장실 설치 - 면적 : 22.2㎡ - 규모/높이 : 1층 / 4.2m - 구조 : 철판조+목구조	원안가결	'19.05.29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임시공양간) 축조 ○ 위치 :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7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 336㎡ - 높이 : 3.6m - 구조 : 천막구조	원안가결	'19.06.13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군위 (○○○)	<input type="checkbox"/> 남천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변경허가) ○ 위치 : 군위군 대율리 동산저수지~둔덕천 (소)합류점 인근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280m 이격) ○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구역 내 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금차</th> </tr> </thead> <tbody> <tr> <td>축제 지구</td> <td>1개소, L=543m</td> <td>2개소, L=1,391m</td> </tr> <tr> <td>호안 정비</td> <td>2개소, L=376m</td> <td>2개소, L=260m</td> </tr> <tr> <td>하도 정비</td> <td>1개소 5,877㎡</td> <td>1개소 5,877㎡</td> </tr> <tr> <td>보 및 낙차공</td> <td>1개소</td> <td>1개소</td> </tr> <tr> <td rowspan="2">교량공</td> <td>2개소 -남천2무명교 : L=36.4m, B=8.0m</td> <td>2개소 -남천3무명교 : L=47.6m, B=8.0m</td> </tr> <tr> <td>-남천3무명교 : L=37.0m, B=8.0m</td> <td>-남천4무명교 : L=39.0m, B=8.0m</td> </tr> </tbody> </table> <p>※ 2018년 3월 제1차 자체회의 결과 조건부 가결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시행            ※ 2019.6.5. 경상북도 변경허가 완료            (시도 유형문화재 제262호 군위 대율리 대청)</p>	구분	당초	금차	축제 지구	1개소, L=543m	2개소, L=1,391m	호안 정비	2개소, L=376m	2개소, L=260m	하도 정비	1개소 5,877㎡	1개소 5,877㎡	보 및 낙차공	1개소	1개소	교량공	2개소 -남천2무명교 : L=36.4m, B=8.0m	2개소 -남천3무명교 : L=47.6m, B=8.0m	-남천3무명교 : L=37.0m, B=8.0m	-남천4무명교 : L=39.0m, B=8.0m	원안가결	'19.06.13
구분	당초	금차																						
축제 지구	1개소, L=543m	2개소, L=1,391m																						
호안 정비	2개소, L=376m	2개소, L=260m																						
하도 정비	1개소 5,877㎡	1개소 5,877㎡																						
보 및 낙차공	1개소	1개소																						
교량공	2개소 -남천2무명교 : L=36.4m, B=8.0m	2개소 -남천3무명교 : L=47.6m, B=8.0m																						
	-남천3무명교 : L=37.0m, B=8.0m	-남천4무명교 : L=39.0m, B=8.0m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북 영동 (○○○)	<input type="checkbox"/>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16-3 외 2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 이격) ○ 내용 : 주차장조성, 환경정비, 약초꽃정원 및 옹벽조성 - 약초꽃정원조성(879㎡) · 약초꽃식재, 옹벽정비(자연석쌓기 H=1m, L=52m), 주변환경정비 등) - 주차장 조성(1,329㎡) : 30면	원안가결	'19.06.13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충남 천안 (○○○)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3-10, 13-11, 13-12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60m 이격) ○ 사업내용 : 공장 건물 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부지면적 : 8,683㎡ - 설치면적 : 3,769㎡ - 높이 : 9.008m(건물+태양광), 2.901m(태양광) - 모듈크기 : 1,988mm×1,000mm×1,890매	원안가결	'19.06.13
제천 청풍 한벽루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청풍공설운동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 ○ 위치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15-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0m 이격) ○ 내용 : 진입로(로터리구간) 확장 면적 약 40㎡	원안가결	'19.06.13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 (○○○)	<input type="checkbox"/> 단독(농가)주택 신축 ○ 위치 : 강릉시 죽현동 234-24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62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농가)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81.8㎡(112.23㎡) - 층수 / 높이 : 2층 / 8.5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일반목구조	원안가결	'19.06.1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경기 파주 (○○○)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부지 조성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240-7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내용 : 고물상부지 999㎡(야적고 5m 이하)	원안가결	'19.06.1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경기 파주 (○○○)	<input type="checkbox"/> 공장 증축(변경허가) ○ 위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93, 693-1, 693-6, 694-4, 694-1, 694-3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30m 이격) ○ 변경내용 - 보강토옹벽 : H=4.8~0.5m(평균높이 2.65m), L=34m	원안가결	'19.06.13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경북 상주 (○○○)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신축 ○ 위치 :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418-1, 857-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7.01㎡ - 층수/최고높이 : 1층/4.5m - 구조/지붕 : 한식목구조/맞배지붕	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19.05.29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영각 개축 및 석축 정비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 보호구역 내 ○ 내용 : 영각 증개축, 석축 및 수로 정비, 비석 이전	조건부가결 (시공 시 자문받아 시행)	'19.05.29
서울 흥인지문	서울 종로 (○○○)	<input type="checkbox"/> 지하지장물 확인 위한 줄파기 공사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440-6 일원 * 보호구역 내 ○ 내용 : 동대문역 #7번출구 외부E/L 설치 위치 지장물 조사 (길이 10m, 폭 1.2m, 깊이 1.5m)	조건부가결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19.05.2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청도 (○○○)	<input type="checkbox"/> 도로 포장 공사(2차)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60-1번지 외 5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m 이격) ○ 사업내용 - B=3.0m, L=160m, T=25cm - 토공 : 흙깎기 278㎡, 흙쌓기 105㎡ ※ '19년 3월 제1차 자체회의 결과 부결 - 역사문화경관저해 ○ 사업내용 - B=6.0m, L=157.8m, T=20cm - 토공 : 흙깎기 278㎡, 흙쌓기 105㎡	조건부가결 (기존 콘크리트 도로 처리 는 천공없이 컷팅하여 제거토록 함)	'19.06.13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부지조성(변경허가, 재심의)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90-3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286m 이격) ○ 기존 - 사업규모 : 997㎡(부지 712㎡, 도로 285㎡) - 전석쌓기 설치 H=0.5~3m ※ 최대절성토 약5m ○ 변경 - 지번 : 90-3 → 90-6 - 사업면적 : 997㎡ → 888㎡ - 석축쌓기 : H=3m, L=45m 등	조건부가결 (전면부 차폐 식재)	'19.06.13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